간 등 록 번 11-1383000-000010-10

www.mogef.go.kr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I)

2024.1.



여 성 가 족 부





제1편	2024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I. 청소년정책 현황 ·····	3
	Ⅱ. 2024년도 사업 주요사항	
	Ⅲ. 2024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19
тиоли		
세2번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I. 청소년정책위원회 ·····	85
	Ⅱ.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	86
	Ⅲ.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정부포상	90
	Ⅳ. 2024년('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청소년 분야)	93
제3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 C		07
	I. 청소년 참여 증진 ···································	
	Ⅱ.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15/
제4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01
	Ⅱ.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251
	Ⅲ.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 점검 ······	
	Ⅳ.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V.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	
	VI.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 안전교육	

제1편	2024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I. 청소년정책 현황 ······	3
	Ⅱ. 2024년도 사업 주요사항	. 11
	Ⅲ. 2024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제2편	청소년 복지사업 현황	
	I.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	. 85
	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Ⅲ.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IV. 청소년쉼터 운영 ·····	
	※ 청소년복지시설 참고자료 및 서식	
	V.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	417
	VI.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436
	VII.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	463
	Ⅷ.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520
	IX.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587
	X.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	712
	XI.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활용	716
	XII.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735
제3편	청소년 보호사업	
	I.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관리 ······	807
	Ⅱ.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사업	845
	Ⅲ.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Ⅳ.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V.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930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사업 담당과 및 연락처〉

구 분	담 당 과	전화번호
청소년 참여 증진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34 02-2100-6249(운영위)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청소년정책과	02-2100-623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정책과	02-2100-6242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7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청소년정책과	02-2100-623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9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점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2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9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7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7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0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9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3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6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5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사업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308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308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308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308



1

2024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 I. 청소년정책 현황
- Ⅱ. 2024년도 사업 주요사항
- Ⅲ. 2024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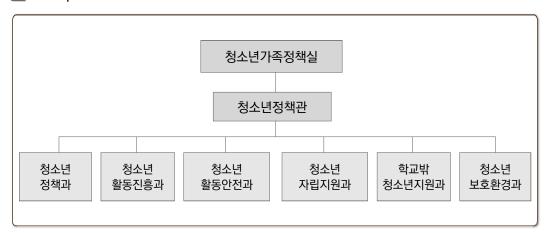
청소년정책 현황

청소년정책 연혁

〈시기〉	〈담당기구〉	〈주요기능〉
'85. 2 ~ '88. 6	청소년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청소년정책심의관)	○ 청소년 선도·지도·육성·보호에 관한 종합기획 시도, 문제 청소년 중심 소극적 행정
	£	
'88. 6 ~ '90. 9	체육부 청소년국	○ 청소년 보호·육성·선도·지원에 관한 조정·총괄 시도
	Ţ	
'90. 9 ~ '93. 3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선도·지도·보호·육성·교정·지원 등을 청소년 육성으로 개념 및 내용 정립청소년기본법제정('91.12.31)
	L	
'93. 3 ~ '98. 2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 청소년보호위원회설치('97.7.7)	○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93.9) ○ 청소년육성 중 청소년보호업무 별도 설정 ○ 청소년보호법제정('97.3.7)
	T	
'98. 2 ~ '05. 4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98.7) 청보위 총리실소속으로 분리('98.2.28)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03.12)
	Ţ	
'05. 4 ~ '08. 2	(국가)청소년위원회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보위 통합, 국무총리실 소속의 청소년위원회 설치('05.4.27) ○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변경('06.3.30)
	L	
'08. 3~'10. 3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통합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08.12)
	£	
'10.3~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업무 여성가족부로 이관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10.1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12.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5.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신설('15.2.26)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18.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23.2)

청소년정책 담당부서 및 주요업무

■ 조 직



■ 주요업무

청 소 년 정 책 과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청소년정책 기반 확대, 청소년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청소년 권리증진, 청소년 참여확대, 청소년관련 행사 등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위원회 운영지원 등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정책 총괄,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국립수련원 운영·관리,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평가 실시 등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 복지정책 총괄,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상담·통합지원,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등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획·종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보호정책 총괄,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등 유해환경개선계획 수립·시행, 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개선, 청소년 <mark>근로권익</mark> -보호를 위한 감시단 점검·계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디지털미디 어 역기능 해소 등

소관 법률

법률명	제정일	법률 주요내용	최근 개정내용
청소년 기본법	'91.12.31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22.12.27 개정, '23.6.28 시행〉 ■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실태에 관한일반적인 조사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기본법'으로 이관하여 정비〈'20.5.19 개정, 20.11.20.시행〉 ■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기준일명시,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신설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04.2.9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2.6.10 개정, '23.6.11 시행〉 ■ 타법개정(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관계기관 협력규정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04.2.9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가정· 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3.10.24. 개정, '24.4.25. 시행⟩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조항 마련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21.3.23. 개정, '21.9.24. 시행⟩ ■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구 설치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1.4.20. 개정, '22.4.21. 시행⟩ ■ 강제로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근거 마련 ■ 역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및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 변경
청소년 보호법	'97.3.7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21.12.7, 개정, '22.1.1. 시행〉 ■ 심아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

법률명	제정일	법률 주요내용	최근 개정내용
청소년 보호법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지원 사항을 규정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 까지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4.5.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상담·교육·자립·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체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설치·지정 및 학교장의 동 센터 연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21.3.23. 개정, '21.9.24. 시행⟩ ■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이 학업중단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 없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연계할수 있는 근거마련 ■ 지원센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확보하고서비스수준을 높이기위해 3년 주기로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	'18.12.18 (제정법)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 하기 위해 조직위원회 및 정부지원 위원회 등 추진체계,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근거,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사항 등을 규정	
한국청소년 연맹육성에 관한법률	'81.4.13	(사)한국청소년연맹지원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	〈'11.5.19. 개정, '11.5.19. 시행〉 ■ 어려운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10.5.17. 개정, '10.5.17. 시행〉 ■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변경 (200만원 이하의 벌금→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스카우트 활 동육 성에 관한법률	'69.7.28	스카우트활동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	〈'11.5.19. 개정, '11.5.19. 시행〉 ■ 어려운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10.5.17. 개정, '10.5.17. 시행〉 ■ 스카우트 주관단체에서 정한 표지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변경(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200만원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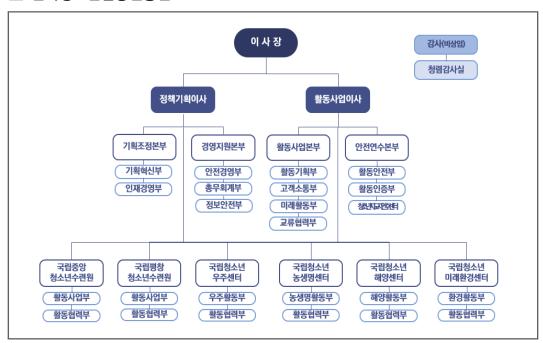
청소년, 아동, 청년 관련 법령상 연령 현황

법 령	대 상	연령(만 나이)	소관부처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9~24세 이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9~24세 이하*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9~24세 이하*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9~24세 이하*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보건복지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	18세 미만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보건복지부
공연법	청소년	19세 미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9세 미만**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9세 미만** ('24.5.1.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9세 미만**	문화체육관광부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	경찰청
운전면허	18세 이상 (원동기 16세 이상)		
근로기준법	연소자	18세 미만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연소자	18세 미만	고용노동부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법무부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소년보호사건 14세 미만)	법무부
민법	미성년자	19세 미만	법무부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법	투표권	19세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임용시험령	응시연령	(교정·보호) 20세 이상 (그 외) 18세 이상	인사혁신처
청년기본법	청년	19~34세 이하	국무조정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청년	15~29세 이하 (공공 15~34세 이하)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청년근로자	15~34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청년상인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 청소년 기본법 규정 준용 **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5 산하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설 현황

('23.12.31. 기준(활동시설은 '22.12.31 기준), 단위: 개소)

			(25.12.)	31. 기군(활동시설근 22.12.31	기군), 단위	
번호	시 설 별	시설수	대상	기 능	이용기간	시설 종류
1	청소년수련관	198	청소년 (9~24세)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	-	활동 시설
2	청소년수련원	154	청소년 (9~24세)	숙박 제공 및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	-	활동 시설
3	청소년문화의집	333	청소년 (9~24세)	정보·문화·예술중심의 간단한 수련활동 실시	-	활동 시설
4	청소년특화시설	14	청소년 (9~24세)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	-	활동 시설
5	청소년야영장	32	청소년 (9~24세)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	-	활동 시설
6	유스호스텔	106	청소년 (9~24세)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	활동 시설
7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17	청소년 (9~24세)	지역의 청소년 활동 진흥, 역량개발, 참여 활성화 등 청소년지원체계 구축	-	지원 기관
8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240	위기청소년 (9~24세)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상담·보호· 의료·자립지원	-	이용 시설
9	청소년쉼터	138	가정 밖 청소년 (9~24세)	가출예방, 상담 및 보호, 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일시(7일 이내) 단기(3~9개월) 중장기(3~4년)	생활· 이용
10	청소년 자립지원관	13	쉼터 등 퇴소 청소년 (19~24세 이하)	쉼터 등 퇴소 후에도 추가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자립 여건 마련을 지원	1~2년	생활· 이용
11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17	소년법 처분 청소년 (1호 보호자감호위탁)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	처분기간 내	생활 시설
12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222	학교밖청소년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교육, 취업 등 자립지원	-	이용 시설
13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1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3~18세)	인터넷·스마트폰과 차단된 환경에서 상담·교육·활동 등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	1주(8회) 2주(12회) 3주(1회) 4주(1회)	생활 시설
14	국립청소년 치료재활센터	2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 (9~18세)	상담·치유 등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	11박12일 (단기과정) 4주(오름과정) 16주(디딤과정)	생활 시설

정부 포상(청소년 분야) 및 장관표창 현황

구 분	훈 격	포상 시기	대 상
청소년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5월	청소년단체 종사자, 청소년업무담당 공무원, 일반인, 단체·기관, 청소년
지방청소년활동정책 진흥 유공자 포상	장관표창	12월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지도자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보호 분야 유공자 포상	장관표창	12월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치료·재활 활동 청소년지도자
전국청소년지도자 대회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9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시상식	장관표창, 장관상	11월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우수 수행기관 및 개인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성과 보고대회	장관표창, 장관상	12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유공자, 유공기관, 우수사례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12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유공자 포상	장관표창	12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지도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보고대회	장관표창, 장관상	11월	유관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 학교 밖 청소년
전국 또래상담 성과보고대회	장관표창, 장관상	11월	우수 운영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수 지도교사 및 지도자, 또래상담자
청소년보호유공자 표창	장관표창	12월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개선 활동 청소년지도자
매체분야 청소년 보호 유공자 포상	장관표창	12월	매체 분야 청소년보호활동 단체 및 개인

\prod

2024년도 사업 주요사항

청소년정책과

사업명	주 요 내 용	문의처
청소년 특별회의	 법적근거:청소년 기본법 제12조 목적·기능: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관련 정책 설정·점검 및 추진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 대상: 만 9~24세 청소년 구성:청소년특별회의 기획추진단 및 지역회의 청소년 총 100~150명 내외를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으로 위촉 운영:구성(1월~3월)→출범식(3월)→ 정책발굴활동(4월~9월) → 결과보고회(12월) 	02- 2100-6234
청소년 참여위원회	 ○ 법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 목적·기능: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 청소년 의견 반영 ○ 운영주체: 전국 시·도 및 시·군·구 ○ 주요활동: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제안,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청소년포럼·토론회 참여 및 개최 등 	02- 2100-6234
청소년 우대	 ○ 법적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 우대기준 - 9~18세 청소년 또는 19~24세의 초·중·고 재학생 ○ 우대시설 - 대중교통,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등 ○ 우대내용: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02- 2100-6233
청소년증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용도: 공적 신분증, 청소년 이용시설 면제 또는 할인, 대중교통 및 가맹점 선불결제 가능 ○ 교통카드: 3개(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신청인이 택일 ○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02- 2100-6233

사업명	주 요 내 용	문의처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 법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평가체계: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청소년정책 파급효과 점검, 정책 영역별 실적 중심의 평가보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과정 중심의 평가 ○ 평가지표: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세부 평가지표 구성(총 12개 지표) ○ 결과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자체별 정책컨설팅에 활용 	02- 2100-623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 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금액: 생리용품 구입 비용 월 13,000원 ○ 신청방법: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모바일앱 	02- 2100-6242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법적근거:청소년 기본법 제16조 개최:5월 중 참석대상:청소년,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일반국민 등 주요내용:현장체험부스, 경진대회, 멘토 특강 등 청소년을 위한다양한 강연·체험·전시 프로그램 운영 	02- 2100-6234
청소년의 달 기념식	○ 법적근거:청소년 기본법 제16조 ○ 개최:5월(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막식과 통합 운영) ○ 참석대상:청소년,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일반국민 등 ○ 주요내용:청소년육성 및 보호유공자 시상 등	02- 2100-6242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	 법적근거:청소년 기본법 제60조 포상대상:청소년단체 종사자,청소년업무담당 공무원,일반인, 단체·기관,청소년 등 72명 (개) ※ 포상규모는 해당연도 공고에 따름 포상훈격:훈장, 포장, 대통령표창,국민총리표창,장관표창 공모시기:매년 1월 ~ 2월 포상시기:매년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식 	02- 2100-6242

청소년활동진흥과

사업명	주 요 내 용	문의처
지역청소년 활동정책 진흥업무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37조 주요기능: 청소년 활동 전달체계 역할, 지역사회 청소년단체· 청소년기관(시설)과 연계·협력 기능 강화 운영: 전국 17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진흥원 협력 운영 	02- 2100-625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법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 □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중3) □ 우선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 기타대상: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 청소년 □ 지원내용: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 건강한 성장 및 자립역량 배양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02- 2100-6259
청소년 운영위원회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목적·기능: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 반영 설치현황: 전국 331개 운영: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 개진・개선 	02- 2100-6255
청소년 지도사 양성 및 보수교육		02- 2100-6249

사업명	주 요 내 용	문의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 점검	○ 법적근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제19조2 ○ 대상시설: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야영장 ○ 사업내용(실시기관) -종합 평가: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체계, 프로그램 운영상황, 인사 및 조직 등 운영 관련 제반 사항 평가 -안전·위생점검:안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 결과공개: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http://www.youth.go.kr)공개	02- 2100-6262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 법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 지원시설 - 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한 공공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등 ○ 지원내용 - 수련시설 지도사 기본급(50%) 지원(정규직전환 수당도 지원 가능)	02- 2100-6269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 신고대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수련활동 및 비숙박 수련활동 중 대규모이거나 위험도 높은 활동 ○ 신고처: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시·군·구 ○ 신고인: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운영하려는 자 ○ 신고방법: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http://www.youth.go.kr) 	02- 2100-6267

청소년자립지원과

사업명	주 요 내 용	문의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청소년안전망)	 법적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사업목적: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교·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지원대상: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02- 2100-6277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법적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 사업목적: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 지원 지원대상: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청소년동반자 배치현황:1,398명('23년 기준) 	02- 2100-6280
청소년쉼터	 법적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제31조, 제32조 사업목적: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 (의·식·주), 상담·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대상:1순위:9~19세 미만, 2순위:19~24세 	02- 2100-6278
청소년자립 지원관	 법적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32조 사업목적:시설 퇴소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지원대상:1순위:시설 퇴소 후기청소년, 2순위:그 밖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02- 2100-6278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이용대상 및 지원내용 -「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 청소년을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 보호기간: 보호기간 6개월, 법원(소년부 판사)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기간 연장가능 	02- 2100-6281
청소년 상담사 양성 및 보수교육	 ○ 법적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2조 ○ 사업목적: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상담 인력 선발 및 양성,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지식 함양 및 역량 강화 ○ 주요내용 - 등급별(1·2·3등급) 필기·면접시험 합격 후 자격연수 이수 후 자격증 발급 -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청소년단체, 청소년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 	02- 2100-6280

사업명	주 요 내 용	문의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연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운영 학업중단숙려제, 전국 교육청에 설치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참여 제도화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확대를 위해 법률개정 ※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 없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연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02- 2100-63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법적근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9~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센터: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22개소) ○ 지원내용 -(학업지원)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자립지원) 적성검사, 직업탐색, 직업체험 등 직업역량강화 사업및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등 -(의료·복지) 건강검진 및 주거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02- 2100-6319, 6317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 ○ 검진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단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건강검진은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 신청장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검진내용: 상담 및 진찰, 혈액검사, 간염검사, 결핵검사 및 구강검진 등 	02- 2100-6319, 6315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15조 □ 지원대상: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 등 	02- 2100-6316, 6313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 24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 ※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사업목적: 중도입국·다문화·북한이탈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지원 ○ 지원내용: 맞춤형 정보제공, 기초 한국어, 진로지도, 문화 활동 등 	02- 2100-6312, 6314, 6318

청소년보호환경과

사업명	주 요 내 용	문의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 법적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조, 제48조 ○ 목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음주·흡연 등 유해환경 개선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 주요활동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소 점검단속 및 계도활동 	02- 2100-6299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법적근거:청소년 보호법 제27조 ○ 대상:만 19세 미만 청소년 ○ 주요내용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청소년 대상 미디어(인터넷・스마트폰・사이버도박)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위험수준별 맞춤형 상담・치유 등 종합서비스 운영 	02- 2100-6308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 법적근거:청소년 보호법 제27조 ○ 자격요건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등 ○ 역할 -청소년 미디어(인터넷・스마트폰・사이버도박)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해소 상담치료 서비스지원, 인터넷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운영 	02- 2100-6308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 마을 운영	 ○ 법적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제35조 ○ 설립목적: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 정서적 치료 및 상담, 대안활동 등 종합적·전문적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해소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사업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위험군(주의사용자군+ 위험사용자군) 청소년 	02- 2100-6308

사업명	주 요 내 용	문의처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운영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설립목적: 정서·행동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 치료·보호·교육 등 종합적·전문적 기숙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 영위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사업대상: 정서·행동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만 9~18세 청소년 	02- 2100-6308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 감시체계 강화	 ○ 법적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27조 등 ○ 목적: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 주요내용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의 본인확인제도 이행여부 점검 ─ 인터넷신문의 청소년 유해성광고 게재현황 점검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모니터링 	02- 2100-6293

2024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

■ 청소년 참여 증진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청소년 특별회의	o 중앙 청소년참여위원회(선발직) 및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당연직)을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으로 위촉(총 400명 내외)	청소년특별회의 기획추진단 및 지역회의(전원 선발직, 총 100~ 150명 내외)로 구성·운영 * 지역회의 위원의 경우 시·도별 4~6명 추천하여 선발 예정	
청소년 참여위원회	 ○ 운영현황: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 233개소(시·도 17개, 시·군·구 216개) 운영지원 -시·도: 1,000만원 (국고보조율 50%) -시·군·구: 280만원 (국고보조율 50%) 	o 삭제 ※ '24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방비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의 업무 가이드라인으로서 본 지침을 활용 가능	

■ 청소년증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신청인	■ 청소년 본인 ※ 단,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경우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 동의서' (서식 제7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확인기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보호하고 있는 사람 ※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8세 이하 또는 19세 이상인 자 ○ 가족관계등록이확인되지 아니한 자 ○ 외국인	■ 청소년 본인 ※ 단,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제7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확인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하고 있는 사람※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자 8세 이하 또는 19세 이상인 자이기족관계등록이확인되지 아니한자이외국인	
신청	○ 사진요건(3×4cm)	○ 사진요건(3.5cm×4.5cm)	
비용	o 청소년증 발급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 우송료(3,820원)는 신청인 부담 * 청소년증 발급 단가:비교통 4,600원, 교통 5,900원	o 청소년증 발급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 우송료(3,820원)는 신청인 부담 * 청소년증 발급 단가: 비교통 4,700원, 교통 6,500원	

2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운영 시간 및 기간	운영 모형 지원내역 일반형 • 주말활동(토요일) : 분기별 1회 이상 (급식포함 5시수 이상) 무말형 • 일 5시수, 주말 1~2일(토~일) 운영 (연간 80일 이상) • 학교 방학기간 중 평일 운영 가능	운영 모형 지원내역 의반형 • 주말활동(토요일) : 반기별 2회 이상 (급식포함 5시수 이상) • 일 5시수, 주말 1~2일(토~일) 운영 (연간 70일 이상) • 학교 방학기간 중 평일 운영 가능	○ 변경 (현장의견)
사업 예산	□ 사업예산 : 31,306백만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55개소 운영 지원 -1개소당(40명 기준) 평균 예산 : 178.1백만원	□ 사업예산 : 31,104백만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55개소 운영 지원 -1개소당(40명 기준) 평균 예산 : 181.2백만원	ㅇ변경
운영유형 및 인원	* 기본형과 농산어촌형의 1개반(30명)은 지역적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사전 승인(여가부 보고)에 따라 최소 20명 이상으로 예외적 운영 가능	* 기본형, 농산어촌형, 주말형 1개반(30명)은 지역적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사전 승인(여가부 보고)에 따라 최소 20명 이상으로 예외적 운영 가능	○ 변경 (현장의견)
프로그램 운영 (편성) 기준	○코딩, 컴퓨터활용, 드론, 로봇, 영상·미디어 제작 등 '디지털 체험활동' 강화(추가 사업비 등 활용)	○코딩, 컴퓨터활용, 드론, 로봇, 영상·미디어 제작 등 '디지털 체험활동' 강화(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련 사업, 지역단체, 대학, 민간기업 연계 등 민관협력 적극 활용)	
	• 운영자와 청소년이 쌍방향 의사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주당 6시수 이내 자율 편성 가능 (긴급돌봄 시 추가 확대 편성 가능) 운영 (* 주말형 제외) •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급식지원(간편식, 도시락 등)	• 운영자와 청소년이 쌍방향 의사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주당 6시수 이내 자율 편성 가능 (간급돌봄 시 추가 확대 편성 가능) •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급식지원(간편식, 도시락 등) ※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이 가정에서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 변경

구분		2023	년도			비고				
청소년 이용절차	보호자 아카데 유·무· 신청 - 초등 청 - 온종 (검색) 방과후 가능 * 온종일	는 원하는 나는 거주 미 운영기 선 전화를 소년은 정 일 돌봄 - 신청· 아카데미	는지역의 기관을 직 로 면담 부24(ww 원스톱 신고 - 친 에 접속하 톱 서비스	접 방문, 후 참여 w.gov.kr) 서비스 성소년 나여 신청 를 이용한	o 신청방 - (오프리 청소년 지역의 기관을 전화로 - (온라역 gov.ki 서비스 청소년 하여 * 온종을 청소년	변경(온라인 신청 중학생까지 확대)				
귀가지도 관리	* 신설				* 도로교통법(2023.10.24. 개정)에 따라 캠프, 주말체험활동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경우 어린이통학 버스 대상에서 제외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인력관리	인건비 수당에	40명 기 46~48% 대해서는 (단체)에서	준) 178년 차지, 시 해당 지기	백만원 중 간외근무 다체 또는	※ 1개소당 방과후아카데미 연간운영비 (기본형 40명 기준) 181백만원 중 인건비 46~48% 차지, 시간외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또는 운영법인(단체)에서 별도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변경	
운영기관 방역조치	청소년방 방역조치			1로나19	* 지역적(등 전국 성부 방역 인 특수 상 : 등)의 빙	기침을 황발생시 관	준수 b 지자체	○변경	
	ㅇ예산규	모 : 31		<u></u> }원 }위 : 천원)	ㅇ예산규	○예산규모 : 31,104백만원 (단위:천원)				
	구 분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구 분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n .1	기본형	119,226	178,062	250,808	기본형	121,078	181,207	255,312	ㅇ변경	
예산 퍼서	- 농산어촌형	122,676	183,102	257,458	농산어촌형	124,600	186,343	262,094	('24년 예산에	
편성	장애형	-	150,402	210,708	장애형	-	153,379	214,996	따른 운영비 변경)	
	다문화형	-	163,102	_	다문화형	-	166,139	-		
	탄력운영형	72,872	-	_	탄력운영형	74,328	-	_		
	주말형	47,002		-	주말형	49,240	-	_		
	※ 추가 사	업비(임차료	지원) 미포	함	※ 통학버스	운영비 미	포함			

구분			2023년도			비고	
예산 편성 기준	활성 대경	급·간식비 일반영비 보증하여	세 부 내 용	으. 승'	급·간식비 사업영비 제) 사자드로	* 파기시청군장비 : 사업시청,	o 변경
종사자 처우 개선	이지자체별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 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 편성 권고(보조금 매칭 예산 외 별도)			위 수 외 - 공 지 있 외 또	해 추 변 5 명 5 명 5 명 5 명 5 의 등 이 이 는	별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가 복리후생비 및 각종 [성 권고(보조금 매칭 예산 E)]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임금 권고안을 적용할 수 이 경우 국비 지원액 필요한 예산은 수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부담	변경(지자체 인건비지원근거 추가)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평가대상	- 전국 운영기관 중 광역시 소재 기본형, 탄력운영형	- 전국 운영기관 중 도 지역 소재 기본형, 탄력운영형	○변경
안전관리	* 신설	* 약사법에 따라 비상약품은 의약외품만 가능하며, 보건관리자(의사, 간호사)가 있는 경우에만 의약품 비치 가능. 참여 청소년에게 의약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종사자와 청소년이 동행하여 약국 에서 구매하여 지급 가능	신설(관련법령 규정 명확화)
	○반기(학기초 필수) 1회 1시간 이상 안전대비 교육(심폐소생술, 재난대응요령 등) 및 비상대피 훈련 실시	○참여 청소년 대상 반기(학기초 필수) 1회 1시간 이상 안전대비 교육(심폐소생술, 재난대응요령 등) 및 비상대피 훈련 실시	ㅇ내용 명확화
행정사항	○분기별 현황조사(참여 청소년, 참여 실무자, 대기자 등) 제출	o 업무지원서비스를 통한 월별 현황조사(참여 청소년, 참여 실무자, 대기자 등) 제출	o 변경
예산편성 기준 (예시)	* 인건비는 해당 지자체 및 기관의 임금 체계에 따라 편성 가능하나, 이에 따른 총임금(기본급·제수당 등)은 아래 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함(최소기준) * 사업운영에 필요한 고정자산, 제수당 등의 인건비는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 사업운영비는 운영 유형별 인건비- 사업비 예산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자율 적으로 단가 조정 가능	* 인건비는 운영 유형별 인건비-사업비 예산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및 기관의 임금체계에 따라 편성 가능하나, 이에 따른 총임금 (기본급·제수당 등)은 아래 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사업운영비는 운영 유형별 인건비-사업비 예산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단가 조정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운영시작 전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책상, 결상 등)의상태를 파악하여 교체하도록 노력(고정자산 예산 확보)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 복리후생비, 각종 제수당 등의 인건비는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권장	○ 변경

구분	2023년도											2	024է	크도			비고
	i	항 5	루	탄력 운영형 (15명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항 목		탄력 운영형 (15명)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주말형 (30명)	
	인 건		팀장	26,889 (2,24(천원× 12개월 ×1명	(2,033 천원× 12개월	26,880 (2,240 천원× 12개월 ×1명)	29,772 (2,481 천원× 12개월 ×1명)	12,376 (1,031		급	팀 장	27,552 (2,296 천원× 12개월 ×1명)	25,008 (2,084 천원× 12개월 ×1명)	27,552 (2,296 천원× 12개월 ×1명)	30,528 (2,544 천원× 12개월 ×1명)		
	1 日	여	담임	-	24,132 (2,011 천원× 12개월 ×1명)	48,264 (2,011 천원× 12개월 ×2명)	72,396 (2,011 천원× 12개월 ×3명)	천원x 12개월	인 건 비	여	담임	-	24,744 (2,062 천원× 12개월 ×1명)	49,488 (2,062 천원× 12개월 ×2명)	74,232 (2,062 천원× 12개월 ×3명)	12,684 (1,057 천원× 12개월)	
	사업	(간 포 인	식비 식비 함) 반	근거	체 또는 기하여 단가 기	사율 책정	꺄	정에		정규직 * 전환 비용		* "공공 ¹ 전환	원단가: 19당 年 2,820천원 라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2017.7.20.관계 합동)"의 정규직 전환 추진				
	운영 비	운	흥비 량		범위 내 운 시세 고려			<u> </u>	. —			대상 * 지자처	1,2단계 기 또는 기	관에 교 관의 식비	루 단가 규 ⁻		
) 함 함		^/^ 고더 00원×청소		- 元.9.7上	<u> </u>		급식비 근거하여 정부지원 단가(5,000원) 이상으로 (간식비 자율 책정 가능 포함) - 예산범위 초과 시 추가되는 예산은						산은	
							사업 운영 비	ő]반 경비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가능 * 예산 범위 내 운영비 자율편성(참여 청소년 실무자, 자원봉사자 등 보험료 포함)							
										え	 량 영비	* 지역시	세고려야	여단가 <i>조</i>	정기능하며 인건비 지	지않자량,	
										보험 * 10,000원(최소기준임)×청소년 수							
	추가사업비 어린이 유 형 별 기본단가 저기의 통학버스								유 형		별	기본	단가	어린이 등 수요제출			
					기		수	-L 학버스 요제출 기관		7	본	30명 /OF	121,07		8,040		
		기·	ㅂ		119,226,000	4,500,0		040,000			형	40명	181,20		8,040		
		7	ġ .		178,062,000	4,500,0		040,000				60명	255,31		8,040		
			\rightarrow	-	250,808,000 122,676,000	4,500,0 4,500,0		040,000 040.000	01	날	:산	30명 40명	124,60		8,040		
연간	일	농	사		183,102,000	4,500,0		040,000	일 반	어	촌형	40명	186,34		8,040		○ 변경
운영비	반	어촌	-0		257,458,000	4,500,0		040,000	형		60명 20대	262,09 153,37		8,040		~ 건성	
	형	1	\top		150,402,000	4,500,0		040,000		장	애형	20명 30명	214,99		8,040		
		장	ዘ 명	30명	210,708,000	4,500,0	000 8,0	040,000		rl	ㅁ뉡						-
		-	_	30명	163,102,000	4,500,0	000 8,0	040,000		\vdash	문화	30명	166,13	7,000	8,040	,000	
		탄 운영	명형		72,872,000	4,500,0		040,000		운	<u></u> 년 영형	15명	74,328		8,040	,000	
		말형	_		47,002,000	2,500,0		-	_	주말	형	30명	49,240),000	-		
	* 주	가사	섭비	(선기관)	은 디지털	제엄활동	글 중심 [⊆]	'도 운영 									

■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일반사항		○동 지침을 참고하여 각 시·도에서 자체규정 마련	신규
인사 및 보수관리	o'22년 대비 '23년 기본급 1.7% 인상(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o'23년 대비 '24년 기본급 2.5% 인상(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변경
예산 편성 및 집행	○전환사업보조금과 지방비를 합산 한 예산총액 대비 사업비는 23%이상 편성 권고	○ 전환사업보조금과 지방비를 합산 한 예산총액 대비 사업비는 23%이상 편성 권고 ☞ 예산총액에 별도 수탁하는 사업비,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한 인건비는 제외	의미 구체화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ㅇ구성 - 자치단체 청소년 업무 총괄공무원 (과장급 이상)	ㅇ구성 - 자치단체 청소년 업무 총괄공무원 (팀장급 이상)	변경
인사 및 보수관리	○수탁단체 변경 시 직원의 고 용승 계	수탁단체 변경 시 가능한 해당 센터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 및 유지 노력필요	변경
〈참고3〉	ㅇ'23년 기본급 기준표 제시	o'24년 기본급 기준표 제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2.5%)	변경

■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개요	□ 사업개요 ○추진근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주체: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 단체 공동 운영	□ 추진근거 등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변경
운영현황	 2006년 210개소에서 2023년 331개소 운영 지원 - 공공 수련관 및 문화의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중심 선발지원 	 2006년 210개소에서 2023년 331개소 운영 지원 - 공공 수련관 및 문화의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중심 선발지원 2024년 ~ 국비지원 종료 	추가
운영방향	나. 세부 계획 (1) 운영대상 이대상: 청소년수련시설 331개소 이지원: 1개소 당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2백만원 이내 * 예산: 국비 331백만원(청소년육성기금,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지원) 이지역 내 청소년(9세~24세)으로 10명 이상~20명 이내 이일반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장애청소년, 한부모가정청소년, 조손가정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청소년 위주로 구성되어야 함	나. 세부계획운영방향 (1) 구성 ○지역 내 청소년(9세~24세)으로 10명 이상~20명 이내 ○일반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교박 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장애청소년, 한부모가정청소년, 조손가정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청소년 위주로 구성 되어야 함	변경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청소년 운영위원 선발	□ 모집 및 선발 ○모집대상 -전체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함 * 연임되는 인원 이외의 인원을 신규 선발하도록 함 - 신규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공개모집과 추천모집(학교, 관련기관 및 단체)를 적절한 비율 (50:50 권고)로 적용할 수 있음	(2)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선발	변경
주요활동 내용	 청소년수련시설 내 다양한 진로 역량제고 관련 활동 장려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수련시설 내 청소년협동조합 등 다양한 활동 장려 ○ 지자체 방역지침 준수 필요 상황 발생 시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능 ▶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지자체의 생활방역지침 등을 준수하여 운영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년 운영위원회 회의 및 활동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능 	 청소년수련시설 내 다양한 진로 역량제고 관련 활동 장려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수련시설 내 청소년협동조합 등 다양한 활동 장려 지자체 방역지침 준수 필요 상황 발생 시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능 	변경
의견 및 활동 관리	□ 의견 제출 및 조치 ○청소년운영위원회 간사(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연간계획, 활동 및 회의내용, 의견 반영 여부를 「청소년수련 시설포털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함(매월) * 레 미지원 수련시설 운영위원회도 활동실적 등록 ○각 시・도는 소관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정기적인 활동을 점검하고 활동실적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함(반기별) 《여성가족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차년도 지원 대상 선정	ㅇ각 시·도는 소관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정기적인 활동을 점검하여야 함	변경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활성화 지원	□ 여성가족부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단 선정 및 운영 지원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전국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 추진 □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는 「시·도별 운영위원회 대표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정보 교류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수련시설포털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활동실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내	□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는 「시·도별 운영위원회 대표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정보 교류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변경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등 제출(각 시·도) ○'23년 1월~2월:'23년 기본계획서, 교부금신청서, '22년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23년 3월:'23년 청소년운영 위원회 구성현황 제출 ○'23년 7월:'23년 상반기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실적 제출 ○'23년 12월:'23년 하반기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실적 제출	(삭제)	삭제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점검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청소년수련	시설 종합 평가〉		
평가대상	○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특화시설	o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야영장	변경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성적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여가부)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성적 우수시설에 대해 "최우수시설" 인증 표식 게시(2년간)	o 전년도 미흡등급 시설 컨설팅 추진	추가
〈청소년수련〉	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점검대상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및 2022년 점검유예 시설 - 여성가족부: 민간 설치시설 전수 및 공립 시설 중 '21년 점검결과 부적합 또는 C등급 이하 2개 이상 시설,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자재, 모험시설 등이 설치된 시설 추가 점검 - 지방자치단체: 관내 공립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전체 및 2022년 점검 유예시설(자연권 수련시설, 민간시설 포함 * 타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도 포함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및 2023년 점검유예 시설 - 여성가족부 : 자연권 민간 설치 시설(우수시설 일부제외) 및 공립 시설 중 화재 취약자재(샌드위치 패널, 드라이비트) 사용 시설, 모험 시설(집라인, 챌린지코스, 인공 암벽장) 설치 시설, '22년 점검결과 부적합 또는 C등급 이하 2개 이상 시설 대상 점검 - 지방자치단체 : 관내 공립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시설 전체 및 2023년 점검 유예 시설(생활권 수련시설, 민간시설 포함) * 민간시설 중 직전 점검 우수시설(35개) 일부 및 시설 소재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 점검	변경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세부 점검방법	1. 중앙 점검	1. 중앙 점검	변경
세부 점검방법	2. 지자체 점검	2. 지자체 점검	변경

■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인건비 편성	○ 기본급 - 청소년지도사 1급: 2,064천원 - 청소년지도사 2급: 1,960천원 - 청소년지도사 3급: 1,894천원	○ 기본급 - 청소년지도사 1급: 2,180천원 - 청소년지도사 2급: 2,132천원 - 청소년지도사 3급: 2,100천원	변경

■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보험한도 상향	* 보험 보장금액이 사망·후유장애 8천만원 이상, 부상 1급 1천5백만 이상 등 가입 확인	* 보험 보장금액이 사망·후유장애 1억5천 만원 이상, 부상 1급 3천만원 이상 등 가입 확인	변경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 안전교육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비고
안전교육 시스템내 프로그램	 (교육대상) 수련시설 종사자, 공무원, 시도센터 (과정) 청소년수련시설 찾아가는 안전교육 외 12개 프로그램 	○(교육대상) 수련시설 종사자 및 활동지도자, 청소년, 공무원, 시도 센터 ○(과정) 청소년활동 안전관리 외 23개 프로그램	변경

청소년 복지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목차(순서)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나. 법적근거	나. 법적근거 ㅇ(추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 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신설
	(신설)	다. 운영주체 o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복지실무위원회 등 청소년안전망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 단체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청소년안전망 운영 지원 기관임	신설
개요	다. 사업내용	라. 사업내용 이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이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 이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사례 관리 모니터링 이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운영, 필수연계기관 상호 연계 및 1388청소년지원단 등 민간기관 협력 촉진 조치 ※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하생략) 이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지역 청소년안전망 운영 총괄 관리	변경

구 분	202	3년도		202	4년도	비고
	라. 연혁		마. 연호	<u> </u>		
			'19. 9.	• 2019년 시범사업 관계장관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실시('19.5.17, 사회 회의)	
			'20. 1.	• 지자체 청 선도사업 ☞ '23. 1 안전명]소년안전망 시범사업이 으로 개편 2. 종료(지자체 청소년 선도사업)	변경
			'23. 6.	• 위기청소 1단게 운	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영	
			'24. 1.	• 이기처시1	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자체 주도 청소년안전망	
	마. 현황		마. (삭	제)		
	바. 성과목표		바. 성고	가뭄표		
	성과지표	내 용		라지표	내 용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위기 변화도	서비스 이용 전·후 위기수준변화율	청소년안 효과성(⁹ 변화도)	전망 서비스 위기수준	서비스 이용 전·후 위기수준변화율	
	청소년안전망 수혜청소년 만족도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 측정	청소년인 소년 만	전망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청소년의 만족도 측정	변경
개요	청소년안전망 고위기청소년 개입도	전체 서비스 수혜 청소년 중 위험군 및 고위험군 청소년 비율	청소년안 고위기청 개입도**		전체 서비스 수혜 청소년 중 위험군 및 고위험군 청소년 비율	
.,-	청소년안전망 연계실적	필수연계기관 및 기타 기관으로 연계 및 협업 지원 건수	청소년인 연계실적	전망	필수연계기관 및 기타 기관으로 연계 및 협업 지원 건수	
	○ 필수연계기관이 ○ 청소년안전망, 학교 밖 청소년 연계의 활성화 유입 청소년에 질적 향상 도도 -특히, 청소년특 수혜자들이 청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 전 지원 프로그램 로 청소년안전망 대한 사례관리의	o 청소년 학교 연계의 청소년 향상 - 특히 청소 사례) 면계기관어 현상담복지- 밖 청소년 의 활성화료 현에 대한 도모 , 위기청소 자들이 청소 년안전망 관리를 빌	에서 (이하생략) 센터, 청소년동반자, 현 지원 프로그램 전 청소년안전망 유입 사례관리의 질적 산년특별지원사업 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을 통해 정기적인 남을 수 있도록 의 관리 철저	변경
	아. 추진체계 ㅇ사업 운영 주체 ㅇ청소년안전망 -		아. 추진 ㅇ도표	<u>]</u> 체계 및 체계도	E 수정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청소년 안전망 구성	가. 청소년안전망 구성 2) 필수연계기관의 구성 및 역할 [붙임 표]	가. 청소년안전망 구성 2) 필수연계기관의 구성 및 역할 [붙임 표] -(추가) 지방자치단체 역할 추가 (관할지역 위기청소년 사례발굴·관리 현황 모니터링 등) -(추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변경
	가. 청소년안전망 구성 3) 필수연계기관의 연계절차	가. 청소년안전망 구성 3) 필수연계기관의 연계절차 ○ 연계절차 ─ 필수연계기관 간 의뢰 시 먼저 본인 이나 보호자의 연계 희망 여부를 확인한 후 【서식 1】의 「서비스 연계동의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치, 1부는 연계기관으로 송부 ※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사용하는 필수 연계기관의 경우, 시스템 내 연계의뢰 매뉴를 활용하여 사례 의뢰	변경
	가. 청소년안전망 구성 4) 필수연계기관 이외의 협력 강화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연계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센터 및 기관 들과 적극적으로 협력·도모해야 함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1366, 해바라기 센터 등) - 청소년성문화센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복지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 센터, 드림스타트	○지방자치단체 및 필수연계기관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연계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센터 및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도모해야 함 -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1366, 해바라기센터 등 - 청소년성문화센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복지관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청소년 안전망 구성	-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직업 훈련기관 - 법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살 예방센터 등	- 법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살 예방센터 등 -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직업 훈련기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관련 유관기관 안내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고용노동부, (1644-3119)) (이하 생략)	
	가. 청소년안전망 구성 (추가)	가. 청소년안전망 구성 5) 필수연계기관 운영 관리 ○관리방법 : 시스템 활용 ○입력주체 : 지방자치단체 ○입력방법 : 청소년안전망시스템〉 긴급대응·지원기구〉지원기구관리〉 필수연계 및 협력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조회만 가능, 등록 불가 ※ 이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청소년 지원단, 긴급대응체계 내용 하단에도 운영 관리 방법(시스템 활용 방법) 추가	신설
	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2) 구성 및 운영 - 관할 지역에 청소년관련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에서 그 결과를 3일이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 ※ 본 지침 內 '3-라. 지역사회내 긴급상황발생시 대응체계확립'참고세부적인 사항은 '위기개입 5판'內 긴급대응 매뉴얼 참고	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2) 구성 및 운영 - 관할 지역에 청소년관련 위기상황 발생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에서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 (개최 및 결과는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 등록) ※ 본 지침 內 '3-라. 지역사회내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참고 세부적인 사항은 '긴급대응체계 운영 매뉴얼(청소년안전망시스템-자료실)'참고 - 서면심의나 대리출석에 의한 심의, 서면 회의는 불가(실무위원회도 동일) * 다만 대규모 감염병 유행시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관할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심의(영상, 서면 등)도 가능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다.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실무위원회 정의 이 인력관리 및 교육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를 위해 상담복지센터에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자급 위원회	다.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실무위원회 정의 이인력관리 및 교육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 실무자급 위원회	변경
청소년 안전망 구성	마. 1388청소년지원단 구성 및 운영 4) 운영 • 1388청소년지원단장 중심의 총회 연 1회 실시 (단, 하부지원단은 자율적으로 운영,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 ※ 총회 운영시 하부지원단 2개 이상 참가 필수	마. 1388청소년지원단 구성 및 운영 4) 운영 o 1388청소년지원단장 중심의 총회 (연 1회) 또는 하부지원단 회의 (반기별 1회) 운영 ※ 총회(연 1회) 운영 시 하부지원단 2개 이상 참가 필수 ※ 하부지원단 회의(반기별 1회)로 대체 할 경우 반기별로 다른 하부지원단 회의를 운영해야 하며, 이외의 하부지원단 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변경
	바. 정신건강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 2) 구성 및 운영 정신건강 전문자문단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 의료·학계·상담 등 관계 전문가를 전문자문단으로 선정 가.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1) 위기청소년 발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 1388(청소년전화1388, 사이버 상담, 모바일 상담)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 발견	바. 정신건강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 2) 구성 및 운영 ○정신건강 전문자문단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 - 의료·학계·상담 등 관계 전문가를 전문자문단으로 선정 * 1388 청소년지원단의 의료·법률 지원단 등 활용 가능 가.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1) 위기청소년 발견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1388(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아웃리치 및 청소년1388 포털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발견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청소년상담1388 사이버상담 및 모바일 상담 이(내용) 청소년전화 1388 이외에도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사이버상담(채팅, 게시판, www.cyber1388.kr) 및 모바일 상담(문자 1388, 키카오톡, 페이스북 상담) 운영 ※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상담은 '청소년상담 1388'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 이(운영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이(청소년안전망과 연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대면 상담대기일수가 길어질 경우 사이버·모바일 상담 안내 * 사이버·모바일 상담 이후 (이하생략)	청소년상담1388 온라인 상담	변경
청소년 안전망 운영	가.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일시보호소 운영(시·도만 해당함) ○일시보호소를 미운영하는 지역의 경우 청소년쉼터(일시, 고정형)과의 통합운영 등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함	가.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일시보호소 운영(시·도만 해당함) ○시·도에서는 이용인원 저조 등 사유로 일시보호소를 선택 운영 (주·야간, 남·여 등)하거나 미운영 할 수 있으나, 쉼터 등 연계 방안을 상세히 마련하여 지자체에 보고하고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안내해야 함 * 이 경우 야간 상담인력(1388 전화상담원 등)이 위기청소년 연계를 전담해야 하며, 긴급구조 대상 청소년의 교통비·식비 등을 청소년안전망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음 * 일시 쉼터가 미설치 되거나, 연계 방안이 마련 되지 않은 지역은 일시보호소를 반드시 운영 하여야 함	변경
청소년 안전망 운영 인력관리	4. 청소년안전망 운영 인력 관리	(이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챔터로 이동	변경

구 분	202	23년도	20	2024년도		
	나. 예산 편성 1) 청소년안전명	강 예산	나. 예산 편성 1) 청소년안전 * 청소년상담복자산 종합심리평가 또 고위기청소년 집 동반자 프로그램	- 배치), 선설		
		- ', -		지원	=	
예산 편성 및 집행	상담사업의 - ***********************************	· 사업과 지방청소년 구분 과 지방청소년상담사업 항목 구분 ■ 공통사업 지방청소년 상담사업(C) (생략) (생략)	상담사업의 청소년안전망사업 예산집형 청소년안전망사업 (A) (시·도, 시·균·구 공통) ○ 필수연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사례관리회의. 1388청소년 지원단등 지역 연계사업 (이하 생략) * 청소년안전망과 분리 운영(청소 청소년상담사업 * 청소년안전망 사업 상담복지센터 운영 심리평가 프로그램	검과 지방청소년성 행 항목 구분 ■ 공통사업 지방 (B) (생략) (생략) 지방청소년상담사 년안전망 예산으로 추진 불가함)	변경 예산 전 예산 전 지방 (청소년 년 종합 남중심리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예산 편성 및 집행	나. 예산 편성 4) 청소년안전망 예산 편성 기준다. 이용료 등 수익금의 처리라. 청소년안전망 예산 집행 원칙	(이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챕터로 이동	변경
회계처리	7. 회계처리	(이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챔터로 이동	변경
참고 2	청소년안전망 종합정보망 이용 및 실적 입력 안내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이용 및 실적 입력 안내 (시스템 입력 방법 등 내용 수정)	변경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과 목차(순서)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개요	마. 기타사항 ㅇ(신설)	마.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통장 개설 등 필요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인서(서식 1 참고)를 발급할 수 있음	신설
설치· 9.여	다. 명칭 및 로고	다. 명칭 및 로고	변경
운영 기준	바.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이센터는 이용자가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바.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이센터는 이용자가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안전망 지원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내담자에게 안내	변경
조직 구성	가. 공통 사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필수 연계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 위원회'를 두어 관련기관 간 협력사항 등에 관한 실무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신설)	가. 공통 사항	변경
	(이동)	라. 사회복무요원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챕터에서 이동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가. 종사자 채용	가. 종사자 채용	변경
인사 관리	마. 종사자 복무 ㅇ근무 시간 -원칙: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이하 생략)	마. 종사자 복무 ○근무 시간 -원칙: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이하 생략) (이동)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참터에서 이동 - 단, 시·도센터 일시보호소 종사자는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보호 등을 위한 24시간 상담 및 구조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근무형태 권장(2교대, 3교대, 4교대 등) ※ 〈예시〉 3교대의 경우 ① 오전조(06:00~15: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② 오후조(14:00~23: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③ 야간조(22:00~0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② 오후조(14:04-04-04), ② 오후조(14:04-04-04), ② 오후조(14:04-04-04), ② 오후조(14:04-04-04), ② 오후조(14:04-04-04), ③ 아간조(22:04-04-04), ③ 아간조(22:04-04-04), ③ 아간조(22:04-04-04), ③ 아간조(22:04-04-04), ③ 마간조(22:04-04-04), ③ 마간조(22:04-04-04-04), ③ 마간조(22:04-04-04-04-04-04-04-04-04-04-04-04-04-0	신설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인사 관리	1) 보	나자 보수 수체계 의 구성 및 지급방향 지도상담원의 연봉은 직무 난이도, 성, 근무시간 등에 따라 정하되, 3년 시간당 최저임금(9,620원) · 준수	1) 보 o 보수 - 생활 난o 정하	사자 보수 수체계 의 구성 및 지급방향 할지도상담원의 연봉은 직무 l도, 전문성, 근무시간 등에 따라 나되,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360원) 이상 준수	변경
	1) 보 · ㅇ수당	나가 보수 수체계 등의 편성·지급 급 수당의 종류 및 내용(참고) ■ 지급 내용 •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월 14만원) •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근속수당, 자격수당 [*] 등기타 제수당 * 예시) 청소년상담사 1급: 7만원, 2급: 5만원, 3급: 3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지급	1) 보 ㅇ수당	사자 보수 수체계 · 등의 편성·지급 l급 수당의 종류 및 내용(참고) ■ 지급 내용 •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월 14만원) • 청소년상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 지급 * 예시) 청소년상담사 1급: 10만원, 2급: 7만원, 3급: 5만원 •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근속수당 등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지급하되, 지자체는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노력해야 함	변경
	2) 호· •초임 종류	부자 보수 봉의 희정 및 재회정 호봉의 희정 및 재회정 ^{초임호봉} 회정 센터에 신규 내용되는 자 • 팀원에서 팀장으로 '승진' 하였을 경우, 기존 호봉에서 1호봉을 낮추어 책정	2) 호 o 초임 종류	사자 보수 봉의 획정 및 재획정 호봉의 획정 및 재획정 ^{초임호봉} ^{회정} - 센터 내에서 '승진'하였을 경우(팀원에서 팀장으로 등), 기존 호봉에서 1호봉을 낮추어 책정 * 행정원에서 팀원으로 승진할 경우 호봉 재획정은 종사자 경력 산정 기준표에 따름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	도	비고
인사 관리	사. 종사자 역량 강화 이의무 교육 : 업무 관련 교육, 법정 교육 ② 법정 교육 (추가)	사. 종사자 이의무 교육 ② 법정 구분 안전관리 교육·훈련 (생략)	- : 업무 관련	변 교육, 법정 교육 비고 연 1회 이상(소화· 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교육)	신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	연 1시간 이상 * 집합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가능	
학교 폭력 예방 및 상담 지원	6.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지원	(삭제)			삭제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 그램 사업 운영	7.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사업 운영 ※ 안전망팀 내용	가. 고위7 그램(⁷ 나. 자살·]청소년 종 [·] 정신건강임성	지원 사업 운영 합심리평가 프로 상심리사 등 배치) 위기청소년 집중	변경 및 신설
예산	(이동)	' '	성 및 집행 청소년통합지원	 원체계 챕터에서 이동	신설 및 변경
편성 및 집행	4) 청소년안전망 예산 편성 기준	편성 <i>7</i> * 기존 지침 사업을 의 ㅇ 인건비,	준 상(2023년까 미	러 운영지원 [*] 예산 지) 청소년안전망 영비의 적절한 함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주요항목	내 용	주요항목	내 용	
	인건비	○청소년안전망 예산으로 시·도는 6명, 시·군·구는 2~3명 지원 * 센터의 장의 인건비는 반드시 지방 상담사업비로 집행 (이하 생략)	인건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시·도는 6명, 시·군· 구는 2~3명 지원 * 센터의 장의 인건비는 반드시 지방 상담사업비로 집행 (이하 생략)	
예산 면성 및 집행	사업비	○사업비는 세부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편성하되, 시·도는 청소년안전망 예산'의 20% 이상, 시·군·구는 15% 이상 사업비로 편성 * 정규직 전환, 청소년동반자,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및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지원((구)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의 예산은 제외 ○세부사업 -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 사업 (생략) - 지역연계협력사업: 실무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 교육연수 및 홍보, 기타 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 사업 * 프로그램 및 회의 진행 관련 부대 비용(식사, 다과 제공 등)은 사업비 내 편성 가능	사업비	○사업비는 세부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편성하되, 시·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예산*의 20% 이상, 시·군·구는 15% 이상 사업비로 편성 (단 시·군·구의 경우 지자체 현안에 따른 위기지원팀 신설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 이상 사업비로 편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방상담사업비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센터 고유 사업 등이 미진하지 않도록 조치 해야 함) * 정규직 전환, 청소년동반자,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평가 프로그램 (임상심리사 배치),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예산은 제외 ○세부사업 -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 사업 (생략) - 지역연계협력사업:1388청소년 지원단 - 교육연수 및 홍보, 기타 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 사업 * 프로그램 및 회의 진행 관련 부대 비용(식사, 다과 제공 등)은 사업비 내 편성 가능 * 좀사자 교육·소진방지프로그램 (워크숍) 등 운영 시 청소년동반자 포함하여 운영 가능	
	(신설)		그램(다. 자살·	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프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배치) 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집중 클리닉 운영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예산 면성 및 집행	(이동) 다. 이용료 등 수익금의 처리라. 청소년안전망 예산 집행 원칙이시·군·구 청소년안전망 사업 중주요항목(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간의 소요경비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군·구청장으로 권한 위임 가능)을 얻어야 하며, 주요항목(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내에서의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가능. 단, 주요 항목 내 100만원 미만예산 변경 필요시 센터장의 내부 승인으로 전용가능하며, 예산전용 후 1주일 내 지자체에 공문 보고(권한 위임 시 사업비 예산감액 조정불가능 명시 / 시·군·구 15% 이상)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챕터에서 이동 라. 이용료 등 수익금의 처리 마. 청소년안전망 예산 집행 원칙 ㅇ시·군·구 청소년안전망 사업 중 주요 항목(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간의 소요경비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 (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군·구 청장으로 권한 위임 가능)을 얻어야 하며, 주요항목(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내에서의 변경은 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 단, 주요 항목 내 100만원 미만 예산 변경 필요시 센터장의 내부 승인으로 전용 가능하며, 예산전용 후 1주일 내 지자체에 공문 보고 (권한 위임 시 사업비 예산감액 조정 불가능 명시 / 시·군·구 10% 또는 15% 이상)	변경
회계 처리	(이동)	8. 회계처리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챕터에서 이동	변경
행정 사항	○센터 설치·운영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지자체장은 관련 사항을 여성 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센터 설치·운영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지자체장은 관련 사항을 여성 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경유) * 위탁법인, 센터장,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 등록된 주소 변경 및 관내 필수연계기관에 안내하는 등 현행화 조치 필요	변경
서식 1	(신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인서 양식	신설
서식2	직원증(동반자증)	직원증	변경
별표 2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종사자 자격 기준 수정(정신건강임상심리사 추가 등)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	년도	비고
별표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기준표〉				〈 변	경〉			변경
			고료 및 강사	료 지급 기준〉			고료 및 강사	료 지급 기준〉	
	구 분	지급 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W = 5	일	최초 1시간	100,000원 이내	1. 대학교(원)의 강사(급) 이하(예 : 시간강사, 외래교수 등) 2. 주무관(급) 이하 공무원	일	최초 1시간	120,000원 이내	1. 대학교(원)의 강사(급) 이하(예 : 시간강사, 외래교수 등) 2. 주무관(급) 이하 공무원	IJ··
増표 5	반 3	초과시 (매시간)	30,000원	3. 기업체 과장(급) 이하 4. 유관기관 및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5.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반 3	초과시 (매시간)	40,000원	3. 기업체 과장(급) 이하 4. 유관기관 및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5.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변경
	출정	상여비 :	지급 기준				항 지침 박 비규정 기	반영 배정 사항 반영)	
별표 6	0.7	일비·식 숙박비 사가용 ' 「'18년	비 2만원 실비 상호 이용시 운 공무원보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7	일비·식 숙박비 사가용 ' 「'23년	비 2.5만 실비 상호 이용시 운 공무원보	한액 7~10만원	변경
별표 7	5.	개인정 있으며,	보 동의 , 동의 거	용 동의서(예시)〉 를 거부할 권리가 부에 따른 서비스 기익이 없습니다.	5.	위의 <i>7</i> 동의를 거부할 청소년 ⁹	배인정보 거부할 권하 경우 청소 간전망 ㅈ	·용 동의서(예시)〉 수집·이용에 대한 리가 있으며, 동의를 ·년상담복지센터 및 시원서비스 이용에 있습니다.	변경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라. 사업 내용 및 성과지표 ○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현황 - '22년 : 1,363명 - '23년(계획) : 1,398명	라. 사업 내용 및 성과지표 ○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현황 - '23년 : 1,398명 - '24년(계획) : 1,398명	변경
개요	○(2023년도 성과목표) 청소년동반자 수혜청소년 수 ① 청소년동반자 수혜청소년 수 -청소년안전망 시스템에 입력된 청소년동반자 수혜청소년 수는 (이하생략)	○(2024년도 성과목표) 청소년동반자 지원청소년 수 ① 청소년동반자 지원청소년 수 -청소년안전망 시스템에 입력된 청소년동반자 지원청소년 수는 (이하생략)	변경
	가. 대상청소년 및 발굴경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및 청소년 상담1388(1388 전화, 청소년사 이버상담센터의 사이버 및 모바일 상담 포함)(이하생략)	가. 대상청소년 및 발굴경로	변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다. 서비스 주요 내용 이위기청소년의 문제유형 및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을 연계한 후 지속적이며 일관된 서비스 제공 -청소년동반자와 연계된 위기청소년 에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종합적인 정보와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 -가족갈등·가정해체 등을 겪은 쉼터 퇴소 청소년, 자살·자해 청소년 등은 동반자 연계를 통해 밀착 관리 지원	다. 서비스 주요 내용 이위기청소년의 문제유형 및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을 연계한 후 지속적이며 일관된 서비스 제공 -청소년동반자와 연계된 위기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종합적인 정보와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 -가족갈등·가정해체 등을 겪은 쉼터 입·퇴소 청소년, 자립지원관사례·사후관리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보호청소년, 자살·자해청소년 등은 동반자 연계를 통해밀착 관리 등 서비스 적극 지원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인사 관리	가. 종사자 채용	가. 종사자 채용	변경
	라. 종사자 보수	라. 종사자 보수 이기본방향 - 종사자 보수가 근로기준법상 2024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4년 보수수준이 2023년에 비해 높아지도록처우개선 방안 마련 - 청소년동반자는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생활밀착상담을 제공하며, 지역 자원을연계하여 사례관리를하고 있어청소년동반자의 역할과 전문성을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변경
	라. 종사자 보수 ○ 청소년동반자 예산의 구성 및 운영 방향 (청소년동반자 예산 체계) ◆ '23년 1인당 예산 단가(연): 전일제 30,824천원, 시간제 11,736천원 1) '23년 예산 편성 기준 : 보수, 법정부담금(기관분, 근로자분), 사례진행비, 사업운영비 등 * 컨설팅, 정규직 예산은 별도 * 동반자 처우개선,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방비추가 편성 가능	라. 종사자 보수 ○청소년동반자 예산의 구성 및 운영 방향 〈청소년동반자 예산 체계(참고)〉 ◆ '24년 1인당 예산 단가(연): 전일제 31,428천원 이상, 시간제 11,738 천원 이상 1) '24년 예산 편성 기준: 보수, 법정 부담금, 사례진행비, 사업운영비 등* 컨설팅, 정규직 예산은 별도 * 동반자 처우개선(인건비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제수당, 기관부담금 등의 인건비 포함) 및 사업운영을 위한 추가 소요 예산은 소관 지자체 부담	변경 · 신설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구 분	2) 보수의 구성 및 지급방향 - 보수는 기본급과 기본급 외 수당 으로 구성 - 각 지자체는 전일제 동반자 임금 지급 시 【별표4】「기본급 기준표」 중 '팀원'의 기본급을 참고할 수 있으며, 조정 시 【별표4】기준보다 낮게 조정되지 않도록 유의 * 호봉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경력	2024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수의 구성 및 지급방향 - 보수는 기본급과 기본급 외 수당으로 구성 ※ 각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청소년동반자의인건비를 호봉제로할수있으며, 보수기본급 기준표와기본급 외수당등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종사자보수등을 준용 * 전일제 동반자 임금 지급 시「기본급기준표」중 '팀원'의기본급을 참고할수있으며, 조정 시 "기본급 기준표"보다	비고
인사 관리	및 청소년동반자 근무 경력만 인정 ※ 시간제동반자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근무경력의 30% 인정 - 지자체는 청소년동반자의 인건비를 연봉제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지침의 기본급 기준을 참고 하여 적절한 연봉수준을 결정 - 기타 제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내 지급 수당의 종류 및 내용(참고) 준용	있으며, 소성 시 기본급 기준표 보다 낮게 조정되지 않도록 유의. ▶ 청소년동반자의 호봉, 승급 등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 준용 ※ 시간제동반자 근무 경력은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근무경력의 30% 인정	변경 · 신설
	3) 사례진행비: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특성상 소요되는 교통비, 휴대폰 보조금 등의 경비 ※ 사례진행비는 경비성 비용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액 지급 - 전일제동반자: 월 195,000원 이상 - 시간제동반자: 월 90,000원 이상 ※ 지역별 운영여건에 따라 정액의 사례진행비 대신 사례 당 단가 적용 가능	3) 사례진행비 : 청소년에게 '찾아 가는' 서비스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특성상 소요되는 교통비, 휴대폰보조금 등의 경비 ※ 사례진행비는 경비성 비용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액 지급(다만, 청소년동반자 채용 시 해당 지급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가능) - 전일제동반자 : 월 195,000원 이상 ※ 지역별 운영여건에 따라 정액의 사례진행비 대신 사례 당 단가 적용 가능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인사 관리	4) 사업운영비 : 예산 단가 범위 (5% 이내) 적정 분배 - 교육비, 회의비(팀회의, 자문회의 등), 소진예방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상담 및 긴급지원 서비스 등	4) 사업운영비: 예산 범위의 5% 이내에서 적정 분배, 필요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예산에서 지원-교육비, 회의비(팀회의, 자문회의등), 소진예방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상담 및 긴급지원 서비스 등	
	 ◆ '23년 1인당 예산 단가 외 기타 사항 1)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수석 동반자 1인당 월 150,000원 기준 2) 정규직 전환 지원: 전일제 1인당 연 276만원, 시간제 40만원 기준 	사항 1)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수석 동반자 1인당 월 150,000원 기준	
사업 운영 및 청소년 동반자 활동	가. 사업운영 ○지자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는 청소년 동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노력을 하여야 함 -가정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유휴공간(학교, 지자체 시설 등) 활용 방안 적극 모색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는 청소년	변경, 신설
		나. 청소년동반자 활동 아사례 배정 기준 -사례 관리 목표 •전일제 연 48사례 이상, 시간제 연 24사례 이상 •단, 수석동반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시·도의 승인을 받아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도의 승인을 받아 탄력적으로 사례관리 수행 가능 ※ 수석 동반자 연 35사례 이상, 군장병 전담 동반자(이하생략)	탄력적으로 사례관리 수행 가능 (연 35사례 이상)	
붙임 1	2023년 시·도별 청소년동반자 기준 인원 및 사례관리 목표	2024년 시·도별 청소년동반자 기준 인원 및 사례관리 목표	변경
붙임 2	학교 밖 청소년 방문 상담	(삭제)	삭제
붙임 3	찾아가는 군 장병 정서 심리 상담	(삭제)	삭제

■ 청소년복지시설(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공통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보조금 교부	ㅇe나라도움시스템 이용 권장	ㅇe나라도움시스템 이용 필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정산 업무는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필수	변경
종사자 안전 대책	〈신설〉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변보호를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의 예산(운영비) 범위 내 에서 다음 사항 조치 가능 이시설 내·외 CCTV 설치 이경찰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이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이시설 응대전화에 녹음 기능 설치, 보호자 전화 폭언 3회 이상 시 통화 거부권 부여 및 관련 내용 컬러링 으로 안내 -전화 폭언의 내용 녹음 등 해당 기록 보존 필요 이페히 발생 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연계를 통한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이종사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피해 지원 및 입소자 정신 질환 치료 지원	신설
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 기준	○시설장(소장) -(상근의무) 시설장은 상근의무가 있으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할 수 없음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추가〉	○시설장(소장) -(상근의무) 시설장은 상근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 기준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종사자 본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서설의 설치·운영자 및 지자체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결격사유 조회를 「형의 실효 등에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각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가능	변경
	○보호·상담원, 자립지원 요원 자격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별표1) 〈추가〉	○보호·상담원, 자립지원 요원 자격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별표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 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 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변경
운영 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시설장의 친인척, ②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o 운영위원회의 구성 * (공통) 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시설장의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인척은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운영 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운영 〈신설〉	○운영위원회의 운영 - 다음 요건 충족 시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이 경우 주무관청이 지도・ 감독 및 분쟁소지 해소를 위하여 영상회의 녹화 보관) 1.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 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2.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3.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책임 보험	o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신설〉	o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 '23.11월 출시된 전용 보험인 '청소년복지 시설 배상책임보험' 적극 활용	신설
	○ 보험 금액 1. 사망의 경우: 8천만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부상의 경우: 60만원~1천5백만원 -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5백만원~8천만원	○ 보험 금액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23.8.1.) - 부상의 경우: 50만원~3천만원 -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1천만원~1억5천 만원	변경
	o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신설〉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요망	신설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보조금	ㅇ시설 유형별 보조금 기준 단가	○시설 유형별 보조금 기준 단가 :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율(약 4.2%) 반영	변경
	o 지출원칙 〈추가〉	 지출원칙 별도 통장 및 회계 장부에 의해 관리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e-나라 전용카드" 사용 등 	변경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 -지급 상한: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 - 지급 상한:시설장 70세, 종사자 65세(단, 60세 이후 호봉 승급 없음)	변경
재무 회계	〈신설〉	 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임용절차, 보수,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 으로 살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 됨 	신설
	〈신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지원단가) 돌봄직 : 월 2,586천원	신설
	〈신설〉	○보조사업 수행실적 제출 -공공·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 순 사업비(국비) 1억원 이상	신설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재무 회계	○운영실태 지도 및 점검 실시 -실시기관 및 횟수:관할 기초자치 단체(연 1회 이상) -결과보고:시·도는 지도·점검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통보(실시 익월 내)	○운영실태·인권실태·안전점검 등지도 및 점검 실시 -실시기관 및 횟수:관할 기초자치 단체(연 1회 이상) -점검결과 취합·분석, 개선방안 마련 및 여성가족부 제출:광역자치단체 (실시 익월 내)	변경
자립 지원	※ 자립지원 대상이 쉼터 청소년에서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으로 확대	o'24년 지원 실적부터 청소년복지 시설 종합평가에 반영	신설
시스템	ㅇ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o 청소년안전망시스템	변경
참고 자료 및 서식	○(쉼터, 자립지원관) 참고 및 작성 서식 ○(회복지원시설) 참고자료 및 서식 목록	○청소년복지시설 참고자료 및 서식 -운영실적 보고 서식 변경(청소년 안전망시스템 이용 반영) *'IV. 청소년쉼터 운영' 뒷면에 통합	변경

■ 청소년쉼터 운영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청소년 쉼터 개요	○ 단기쉼터 : 3개월 이내 단기 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최장 9개월) ○ 중장기쉼터 : 자립의지가 있는 가정 밖 청소년	○ 단기쉼터 : 3개월 이내 단기 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5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최장 24개월) ○ 중장기쉼터 : 가정 밖 청소년	변경
청소년 쉼터 설치 등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서면이 아닌 실제 출석을 통해 실시할 것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서면이 아닌 실제 출석을 통해 실시할 것,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격영상 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변경
	〈신설〉	 ○ 위탁계약의 체결 *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작성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위탁 계약이 해지됨 - 위탁계약기간 중에 시설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가능 	신설
청소년 쉼터 운영 일반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추가〉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⑥ 공개모집 원칙 시행(2005.1.1.) 이전에 채용된 종사자의 경우,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 갖춤과 동시에 전제사항의 ⑭~⑱ 충족한다면 공개모집 원칙 예외 적용 가능	변경
	o 공개모집방법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 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work.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o 공개모집방법 - 법인 또는 시설에서 채용 시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를 제외한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 (bokji.net), 희망이음*(ssis.go.kr) 중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청소년 쉼터 운영 일반	(w4c.go.kr) 중 3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내규 등에 의해 채용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내규 등에 의해 채용	
	 자립활동실비 학위취득, 취업준비활동 등 청소년의 자립준비 비용 ※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대한 실비 지원 성격으로, 사업비 내 별도 항으로 편성하여 집행관리 	○ 자립활동실비 - 온·오프라인 학원수강, 방문학습, 교재비, 직업훈련비 등 학위취득, 취업준비활동,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참여 수당(1인당 1일 5만원 이내) 등 청소년의 자립준비비용 ※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대한 실비 지원 성격으로, 사업비 내 별도 항으로 편성하여 집행관리(자립활동실비는 항간 예산 전용불가)	변경
	○ 수당 등의 편성·지급 - 시설장 및 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자체에서 편성	○ 수당 등의 편성·지급 - 시설장 및 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자체에서 편성(국비 매칭 지방비 의무부담분(50%) 외 추가 편성 필요)	변경
청소년 관리 및 지원	○ 입소 요령 - 가정 밖 청소년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설〉	○ 입소 요령 - 가정 밖 청소년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호자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 중임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청소년에게 안내 및 보호자에게 이를 중심으로 연락	변경
	통합지원체계 연계를 통하여 위기 청소년의 적절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 -자살·자해, 심리정서석 상담 필요 시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청소년 관리 및 지원		-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안내자료 제공 및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등 * 안전망 필수연계기관, 집중심리클리닉, 청소년동반자 등 ※ 상세 내용은 'II.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참조	
	○퇴소시 조치사항 •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한 안내 및 청소년이 희망할 경우 연계지원 -〈신설〉	○ 퇴소시 조치사항 •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한 안내 및 자립이 필요할 경우 연계 지원 -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 LH공공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및 대상자일 경우 신청 필수	변경
	 아사후관리(사례관리 종결 후 6개월 이상) - 쉼터 퇴소(사례관리 종결) 청소년이 또다시 위기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부전화, 온라인 소통, 방문 등의 방법으로 사후 관리 	 아사후관리(사례관리 종결 후 6개월 이상) - 쉼터 퇴소(사례관리 종결) 청소년이 또다시 위기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부전화, 온라인 소통, 방문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 반드시 필요 	변경
	ㅇ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청소년의 근로권익침해나 부당처우 사례 발견 시 상담 및 중재, 무료 권리구제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에 연계 	변경
쉼터 유형별 적용 사항	〈신설〉 쉼터 공통	○관계부처 및 민관협력 자립지원 서비스 적극 활용 - 경제적지원(자립지원수당 등), 주거지원 (LH공공임대주택), 교육지원(장학금, 기숙사 등), 취업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취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경험 지원, 맞춤형 일경험, 취업 연계교육 등), 자산형성(자립지원적금, 디딤씨앗통장 등) 적극 연계	신설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 '24년 운영실적부터 종합평가에 반영 ※ 상세 내용은 Ⅶ.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부분 참고	
	o 찾아가는 거리상담 지원	○ 찾아가는 거리상담 지원 ※ 상세 내용은 '거리상담 활동 매뉴얼' 참조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 탑재)	신설
쉼터 별 사항	(단기쉼터) ○ 운영모형 : 사회복귀 지원 - 학업지원 - 취업/직업지원 ○서비스 내용 중 - 진로상담, 사회적응지원, 교육지원, 직업 지원, 대안생활지원 등 사회복귀지원	(단기쉼터) ○운영모형: 사회복귀(자립)지원 -경제적지원(자립지원수당, 자립정착금 등)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등 연계) -교육지원 -취업지원 -차산형성지원 -생활지원 ○서비스 내용 중 -진로상담, 사회적응지원, 경제적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산형성지원, 대안생활지원 등 사회복귀(자립)지원 ※ 자립지원은 'WII.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부분 활용	변경
	○의료비 지원 〈신설〉	○ 의료비 지원(쉼터 공통) -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활용해 행복e음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의 저소득 의료지원비 등 사회복지 활용 * 시스템상 연계 기능이므로 실제 지원을 위해서는 연계 후 사회복지 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연계 여부 확인, 지원 필요 요청 등 필요	신설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심터 유형별 적용 사항	(중장기쉼터)	(중장기쉼터) ○운영모형: 자립지원 -경제적지원(자립지원수당, 자립정착금 지원)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등 연계) -교육지원 -취업지원 - 자산형성지원 -생활지원 ○서비스 내용 ※ 자립지원은 'WI.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부분 활용 ○중장기쉼터 특성에 알맞은 입·퇴소 관리 철저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사전 안내, 수급자 여부 확인 및 신청 관리 * 자립지원수당, 공공임대주택,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	변경

■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운영 개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주요 업무 -사례관리와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 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 지원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주요 업무 - 사례관리와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경제적 지원,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지원을 개인별 맞춤형 으로 제공 ※ 자립지원수당 대상자에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포함 (상세내용은 WL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1.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참고)	변경
	〈신설〉	○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사례관리: 수급기간 동안 * 쉼터 퇴소 및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이 거나 종결된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대상 → 정원(32명)에는 포함하지 않음 *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은 사례 관리 및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사례관리 함께 진행	신설
재무회계	o 자립활동실비 - 학위취득, 취업준비활동 등 청소년의 자립준비 비용 ※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대한 실비 지원 성격으로, 사업비 내 별도 항으로 편성하여 집행관리	○ 자립활동실비 - 온·오프라인 학원수강, 방문학습, 교재비, 직업훈련비 등 학위취득, 취업준비활동,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참여 수당(1인당 1일 5만원이내) 등 청소년의 자립준비 비용 ※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대한 실비 지원 성격으로, 사업비 내 별도 항으로 편성하여 집행관리(자립활동실비는 항간 예산 전용불가)	변경
자립준비 청소년 관리 및 지원	〈신설〉	 ○관계부처 및 민관협력 자립지원 서비스 적극 활용 -자립지원 서비스 대상에 자립지원관 청소년 포함('23년~) -경제적지원(자립지원수당 등), 주거지원(LH공공임대주택), 교육 지원(장학금, 기숙사 등), 취업지원 	신설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자립준비 청소년 및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사회적기업취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경험 지원, 맞춤형 일경험, 취업연계교육 등), 자산형성(자립지원적금, 디딤씨앗통장 등) 적극 연계 - '24년 운영실적부터 종합평가에반영 ※ 상세 내용은 Ⅲ.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부분 활용	
	〈신설〉	○자립지원수당 대상자 신청 지원 안내 - (사례관리 등록 시) 청소년쉼터 입소 경력이 있는 경우 쉼터(이동형 일시 쉼터 제외) 입소기간과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자립지원수당 요건 충족이 가능하므로 제도 안내 - (사례관리 중)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자립지원수당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설에서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의 요건 가능 여부와 요건 충족 가능 예상일을 사전에 확인하여 적시에 신청 지원 ※ Ⅶ.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1.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1-2. 자립지원수당 신청〉가. 지급대상〉(2)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신설
	〈신설〉	○사례관리 종결 요령 -사례관리 중 자립지원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사례 관리 중 신청 지원하나, 사례관리 종결 후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희망 하거나 사례관리 종결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결과 동시에 신청 지원	신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운영개요	o 정원(시설기준, 최소 5인 이상 10인 이하) 미만의 보호 청소년을 위탁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설로 다루지 않음	〈삭제〉	삭제
예산 집행	○ 인건비 지원 기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인건 비는 최저시급 시간당 9,620원, 월 2,010,580원 기준 준수하여 각 지자체별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	○ 인건비 지원 기준 - 연봉제의 보수 기준 가이드 라인 제시 * 다만,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 사정과 운영 기관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적용 가능	변경
청소년 관리 및 지원	〈신설〉	 관계부처 및 민관협력 자립지원 서비스 적극 활용 자립지원 서비스 대상에 회복지원 시설 청소년 포함('23년~) 주거지원(LH공공임대주택), 교육 지원(장학금, 기숙사 등), 취업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취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경험 지원, 맞춤형 일경험, 취업 연계교육 등), 자산형성(자립지원 적금, 디딤씨앗통장 등) 적극 연계 '24년 운영실적부터 종합평가에 반영 ※ 상세 내용은 Ⅶ.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부분 참조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개요	○지원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지원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의3 (자립지원)	변경
	o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 중심	 지원대상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이하 '시설')쉼터 청소년으로 확대 * 자립지원수당 : 쉼터, 자립지원관 청소년 	변경
	〈신설〉	○청소년복지시설 종합평가에 자립 지원 실적 반영	신설
자립지원 수당	o(명칭)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ㅇ(명칭)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변경
	○ (대상자) 청소년쉼터 퇴소일 [*] 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 [*] 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대상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 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일시고정형, 단기·중장기쉼터 해당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 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하며,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 받았을 것 *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 기간 필요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ㅇ(지급기간) 최대 3년	ㅇ(지급기간) 최대 5년	변경
자립지원 수당	ㅇ(사례관리)	o(자립지원수당 지급자 사례관리) ※ 자립지원관의 사례관리와 구분	변경
	ㅇ(증빙서류) 청소년쉼터 퇴소 확인서	○(증빙서류)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변경
자립 정착금	〈신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3 시행 ('24.4.25)에 따라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조 필요	변경
주거 (LH공공 임대 주택)	○ 지원대상 :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청소년으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무주택자 - (매입·전세임대) 18세 이상 미혼인 자 * 24세 퇴소 시 29세까지 신청 가능 - (건설임대) 나이 및 결혼 여부 관계 없이 신청 가능	 ○지원대상: 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이고, 시설 이용 기간이 2년 이상인 무주택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공통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해당 청소년이 소년소녀가정일 필요 없음 - 전세·매입임대: 18세 이상, 미혼 * 24세에 시설을 퇴소한 경우 29세까지 신청가능 - 건설임대(통합공공임대 최초공급 /국민, 행복, 영구, 통합공공임대 재공급 우선지원) * 통합공공임대 최초공급 시에만 미혼, 소득 요건 필요 ○ 지원내용: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매입·전세·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변경
교육	○청소년국제교류 -15~24세 가정 밖 청소년 대상 -가산점 부여 및 참가비 전액 지원 ○글로벌현장학습(파란사다리)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대학생 대상 -해외 현장학습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가근로장학금, 행복기숙사 -쉼터 입·퇴소 대학생 우선 선발	○ 〈삭제〉 ○ 글로벌현장학습(파란사다리)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대학생 대상 - 해외 현장학습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국가근로 장학금, 행복기숙사, 연합기숙사 - 시설 입·퇴소 대학생 우선 선발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 시설 1년 이상 입·퇴소 청소년 대상 - 프로그램 이수 시 실비 50만원 (단기) 또는 도전준비금 최대 300 만원(장기) 지급 - 〈신설〉 ○사회적기업 취업 - 쉼터 1년 이상 입·퇴소 청소년 대상 - 취약계층에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취업 기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시설 입·퇴소(이용, 사례관리 포함) 청소년 대상 - 정규직 채용 시 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신설〉	○ 청년도전지원사업 - 시설별 6개월 이상 입·퇴소 청소년 대상 - 프로그램 이수 시 실비 50만원 (단기) 또는 도전준비금 최대 300 만원(장기) 지급 - 이수 후 취업 근속 3개월 시 50만원을 청소년에게 지급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정 - 시설 1년 이상 입·퇴소 청소년 - 사회적기업 취업 기회 우선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동일〉 ○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 - 시설을 입·퇴소한 15~34세 미취업 청소년 -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등을 통해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 지원 * 자립활동실비로 참가 청소년에게 1인당 1일 5만원의 수당 지급 가능 ○ 맞춤형 일경험 - 커피전문가 교육 및 일경험 - 커피전문가 교육 및 일경험 - 시설인근기업에서 일경험 ○ 취업연계교육 - 희망디딤돌 2.0	
자산 형성	〈신설〉	○자립지원적금 -시설 청소년 대상 3년만기 적금 ○디딤씨앗통장 -기초생활수급가구 청소년 대상	신설
생활	〈신설〉	o 행복도시락 - 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게 주 3식의 도시락 배송	신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T 正	1-4. 운영절차 가. 특별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 절차 내용 ○해당 시·군·구 특별지원사업 답당부서 - 38개 항목 확정(소득 14, 재산 21, 공제 3)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정보연계 조사 世동 관리 (보장 중지 등) ○해당 시·군·구 특별지원사업 답당부서 -소득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보장 중지 등) ○급여 중지 사유 발생 시(특별지원 사업 담당부서) -급여 중지 및 환수 관리 ● 이의 신청 대응	1-4. 운영절차 가. 특별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 절차 내용 이해당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이 담당 - 38개 항목 확정(소득 14, 재산 21, 공제 3)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정보연계 조사 변동 관리 (보장 중지 등) - 소득 면동사항 적용 및 관리 이의 신청 무슨 중지 및 환수 관리 이의 신청 무당) -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인	
사업 개요	1-4. 운영절차 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 기준 구분 내용 •(만) 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 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대응 정액에 대한 이의제기 1-4. 운영절차 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 기준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사업개요	중복지원금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 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 복지사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예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기하나, '학업· 자립·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조 사 선 정 기 준	중복지원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 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 복지사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관리 항목 안내 1. 생활지원 중복 금지 : 기초생 활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거주(생활보조금 수급 자), 쉼터 거주 등 2. 건강지원 중복 금지 : 기초 생활사업(의료급여), 긴급복지 (의료지원) 3. 학업지원 중복 금지 : 기초 생활사업(교육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청소년한부모 검정 고시 등 학원지원, 초·중·고교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 교운영비 등을 중복 금지 4. 자립지원 중복 금지 :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대상자 신청	2.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 가. 발굴경로 및 지원대상 2-2. 대상자 발굴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우선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현장 종사자에게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한 재량권 부여) -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 범죄 및 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나.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	나.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2-3. 특별지원 신청 나. 신청 장소 및 기간 ㅇ장소: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	나. 신청 장소 및 기간	
선정 조사		3. 특별지원 선정조사 3-1. 조사개요 나. 소득범위 조사 ○통합조사관리팀이「보건복지 급여· 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소득·재산·공제 항목 조회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조사내용: 소득·재산·공제 등 30여 항목 조사, 금융·부채는 제외	
		1-4. 운영절차 가. 특별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 ㅇ시·군·구 특별지원 사업 담당자가 심의 결정, 지원 대상자 결정·통지 자격 변동 관리, 보장 중지, 환수, 이의신청, 기타조사 등 * 소득·재산조사 관련 이의신청 경우 통합 조사관리팀의 지원 필요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나) 사업소득 ① 농업소득~~~~~~ ② 임업소득~~~~~~ ③ 어업소득~~~~~	(나) 사업소득 ① 농업소득 ② 임업소득 ③ 어업소득 ① 기타 사업소득 ① 정의: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농업·어업·임업 소득이 국세청 사업 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기타 사업소득에 반영되며, 농업·어업·임업 소득은 별도 수기 확인하지 않음	
	(라) 기타소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 연금, 진폐유족연금)	(라) 기타소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 급여, 상병 보상연금	
선정 조사	3-3. 재산조사 (3) 재산의 종류 및 재산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구성원 명의의 다음 재산을 말함 ⑤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및「지방세법」에 따른 입목 (제6조제11호)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3-3. 재산조사 (3) 재산의 종류 및 재산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구성원 명의의 다음 재산을 말함	
	나. 재산유형별 조사방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 (3) 자동차 (나) 조사방법	나. 재산유형별 조사방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 (3) 자동차 (나) 조사방법 ※ 자동차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 지방세정 (3순위) 국토부 취득가액*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최초취득가액×잔가율과 취득가액× 잔가율 중 큰 금액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4) 임차보증금 (나) 조사방법 이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 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4) 임차보증금 (나)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주택임차보증금), 국세청 상가임차보증금이 조회되며 아래 규칙에 따라 반영(참고 참조) ○ 정보시스템으로 파악이 곤란한 경우,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 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선정 조사	(지침 24쪽) (5) 회원권 (가) 정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 내지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5) 회원권 (가) 정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 내지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골프회원권: ~~~~~~~~~~~~~~~~~~~~~~~~~~~~~~~~~~~~	
	3-4. 조사의 종류	3-4. 조사의 종류 (3) 소득재산 조사 자동화 제외 사유 ○단독 보장신청이 아닌 경우 및 기존 조사가 진행 중인 신청 보장인 경우 ※ 예를 들면, 생계급여와 병행 신청하거나 이미 생계급여 소득재산 중인 경우 ○가구원의 변동 발생(출생 및 사망) ○공적자료 요청 취소 및 수정 시도 시	

구 분		2023년도	2024년	도	비고
	단 계	업무	내 용	처리부서	
	공적자료 조회 요청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틱	템 통해 조회 요청	사업담당	
	•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소득·재산·공제 등 소득인정액에 대한 공적자료 확인은 통합조사관리팀이 담당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 *******************************			
	-				
	자료제출 요구	• 추가 자료제출 요구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2] →]	•				
선정 조사	조사결과 처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트 반영 (통합조사관리팀) 보장 결정, 변동관리 등{	사업담당		
			부록. [서식 제5호.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부록. [서식 제9호. 사업증 사업결과 보고서에 (은둔, 저소득 한부5 유형에 따른 지원 현	특별지원 대상 2가족 자녀 등)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 체험 기회 제공,「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연계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 체험 기회 제공,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등으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훈련 연계	변경 및 신설
	ㅇ종사자 보호	○종사자 보호 -센터 이용자 중 타 이용자의 센터 이용을 방해하거나 센터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센터의 사례회의를 통해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단, 해당 이용자에 대한 위기상담 연계, 부모상담 등 별도조치 필요	신설
	o 예산집행 기준 *사업주부담금 집행 시에는 운영비 항목으로 집행	o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사업주부담금은 운영비 항목에 편성하여 집행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항목에 편성하여 집행	변경 및 신설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 공통사항 • 연계·발굴된 학교 밖 청소년 정보는 꿈드림 정보망에 즉시 입력 • (연계 청소년 2주내 조치) 센터는 정보연계 후 조치결과를 2주 이 내 정보망에 등록해야 함 - 센터는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각 기관의 '온라인 정보 연계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 교육청으로부터 매월 2회 이상 (필수기간 8일, 22일까지) 자료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 공통사항 • 연계·발굴된 학교 밖 청소년 정보는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 즉시 입력 • (연계 청소년 2주내 조치) 센터는 정보연계 후 조치내용을 2주 이내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시도센터는 나이스시스템을 통해 학교중단 청소년 정보가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는지 월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함 - 시도센터는 학교에서 학교중단 청소년 발견 즉시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학교중단 청소년 관련	변경 및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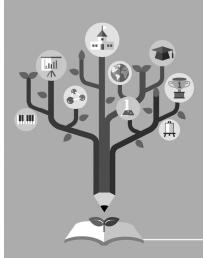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연계되지 않을 시, 시도 센터가 확인하여 시도 교육청에 자료 연계를 요청하여야 함	정보를 업로드하여 시군구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자립지원 -청소년 근로 권익 등 보호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실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문자상담(#1388) 등 근로권익관련 상담 연계 •근로권익침해나 부당처우 사례 발견 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599-0924,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연계지원. 필요시해당 노동지청에 신고지원	○청소년 근로 권익 등 보호 - 청소년 근로 권익 등 보호 •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실시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 cyber1388.kr), 문자상담(#1388) 등 근로권익관련 상담 연계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청소년 기본법 제52조의 2) •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함 • 청소년의 근로권익침해나 부당처우 사례발견시 상담 및 중재,무료 권리구제 등을 지원하는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 연계	변경
	 청소년증 발급 신청 방법 신청인 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청소년증 발급 신청 방법신청인대리인(좌동)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만 8세 이하 또는 19세 이상인 자 -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외국인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좌동)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신청절차 •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절차 • 신규발급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재발급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사이트(www.bokjiro. go.kr) 이용. 단,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청소년증 발급 신청 방법 신청 시 구비서류 매리인 증명 서류 (예시) 공통: 대리인 신분증 친권자: 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견인: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재직증명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 방법 -신청 시 구비서류 ■ 대리인 증명 서류 (예시)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 확인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후견인 : (좌동)	
	o 평가 주기: 3년 ※ 최초 센터 평가는 2024년 시행 예정	o 평가 주기: 3년 ※ 최초 센터 평가는 2025년 시행	변경
	○ 별표 5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원고료 및 강사료 지급 기준 〈다음 기준에 따라 원고료 및 강사 료를 지급하며, 센터 및 지자체 예산 내에서 운영하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별표 5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원고료 및 강사료 지급 기준 〈원고료, 강사료 등은 자체규정에 의해 책정 및 집행.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 지자체 규정 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센터 및 지자체 예산 내에서 운영하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변경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ㅇ직접지원비 세부기준	ㅇ직접지원비 세부기준 [붙임 5] 직접지원비 지원 대상 확인서	신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검진주기 및 검진항목 -검진항목:상담 및 진찰, 혈액검사, 간염검사, 결핵검사 및 구강검진 등	○검진주기 및 검진항목 - 검진항목: 상담 및 진찰, 혈액검사, 간염검사, 결핵검사 및 구강검진, 안질환,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HDL·LDL콜레스테롤·중성지방 등	변경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23년도 사업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 조사대상: 초등1학년(보호자조사), 초등4학년, 중등1학년, 고등1학년 총 156만 명 내외	 ○'24년도 사업명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청소년 미디어(인터넷·스마트폰·사이버도박) 이용습관 진단조사 -조사대상 : 초등1학년(보호자조사), 초등4학년, 중등1학년, 고등1학년 총 156만 명 내외 ○'24년도 사업비목(민간경상보조 → 민간위탁사업비) 전환 	변경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전담 상담사 배치·운영	○'24년도 사업명 :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전담상담사 처우개선 (인건비 1.7% 증액)	 '24년도 사업명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전담상담사 처우개선 (인건비 2.5% 증액) 	변경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운영	○치유캠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기숙 치유캠프 운영(22회)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대상 기숙치유캠프 2회 운영 -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력캠프 5회	○치유캠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기숙 치유캠프 운영(22회)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대상 기숙치유캠프 2회 운영 -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력캠프 6회	변경
청소년 치료재활 센터 운영	○청소년치료재활센터 2개소 운영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및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2개소 운영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및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변경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 상담 등 인력 배치(인력운영) - 2인 이상 * 팀장급 1명, 팀원급 1명 권고 (지자체별로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o 사업종료	변경
청소년 근로권익	ㅇ명칭 -'○○시·도 청소년근로보호센터'	o 사업종료	변경
보 호	○ 예산의 편성 - 시·도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지원 단가의 15% 이상을 사업비로 편성 ※ 예산편성기준은 국고보조금 매칭액+ 지방비 매칭액 범위에 한하며, 지자체 추가 예산 배정 시 지자체 여건에 따라 활용	ㅇ사업종료	변경



2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 Ⅰ. 청소년정책위원회
- Ⅲ. 청소년정책 분석·평기
- Ⅲ. 정소년정잭 우수 지자체 정부포상
- Ⅳ. 2024년('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청소년 분야)

청소년정책위원회

근 거

- ○「청소년 기본법」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제3조의2(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위원회 개요

- 구 성:위원장 포함 30인 이내 위원
 - 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 위 원 (26명)
 - 당연직(13명):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차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청장 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장

- 민간위원(7명):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 청소년위원(6명):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한 청소년
- 임기:임명일로부터 2년
- 기능: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Ⅱ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1 목 적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한 지자체 청소년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 도모
- 지자체 우수 정책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 기여

2 근 거

- ○「청소년 기본법」제14조 제3항. 제4항
 -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추진경과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법적근거 마련('15.5월)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시범운영('16.6~8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별평가 인정('17.3월)
- 청소년정책 지정과제 분석평가 실시('17년, 42개 지자체 대상)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실시(18년, 19년 17개 시·도 및 시·군·구 50%(114개))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실시(19년, 17개 시·도 및 시·군·구 50%(114개))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실시('20년~ 현재,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가. 대상 기관: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나. 평가 체계

-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파급효과 점검 *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정책 영역별 실적 중심의 평가 보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과정 중심의 평가 * '21년 평가부터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 전반으로 확대 적용

다. 평가절차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	·계	5단계	6단계
과정	실적보고서 제출	서면 평가	자료 보완	질의 진행 최종	후	최종 평가 결과 확정	평가환류
대상	평가 참여 기관	평가 위원	평가 참여 기관	평 위		평가 위원	평가 참여기관
내용	실적 보고서 제출 (증빙자료 포함)	실적 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서면평가	자료보완 요청 해당 기관의 추가자료 제출	실 보고 대 질의 진행 조별 의견	서에 한 응답 ! 및 평가	필요시 '평가 감수 위원회'를 거쳐 결과 확정	우수사례 발굴·공유 우수지자체 포상

라. 평가지표

- 정책과정을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세부 평가지표^{*} 구성
 - * 시·도 및 시·군·구 각 12개 세부 평가지표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지표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영역	3/184	시·도(12개 지표)	시·군·구(12개 지표)				
1. 정책형성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 수립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 수립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② 정책기반 확보 수준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자체예산 확보노력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자체예산 확보노력				
2. 정책집행	③ 추진과정의 효율성	- 추진일정의 충실성 -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 -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 추진일정의 충실성 -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 -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④ 정책소통 노력	-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3. 정책성과	⑤ 정책성과 및 효과성	- 정책목표 달성도 - 정책효과성	- 정책목표 달성도 - 정책효과성				

^{* &#}x27;전년도 평가 개선의견 반영의 충실성 여부' 내용 포함

【붙임1】2023년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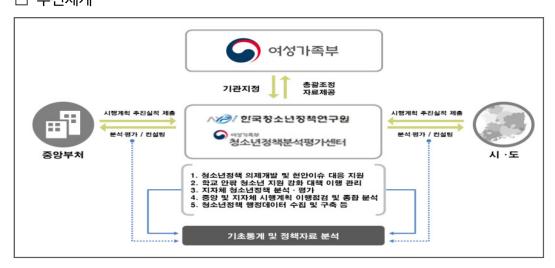
□ 운영목적

-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점검 및 정책 분석·평가를 통한 청소년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 도모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 추진 지원
 -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법적근거 마련(「청소년기본법」 제14조 개정, '15.5.4 시행)
- 정책 현황 분석 및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청소년정책 추진의 효과성 제고
-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에 따른 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및 관리를 통한 정책 실효성 확보

□ 주요 내용

- 청소년정책 의제개발 및 청소년정책 현안 대응
-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이행 관리
- 중앙 및 지자체 시행계획 이행사항 점검 및 분석·평가
- 청소년정책 행정데이터 및 통계 수집·구축 등 과학적 정책추진 근거 마련
- 그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위탁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추진체계



Ⅲ ▶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정부포상

1 포상 개요

가. 추진 목적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우수기관 격려
- 청소년정책 관심도 제고 및 청소년 업무 추진의 적극성 유도

나. 추진 근거

○「청소년 기본법」제60조(포상)

【제60조(포상)】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다. 대상 기관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기초지자체

라. 선정 기준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결과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정

마. 포상 훈격 및 규모

○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5점('23년 기준) ※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3월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인센티브 부여

- 재정인센티브: 포상금 수여
 - ※ 포상규모에 따라 재정인센티브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행정인센티브: 우수 지자체 관계공무원에 차년도 국외연수 기회 제공 가능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선정 계획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우수 지자체 심사
- 포상대상 지자체에 대한 현지실사 및 대국민 검증 등을 통해, 청소년 정책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 추천 제한

- 최근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관련법 등을 위반한 기관
- 제시한 공적내용이 현장실사 결과와 상이한 경우 등

나. 포상 대상기관 추천계획

- 추천 시기:8~9월(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사업 결과 산출 이후 예정)
- 추천 접수기한 : 9월(청소년정책과)
- 추천 절차: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 구비서류

구 분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공적조서	1부	o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 인을 날인하여 제출 o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 (A4용지 2매 이상)
공적요약서	1부	o 청소년정책 관련 업무요약서를 각각 작성 (공적요약은 200자 이내)
포상 동의서	1부	ㅇ 정부포상 관련 절차 등 동의
그 외 서류	1부	ㅇ 후보기관 조회 관련 자료 작성 등

3 추진 일정

- 행정안전부와 포상규모 협의: 2~3월
- 2024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결과('23년 실적) 등 수합:8~9월 ※ 2024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결과 시기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지자체에 포상대상기관 통보 및 추천 요청:10월
- 정부포상 대상기관 공적 공개검증:10월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부24, 행정안전부 상훈 포털사이트
- 추천 제한 여부 확인:10월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관련법」등 위반 여부 조회
- 정부포상 대상기관 공적 현지실사:10~11월
- 여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심의:11월
- 정부포상대상자 추천(행정안전부)
 - 상훈시스템 입력 및 대상기관 추천:11월
-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예정):12월

1 합동평가 현황

- (평가목적)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 (평가대상)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특별·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
- (추진체계)

평가지표 개발

- 지표개발계획 수립
- 중앙부처별 지표 제출
- 의견수렴 및 심의 (지표개발단)
- 합평위·정평위 심의·확정

평가실시

- 평가실시계획 수립
- 평가실시
- 평가결과 보고 (합평위·정평위)
 - 평가결과 공개

평가환류

- 부진지표 행정컨설팅
- 재정인센티브 지급 및 포상
- 우수사례·결과보고서 발간
 - 부처 정책환류

○ (지표개발 및 평가수행) 민간전문가로 구성·운영

2 실시 계획

- 대상기관: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 특별·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
- 평가지표: 정량지표 2개. 정성지표 1개
- 평가기간: '24.1~3월(실적기준일: '23.1.1. ~ '23.12.31.)
- 평가수행: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23.12월)
- 평가방법
 - 실적입력(VPS시스템)
 - (정량) VPS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에 대하여 검증(증빙자료 확인 등)을 완료한 최종 통계자료 입력(중앙부처)
 - (정성) 우수사례 요약서 및 증빙자료 입력(시·도)

○ 평가절차

실적입력 (1~2월)		이의신청 (2월)		정량평가 (3월)		정성평가 (3월)	최종검증 (3월)	결과보고 (4월)
정량실적(중앙부처) 및 정성실적(시·도) 입력		평가단·중앙부처· 시도 실적검증 및 집합검증	•	실적 확인·수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۵	우수사례 선정	정량 및 정성지표 최종확인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보고

○ 후속조치: 정책환류,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급 및 유공자 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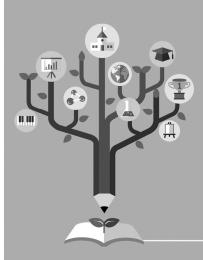
3 평가 지표 상세

○ '24년('23년 실적) 평가지표

국정과제	지표번호	지표명	담당부서
4-17-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4-17-92-가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	청소년정책과
3-9-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3-9-48-라	위기청소년 지원 수준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3-9-48-마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	청소년보호환경과

※ (참고) '25년('24년 실적) 평가지표

국정과제	지표번호	지표명	담당부서
4-17-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4-17-92-가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	청소년정책과
3-9-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3-9-48-라	위기청소년 지원 수준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3-9-48-마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	청소년보호환경과



3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 I. 청소년 참여 증진
- Ⅲ.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청소년 참여의 의의와 유형

20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가. 청소년 참여의 의의

○ (정의)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

▶ 참여라?

- 기본적 시민권으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Hart, 1997)
-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Unicef, 2003)
- (기능)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받고 행사하며, 주도적으로 의사를 표출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음

나. 청소년 참여의 유형

- 청소년은 공공-민간 영역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영역에서는 정책, 사업, 예산, 입법 등에 청소년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음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서는 특히,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심의·조정·시행 과정 등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 * 청소년기본법 (개정일 2017.12.12. 시행일 2018.6.13.)
 -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2-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청소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 과정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성장 역량을 함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실현

나. 추진경과

-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1999년 4월 제주시, 2000년 6월 경기도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확대
- 2004년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설정·추진, 점검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시범 개최하고 2005년부터 매년 개최
- 2012년 청소년 참여기구 역할 강화를 통한 청소년 중심의 수요자형 정책추진으로 정책결정 참여 부문 UN공공행정상 수상
- 2020년 이후 청소년참여포털(www.youth.go.kr/ywith) 기능 개선,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등 온라인 기반의 청소년 참여 활성화 추진

다. 참여기구 유형

구분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주체	여성가족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법적 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주요 기능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과정에 참여	국가 및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 참여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

[※] 중앙(국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청소년특별회의와 통합하여 운영 중

라.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및 역할
여성 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참여기구 사업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 참여기구 사업안내·운영매뉴얼 배포 및 역량교육 지원 청소년 참여기구 언론 홍보 등 총괄 청소년 참여기구 사업 점검·평가, 우수기관 발굴·표창 * 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활동진흥과
	위탁 운영기관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청소년특별회의 운영·관리 청소년위원 위촉 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출범식, 정책발굴워크숍, 결과보고회 등 기획·진행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도	담당 사업과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 총괄 시·도 청소년포럼·토론회·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 자치단체장 간담회 등 행·재정적 지원 정책과제 발굴 등 정기회의 관리 운영 성과(제안과제 모니터링 등) 관리
	위탁 운영기관 (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관리 모집·구성, 정기회의 및 참여활동 등 기획·진행 시·도 청소년포럼·토론회·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지원 지역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지원 (컨설팅, 연합활동,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등)
시·군·구	담당 사업과	○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 총괄 ○ 자치단체장 간담회, 청소년포럼·토론회 등 행·재정적 지원 ○ 정책과제 발굴 등 정기회의 관리 ○ 운영 성과(제안과제 모니터링 등) 관리
	위탁 운영기관 (위탁 운영시)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모집·구성, 회의 및 참여활동 등 기획·진행 시·도 단위 연계활동 참여 및 협조(청소년포럼·토론회 등 참석, 시·군·구 대표 위원 시·도 참여위원회 참석 등)

2-2 청소년특별회의

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이행
-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성장역량 함양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 추진 경과

- '04년에 시범사업 후 매해 개최
- '18년부터 시·도 참여위원회 위원 전원을 특별회의 위원으로 위촉

나. 2024년 청소년특별회의 주요 운영방향

□ 주요 활동

○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 제안을 포함하여 정책 탐색 및 점검, 토론 및 현장활동 등 정책발굴 전 과정이 담긴 '(가칭)정책리포트'도출

□ 모집 및 구성

- 공개모집, 시·도 추천 등을 통해 청소년특별회의 기획추진단(30명 내외) 및 17개 시·도 지역회의로 구성하며, 총 100~150명 내외로 구성
 - 시·도 지역회의 위원의 경우에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점검 및 발굴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편

다. 구성

(1) 청소년 위원

구 분	기능 및 역할
의장단 (3명)	o 청소년특별회의 주재 및 대표로서 활동 o 정책제안, 행사 기획·진행 총괄 등
기획추진단 (공개모집, 30~40명 내외)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및 발굴 주도 온라인 정책제안 점검, 사회적 이슈 발굴 등 특별회의 주요행사 기획 및 지역회의 활동 공유·지원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평가
지역회의 (시·도 추천, 70~100명 내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책과제 발굴 및 활동권역별 온·오프라인 지역회의 참여공통 실천활동 전개 및 대외 홍보 추진·운영

□ 개 요

- 의장단
 -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중 투표를 통한 선출(의장 1명, 부의장 2명)
 - ※ 반드시 남성 및 여성 청소년을 각 1명 이상 포함
 - ※ 청소년참여 관련 활동 등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선발
 - ※ '24년 이후 임명된 의장단은 연임 또는 중임 불가
- 청소년특별회의 기획추진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청소년 위원 모집 및 선발
 - ※ '24년 이후 위촉된 위원은 최대 3회까지 활동 가능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 17개 시·도 지역회의, 총 70~100여명(시·도별 각 4~6명 내외)
 - 17개 시·도별 추천을 거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형식요건(서류 적격 여부 등) 심사 후 최종 선발
 - ※ 청소년특별회의 기획추진단 및 지역회의 위원은 겸임 불가
 - 권역별 지역회의 추진 : 지역별 정책 발굴 및 실천활동 등 추진을 위한 오프라인 (연 1회 이상), 온라인(상시) 회의 지원
 - ※ 지역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1개 권역 당 3~4개 지역회의 포함, 총 5개 권역

□ 위촉 및 임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최종 선발한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위촉장 교부【붙임10】
- 청소년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임

□ 해 촉 【붙임11】

○ 기 준

- ①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자
- 2. 범죄, 청소년특별회의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청소년특별회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해촉에 동의한 자
- 3. 청소년특별회의 활동 중 청소년특별회의 본연의 기능과 관련 없는 사적 목적활동 (예: 선교 또는 포교활동, 상품 판매·홍보 등)을 실시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해촉에 동의한 자
-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천재지변
-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 3. 본인 질병과 사고
-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이내)의 상(喪) 및 결혼
- 5.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절 차

- 해촉 의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시·도에서 추천한 지역회의 위원에 대하여 시·도별 추천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시·도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해촉 의뢰
- 확인 및 해촉(여성가족부) : 해촉 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해당 시 해촉

》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2) 자문단

□ 역 할

- 참여 청소년 역량 강화 교육 및 특별회의 운영 지원 등
 - 정책과제 분석·구체화·발굴 지원
 - 청소년, 홍보 관련 데이터 수집, 컨텐츠 제작 지원
- 청소년참여활동 관련 전문정보 제공 및 자문
 - 청소년 선정 의제에 따라 적절한 전문가 자문단 지원 ※ 출범식, 정책발굴워크숍, 지역회의 등 참여

□ 구 성

- 전문가 자문단(총 2명)
 -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 과정 전반 및 참여활동에 대한 교육 진행
- 퍼실리테이터 자문단(총 5명, 권역별 1명)
 - 권역별 지역회의 정책과제 발굴 등 연간 활동 지원 및 퍼실리테이팅
- 선배위원(OB) 자문단(총 5명, 권역별 1명)
 - 청소년특별회의 전반적인 연간 활동 지원 및 퍼실리테이팅

라. 연간 추진일정

- □ 운영계획 수립 및 확정(1월)
 - 청소년특별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운영계획 수립·시행
- □ 구 성(1~3월)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위원 구성(1~2월)
 - 청소년특별회의 자문단 구성(2~3월)

□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3월)

- 위촉장 수여 및 의장단 선출·임명장 수여, 출범선언
- 청소년 참여 관련 기본 역량강화 교육
-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발표, 연간 추진방향 논의 등

□ 청소년특별회의 대토론회(5월)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활동 공유 및 의견 수렴 등 소통 운영

□ 지역회의 정책발굴 활동(4~9월)

-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에 대한 권역별 온·오프라인 회의 운영
-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포럼, 토론회, 캠페인 등 개최 및 참여
- 회의 및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수요·특성이 반영된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

□ 본회의(9월)

- 의결투표에 상정할 최종 정책과제 도출
- 최종 의결투표 진행(전체위원 대상)

□ 제안 정책과제 정부부처 협의 등(10~11월)

- 제안 정책과제 관련 정부부처 협의
-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활동

□ 결과보고회(12월)

○ 정책과제 수용 결과보고 및 연간 활동 내용 공유

□ 청소년특별회의 온라인소통 및 홍보 활동(연중)

- 청소년참여포털 내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운영
- 특별회의 전반 홍보 컨텐츠(영상, 카드뉴스 등) 제작 및 배포

♣ 정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마. 행정사항

□ 지역회의 운영 협조 활성화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에서 포럼, 토론회 등 오프라인 활동 운영 시 대표성 있는 지역 청소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적극 참여 및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기타

-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시 활동 참가 청소년 위원에게 교통비 지급 가능 ※ 참가수당 별도 지급 불가
- 활동확인서는 청소년참여포탈(youth.go.kr/ywith)을 통해 발급 가능 【붙임12】

▮ 연도별 정책의제 및 과제 현황 ▮

년 도	정 책 의 제
 2004년 (시범)	o 청소년 인권·참여 -시범사업: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2005년	o 청소년참여기반 확대(20개 과제)
(제1회)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영역 18과제 수용
2006년 (제2회)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37개 과제)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
2007년	o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안(18개 과제)
(제3회)	-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
2008년	o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35개 과제)
(제4회)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
2009년	o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20개 과제)
(제5회)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
2010년	o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
(제6회)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
2011년	o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41개 과제)
(제7회)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6개 수용
2012년	o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89개 과제)
(제8회)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81개 수용
2013년	o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29개 과제)
(제9회)	- 진로체험활동 인프라 확대 등 28개 수용
2014년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31개 과제)
(제10회)	-(가칭) '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설치·운영 등 28개 수용
2015년	ㅇ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23개 과제)
(제11회)	- 역사이해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등 20개 수용
2016년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29개 과제)
(제12회)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28개 수용
2017년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30개 과제)
(제13회)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24개 수용
2018년	o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22개 과제)
(제14회)	-청소년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등 20개 수용
2019년	o 청소년 경제활동, 안전, 양성 평등, 인권, 학교 밖 청소년지원 총 5개 정책영역과
(제15회)	특별과제 1건 포함 총 28개 과제 제안, 25개 수용
2020년	o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33개 과제)
(제16회)	-청소년 근로 인식개선 홍보 등 32개 수용
2021년 (제17회)	시작점이 같은 청소년, 각자의 기회에서 빛나다(30개 과제)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등 28개 수용
2022년 (제18회)	넘어져도 괜찮아, 걱정 없는 청소년(32개 과제)청소년 디지털 문해교육 확대 등 29개 수용
2023년	○ 70억 조별과제, 청소년이 먼저 용기 내다!(34개 과제)
(제19회)	- 교육소외지역 청소년 디지털 격차 해소 등 33개 수용

❖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 증진

□ 법적근거

- * 청소년기본법(개정일 2017.12.12. 시행일 2018.6.13.)
-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 주요기능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 청소년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 및 참여
- 지역 내 이슈 모니터링 및 현안 개선 제안, 관련 프로젝트 활동 기획·운영

□ 운영주체

-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지역 청소년 정책의 수립·시행주체인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여야 하나,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내 청소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가능
 - 위탁기관 선정 시 청소년 참여 관련 사업 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단, 위탁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정책제안 등 참여활동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및 피드백, 정책반영 노력이 필요함

□ 역할주체별 운영절차(예시)

※ 참여기구 활동기간의 확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능한 경우 <u>전년도 12월</u>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1월중 구성 완료할 수 있음

지자체(공무원)	위탁운영기관(지도자)	청소년 위원
참여위원회 운영 주체 선정 사업 및 예산 승인	사업예산 검토 및 계획	
사업검토	1단계(1월) : 연간계획수립	
참가자 모집협조 공문 지원(교육청 관계기관 등	2단계(2월~3월) : 모집(홍보) 및 구성완료 보고	지원신청서, 정책제안서, 자기소개서 제출
심사위원 참석 참여위원 구성	3단계(3월 초~중순) : 심사(서류+면접) 운영	면접시험 참여
단체장 행사참석 시행 정책자료 제공 및 정책소개	4단계(3월 중순~말경) : 위촉식 및 교육 운영	위촉식 참가 및 사전교육 이수, 임원진 선출
정책제안 내용 검토 및 피드백	5단계(4월~10월) : 정기회의 운영 지원 및 정책제안 검토(10월)	정기회의 참여, 정책제안 개발 및 제출(10월)
참여활동 지원	6단계(4월~10월) : 참여활동지원(모니터링, 자문회의 참여, 교류활동, 실천활동 등)	참여활동(모니터링, 자문회의 참여, 교류활동, 실천활동 등)
지자체장 및 관계 공무원 참석, 정책제안 피드백	7단계(11월) : 최종보고회 운영(정책제안 결과 피드백)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참여활동 결과보고
평가회의 참석, 평가결과 차기년도 계획 검토 반영	8단계(12월) : 평가회의	평가회의

나. 사업운영

※ '24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방비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u>자율적으로</u> 운영하되,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의 업무 가이드라인으로서 본 지침을 활용 가능

▮ 주요 추진절차 ▮



(1) 모집 및 구성

□ 기본방향

○ 성별·연령·지역·소속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개모집 이외에 교육(지원)청·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 청소년 직접선거 등 구성방식을 다양화하여 대표성 제고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 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기 준

- 대상 : 지역 내 청소년(만 9세~24세)
 - 연령·성별 등 구분·선발하되, 지역 내 연령별 인구 및 참여역량을 고려하여 구성(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들을 포함)
 - 효과적인 참여활동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연령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을 구분하여 모집 및 운영 가능

그ㅂ 게		만 9세~15세	만 16세~18세(고등학생 연령)				만
구분	계 	(초등·중학생 연령)	소 계	일반	특성화	특목, 기타	19세~24세
비율	100%	20~30% 내외	50~60% 내외	60~70%	5~10%	5~10%	10~30%

[※] 관할구역 내 연령별 청소년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구성인원 (권고)

- (시·도) 1개소당 25~30명 내외 / (시·군·구) 1개소당 20명~25명 내외
 - 예산규모 및 모집 추이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구성인원을 결정하되, 활동과정에서 청소년위원들이 다수의 일반 청소년과 함께 논의·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

○ 구성기준

-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구성
 - 청소년 위원은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최대 3회까지 활동 가능하도록 안내
- 다문화, 북한이탈, 근로,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을 일정 비율 (10% 내외) 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시·군·구)에서 유관기관에 홍보 및 협조 요청
-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소관 시·군·구 청소년이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위촉 가능
 -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중 시·도 참여위원회 활동이 적극적으로 가능한 위원을 추천 및 위촉하며, 시·도 여건에 따라 당연직 위원 구성 비율을 50~100%로 구성할 수 있음

□ 모집 및 위촉 【붙임1~8】

○ 모집방식

- 참여 청소년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 이외에 관내 교육(지원)청·학교 추천(학생회 대표 등),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 지역 청소년 선거, 청소년 추천제 등 구성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시행

〈모집방식 예시〉

- ① 청소년 선거
 -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을 통해 후보를 구성한 후, 지역 청소년의 투표 (온·오프라인)로 위원 선출
 - % (절차 예시) 후보 구성(추천(50%), 공개모집(50%) 등) → 청소년 선거 → 선출 및 위촉
- ② 유관 기관추천
 -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을 받아 학생회 대표, 청소년운영 위원회 대표 등 대표성 있는 청소년을 선발 ※ (절차) 추천(기관) → 심사 또는 청소년 선거 등 → 선발(선출) 및 위촉
- ③ 공개모집(추천병행)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하여 기회균등 및 다양한 청소년 참여 보장
 - ※ 공개모집 시 학교,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등을 참고하여 선발
 - 지자체 주관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등 절차를 통해 위원 선발 ※ (절차) 모집공고 및 추천의뢰 → 서류 및 면접심사 → 선발 및 위촉
 - 모집 시 또는 선발 이후 또래 청소년의 추천서(10명 이상)를 지자체(위탁기관)로 제출 ※ 청소년 스스로 참여기구를 홍보하고 활동의지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위촉 및 임기

- 최종 선발된 청소년위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위촉장 교부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위촉 시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할 수 있음
- 위촉절차(주체:시·도, 시·군·구)

계획 수립

- ㅇ 계획 수립
 - 구성방법(모집방법 등 포함), 홍보, 인원, 일정, 선발기준 등 확정



모집공고 및 추천의뢰 등

- ㅇ 모집공고 및 홍보
 - 교육(지원)청·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 ㅇ 추천의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청소년 유관기관
 - 교육(지원)청·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 모집

심사선발

- ㅇ 심사위원회 구성
 - 청소년 분야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5인 내외



- ㅇ 서류 또는 면접심사
 - 서류심사 : 활동경력·의지 및 정책제안서 등
 - ※ 연임 또는 중임 여부 등 확인
 - 면접심사 : 정책제안 노력도, 참여활동 책임감·성실성 등

투표선출

- ㅇ 후보 구성 및 선거운동
 - 청소년 후보 구성
 - ※ (예) 추천(50%) + 공개모집(50%)
 - ※ 입후보시 일정 인원의 또래 청소년의 추천서 등을 요건으로 할 수 있음
 - 선거운동, 투표독려 홍보



- 온·오프라인 투표
 - (온라인) 지자체별로 투표 시스템 있을 경우 활용
 - (오프라인) 학교, 주민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 ※ 동아리 공연,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선발(선출) 및 위촉

- ㅇ 선발(선출) 및 위촉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위촉장 교부

□ 해 촉 【붙임9】

- (공통)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해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가능
 - 연도말 각 청소년 위원들에 대한 활동확인서 발급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활동기준에 미달하는 위원들에 대한 해촉 처리 절차 등 마련

해촉 기준(안)

-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 3. 범죄, ○○청소년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해촉에 동의한 자
 -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천재지변
 -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 3. 본인 질병과 사고
 -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및 결혼
 - 5.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도)

- 당연직 위원이 해당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해촉될 경우 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도 위원직 상실
 - ※ 해당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다른 청소년 위원으로 보임하되, 시·도 청소년 참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10월 이후에 해촉될 경우에는 추가 보임 불필요
- 당연직 위원이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해촉될 경우 시·군·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님
 - ※ 다만 해당 시·군·구 참여위원회는 해촉된 위원 이외의 다른 위원을 정하여 시·도 참여위원회로 통지해야하나,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10월 이후 해촉시 추가 통지 불필요

(2) 주요 활동

구 분	주 기	내 용
시·도	연 8회 이상	- 시·도(시·군·구)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시·군·구	연 4회 이상	-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 청소년포럼·토론회·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참여

[※] 화상회의 등 온라인을 통한 참여활동도 월별 활동으로 인정

□ 정책 이해 교육

- (필요성) 청소년위원마다 정책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가 상이한 만큼, 정책과정 및 참여활동에 대한 공통된 정보 공유 필요
- (주요 과정) 참여활동 기본 교육 → 친밀감 형성 → 역할 나누기
 - 기본 교육 : 청소년 참여의 의의,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소개, 정책정보 찾는 법,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연간 일정 및 활동 목표 설명 등
 - ※ 청소년참여포털(www.youth.go.kr/ywith) 내 '청소년참여활동 가이드북', '참여활동 기본교육' 영상자료 등 참고
 - 청소년의 정책 이해 및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청소년참여위원회 선배 위원,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참여활동 자문단 구성·운영 가능

〈지역 우수 사례〉

- (충청북도) 참여활동의 연속적 추진 및 청소년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직전 청소년위원과의 인수인계 활동, 선배위원(OB) 간담회 등 운영
- (경남 김해)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u>학교 안(</u>찾아가는 정책스쿨) 및 <u>학교 밖(</u>관내 청소년 참여·자치기구 워크숍) 정책이해교육 운영

□ 정책 발굴 및 제안

- (문제 인식) 청소년의 일상 주변의 문제점부터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문제, 청소년이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 등 탐색 및 논의
 - 현안 탐색을 위해 지역사회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 추진 가능
- (현황 조사) 문제점의 원인과 관련된 기존 법령과 공공정책을 조사·점검하고, 통계자료, 언론보도, 국내·외 사례 등을 주도적으로 수집 및 파악
 - 서면조사 이외에 현장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 운영 노력

- (정책 발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구체화, 정책제안서 작성
 - 청소년 토의를 통해 정책제안으로 숙성할 의제 및 우선순위 선정
 - 발굴 과정에서 청소년위원과 다수의 일반 청소년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토론회, 캠페인, 앙케이트 등 기획·운영하여 의견 수렴 가능

〈지역 우수 사례〉

- (경기 광명) 청소년과 17개 지역 기관이 참여한 <u>정책·가치 공유박람회</u> '모여라, 마을 수다회' 개최하여 정책제안 전 마을 현안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
- (경남 고성) 정책과제 발굴 → 군내 청소년 대상 '<u>찾아가는 정책버스</u>' 운영을 통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대 우선순위 정책 선정 → 5대 정책을 바탕으로 심화 토론회 운영
- (모니터링) 전년도 참여위원회 제안 정책의 추진·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위원이 활동 목적을 이해하고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일정 초반에 실시하거나, 가능한 경우 제3자(선배위원, 소관 부서, 자문단)가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위원에 공유할 수 있음
 - 필요 시 이전 청소년참여위원회 제안 정책을 올해 청소년위원이 검토하여 보완·발전시키는 활동을 운영할 수 있음
- (제안 및 피드백) 청소년의 제안 내용을 소관 부서에 통지하고, 수용 여부 및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참여위원회에 반드시 회신
 - 검토의견 전달과정이 곧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 과정인 만큼 제안 미반영 시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이해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
 - 연말 정책과제 발표회 또는 결과보고회에 지자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적극 참여하여 검토의견을 회신함으로써 청소년 위원들의 연간 활동에 대한 격려 등 추진

□ 정책 실천 활동

- ※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에서 정책 제안은 하나의 수단이며, 정책 제안서 작성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참여활동을 운영할 수 있음
- 청소년 관련 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개최 및 참여
- 청소년 제안정책을 직접 실현해보는 캠페인, 프로젝트 활동 등 운영

○ 지역 청소년 및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참여위원회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장 (정책총회, 지역 축제부스, 기부 캠페인 등)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운영

〈지역 우수 사례〉

- (서울 중구) 전년도 청소년의 제안정책을 올해 청소년위원들이 직접 실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토록 하여 정책과정에 대한 실천적 학습 기회 마련
- 추진절차 : 모집 및 구성 → 전년도 제안정책 실천활동 → 의제발굴 → 정책 제안
 - '21년 '지역상생 프로젝트 스탬프투어' 운영 제안 → '22년 활동 청소년이 직접 '다산성곽길 스탬프투어' 기획·운영
 - '22년 '청소년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제안 → '23년 활동 청소년이 직접 안전교육 영상 제작 및 관내 학교 대상 배포 활동
-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정책참여의 실효성 확보
 - '청소년 마음건강 존 운영' 정책제안을 실제 사업으로 <u>시범 운영</u>하고, 만족도 조사 및 개선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발전적 환류과정 운영

□ 기타 참여활동

〈지역 우수 사례〉

- (경기 군포) '청소년 권리증진 조례 발의'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두고 참여활동 추진
 - 연구팀(조례 및 제정과정의 이해, 조례 구문 작성 등), 액션팀(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청소년 의견수렴), 미디어팀(참여활동 전반에 대한 미디어 기록 및 홍보) 운영하여 청소년 권리증진 조례 발의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
-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선정하는 정책의제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 수렴, 자문 등 참여가 필요한 특정 정책 또는 사업, 조례(안) 등을 청소년참여위원회 안건으로 제시할 수 있음
 - * 청소년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청소년복지제도 개선 및 홍보방안, 지역 인구정책 등
- 관내 타 청소년 참여·자치기구(청소년의회, 학생교육위원회 등), 타 지역 참여 기구 등과 정책제안 공유 및 교차검토, 연합 토론회·워크숍·캠페인 등 적극적 연계·교류 활동 운영 권고
 -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도 단위 연계활동 적극 참여(시·도 단위 청소년포럼·토론회 등 참석)
- 공직 선거 후보자의 청소년 정책 관련 공약에 대한 제안·점검

- (3) **협조사항** ※ '25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청소년 주도성 강화' 연계
- □ 청소년 제안정책의 실현을 위한 청소년 참여예산제 활성화
 -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질적 기회보장과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청소년위원회 분과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과 연계 운영,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다양한 방식 가능
 - ※ 청소년 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동 주체를 청소년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지자체 예산 일정 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 조성

-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제·개정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도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
 - 조례 제·개정 시 청소년 의견 수렴 등 청소년 참여 추진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지도자의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 또는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의 공동 수행 권고
-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원활한 업무 협조
 - * 시·도 참여위원회 당연직 위원(시·군·구 대표 등)이 시·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구 (운영기관) 협조 등 필요

□ 기 타

-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시 활동 참가 청소년위원에게 교통비 지급 가능 ※ 필요시 지자체 별도 예산으로 필요 경비 등 추가 지급 가능
- 지자체별 관내 교육청 협의 등을 통한 자원봉사 실적 인정 등 가능

○○시·도(시·군·구)¹)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시·도 (시·군·구)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도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
 - 2. 타 시·도 및 도내 시·군·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 4. 기타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안·행사 진행 등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도는 위원회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①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 내외로 한다.

¹⁾ 시·도(시·군·구)는 이하 "도"로 통일한다.

-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7조(해촉)**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천재지변
 - 2. 학교시험
 - 3. 본인 질병과 사고
 -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 5.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연 8회 이상(시·군·구-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① 도지사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도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 계획(예시) - 지역별 상황에 맞게 변경사용

제○○기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계획(안)

1. 심사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 ○○. ○○ (월)
- 1차 심사(서류): ○○○○. ○○. ○○ (수) / ○○도청 회의실
-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 ○○○○. ○○. ○○ (금) / 홈페이지 공지
- 2차 심사(면접): ○○○○. ○○. ○○ (월) / ○○도청 회의실 또는 줌
- 최종합격자 발표 : ○○○○. ○○ (화) / 홈페이지 공지 및 전화 통보 ※ 선발인원 : 각 지역별 비례에 맞게 인원 구성(선발하는 기간은 연초 2~3월 내 모두 구성 완료)

2. 접수 현황

※ 지역별 현황에 맞게 공개모집(학교급별, 종류별 구분 등), 추천(자치기구 청소년, 시·군·구 청소년 등) 으로 구분하여 현황 작성

3.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기준 :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을 선발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를 포함하여 ○명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안)
 - 1차 심사(서류)

성 명	소속 및 직급	성 명	소속 및 직급

- 2차 심사(면접)

성 명	소속 및 직급	성 명	소속 및 직급

4. 선발 기준 및 방법

- 선발 방법
 - 1차 심사(서류): 선발인원의 2배수 선발
 - 2차 심사(면접): 최종 선발
- 선발 기준 :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기준(붙임3 참조)
- 선발 세부 기준
 - 연임 또는 중임 청소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청소년 위원의 0% 내외로 구성(청소년은 최대 3회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가능)
 - 대표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으로 구성되도록 심사하여 선발
 - 연령, 성별 등 비율을 고려하여 선발
 - 고등학생 연령은 일반고·특성화고·특목고·자율고, 대학은 전공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생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발
 - 근로, 북한이탈, 다문화,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청소년을 포함하여 대표성 확보

【붙임2】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 위원 선발 공고(예시) - 구성 계획에 따라 변경

OO도 공고 〈제OOOO-OO호〉

제○○기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선발(안)

○○도에서는 청소년들을 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기 ○○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운영 할 예정이오니, ○○도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방법

- 지원자격:○○도 청소년
- 접수기간: ○○○○년○○월 ○○일~○○월 ○○일(○요일)
- 구비서류
 - 1차 서류 심사: 지원신청서(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추천서 포함)
 - * 추천서:교육(지원청)·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등
 - 최종합격자 : 보호자 동의서 및 학교장 동의서
 -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및 초·중·고교생인 경우 해당

□ 접 수

- 접수처 : ○○도○○○ 라 담당(ooooo@oooo.go.kr)
- 문의처 : ○○도 홈페이지(www.oooo.go.kr) ○○도○○○○과(☎000-000-0000)

■ 선발계획

- 1단계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년○○월 ○○일(○요일)
- 2단계 면접: ○○○○년○○월 ○○일(○요일) / ○○○○ 대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년○○월 ○○일(○요일)
 - * 최종합격자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전화 통보예정 youth.go.kr/ywith(청소년참여포탈), www.oooo.go.kr(○○도청)
- 오리엔테이션:○○○○년○○월 ○○일~○○월 ○○일(불참 시 합격 취소)
- 위촉시 : ○○○○년○○월 ○○일(○요일)
 - * 위촉기간 중 회의 및 행사 불참 등 활동이 부진할 경우 해촉될 수 있음

【붙임3】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 위원 서류 및 면접 심사 기준(예시)

<u> 1차(서류) 심사 기준(예시)</u>

심사항목	배점	평가세부내용	비고
합 계	100		
자기소개서	40		
■ 참여활동 이해도	10	• 청소년 참여활동 기능·역할에 대한 이해 정도	■ 최우수 : 10~9 ■ 우수 : 8~7 ■ 보통 : 6~5 ■ 미흡 : 4~3
■참여활동 의도· 의지	20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도 및 활동 의지	■최우수: 20~16 ■우수: 15~11 ■보통: 10~6 ■미흡: 5~1
■ 성품 등	10	• 봉사정신, 사회적 협력 정신, 어려운 환경 극복 등 인성(*소수청소년 우대)	■ 최우수 : 10~9 ■ 우수 : 8~7 ■ 보통 : 6~5 ■ 미흡 : 4~3
정책제안서	60		
■ 정책제안의 창의성	20	• 제안한 정책의 창의성 및 독창성	■최우수: 20~16 ■우수: 15~11 ■보통: 10~6 ■미흡: 5~1
■ 정책제안의 논리성	15	• 정책제안서 내용의 논리성 및 구체성	■ 최우수 : 15~13 ■ 우수 : 12~10 ■ 보통 : 9~7 ■ 미흡 : 6~4
■ 정책제안의 기여도	15	• 제안한 정책의 사회적 필요성과 기여정도	■ 최우수 : 15~13 ■ 우수 : 12~10 ■ 보통 : 9~7 ■ 미흡 : 6~4
■ 정책제안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10	• 제안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 •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 여부	■ 최우수 : 10~9 ■ 우수 : 8~7 ■ 보통 : 6~5 ■ 미흡 : 4~3

2차(면접) 심사 기준(예시)

심사항목	배점	평가세부내용	평가척도
합 계	100		
자기소개	20		
■참여활동 의지· 책임감	20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 및 의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가능 여부 	■ 최우수 : 20~16 ■ 우수 : 15~11 ■ 보통 : 10~6 ■ 미흡 : 5~1
의제발표	30		
■ 정책제안의 이해도, 노력도	30	 정책제안 목적, 배경,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설명능력 정책제안서 발표 능력 및 노력도 	■ 최우수 : 30~26 ■ 우수 : 25~21 ■ 보통 : 20~16 ■ 미흡 : 15~11
질의응답	50		
■사회성, 협력성	20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중 타 청소년과의 사회적 협력	■ 최우수 : 20~16 ■ 우수 : 15~11 ■ 보통 : 10~6 ■ 미흡 : 5~1
■ 성실성	15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방침 및 과제발굴 등 참여의 성실성	■ 최우수 : 15~13 ■ 우수 : 12~10 ■ 보통 : 9~7 ■ 미흡 : 6~4
■ 문제해결력	15	• 문제발생 시 대처 능력, 위급상황 시 해결 능력 등	■ 최우수 : 15~13 ■ 우수 : 12~10 ■ 보통 : 9~7 ■ 미흡 : 6~4

위 촉 장(안)

생년월일: 0000. 00. 00

성 명: ○ ○ ○

위 청소년을 ○○시·도 제○○기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0000.00.00~0000.00.00)

0000년 00월 00일

※ 본 위촉장으로 활동내용을 증명할 수는 없으며, 활동내용은 '활동확인서'를 통해 확인가능함 ('활동확인서'는 본 사업의 위탁기관인 ○○○○○○에서 발급: 위탁기관의 경우)

○○도지사 ○ ○ ○



【붙임5】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 위원 활동확인서(안)

<u>활 동 확 인 서(안)</u>

()()호

	성명	한 글	하 글			
인적 사항	0.0	- C E		성 별		
	주	소				
	소	속				
~1 ~i	직	위				
경력 사항		간 및 동시간		~ .	(총	시간)
	활 동	: 내용				
용도						
			위의 사실을 증명학	합니다.		

년 월 일

○○도지사 / ○○○○단체장(위탁의 경우)

붙임:세부활동내역 1부

【붙임6】청소년참여위원회:지원 서류

<u>지 원 신 청 서</u>

청소년 개인정보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		
연草	박 처			E-mail		
	속 단체명)			학년/반 (전공)		
			활 동 경	력		
기	간	소 속		내 용		비고
		※ 소속(학교, 단 주요 내용을 적		에서 활동했던	기간과	
		(기존 참여 기구 급		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년 ○○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집 및 이용에 동의하 그 동의하지 않음	하십니까?			

<u>자 기 소 개 서</u>





제○○회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추천서(안)

	청소년 개인정보					
,1 pd				생년월일		
성 명				성 별		
주 소			(-)		
연 락 처				E-mail		
소 속 (학교, 단체명)			학	년/반(전공)		
		활 동	경 력			
기간	활동내용 (추천사유)					
년 월 일~ 년 월 일						
		추천기괸	· 정보			
소 속			연락처	대표전화		
(학교, 단체명)			1 인역시	메일		
주 소			홈	페이지		
추 천 자	직위		성명			

위 청소년을 제○○회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OOOO 년 OO 월 OO 일 추천인: 직인

○○도지사 귀하

청소년(또래) 추천서

○○도 청소년을 대표하는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 (생년월일:○○○○.○○.○○.)를 추천합니다.

연번	소 속	이름	주 소	연락처	서 명
예시	<i>00</i> 고등학교	000	OO구 OO대로 000	010- 1234-567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7】청소년참여위원회:보호자 및 학교장 동의서

보호자동의서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만 19세 미만인 경우 제출)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위 청소년이 ○○도 『제○○기 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데 동의합니다.

보호자 성명:

주 소:

청소년과의 관계:

0000.00.00

보호자: (인)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제출

학 교 장 동 의 서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제출)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위 청소년이 ○○도 『제○○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속기관(학교)명:

소속기관 주소 :

0000.00.00

학 교 장: (직인)

담당교사: (인), 연락처: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기록

【붙임8】청소년참여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예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예시)

본인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여성가족부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	보험가입,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기록 유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보 안내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청소년 참여활동 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청소년 참여활동 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앉은
\Box $\circ \neg \Box$	U 07971	ᅜᄆ

□ 일반개인정보의 선택적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항목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	보험가입,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기록 유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보 안내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보 안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0}_9
1 7 7 7		1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항목	생년월일
수집 및 이용목적	보험가입,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 청소년의 활동기록 유지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참여활동 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청소년특별회의 활동확인서는 청소년참여포탈(youth.go.kr/ywith)을 통해 발급

20 . . .

성 명: (서명)

<u>해 촉 의 뢰 서</u>

해당 청소년 위원				
성 명		생년월일		
지 역		성 별		
해촉 의뢰 사유				

※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

20 년 월 일

위탁기관장: (인)

○○도지사 귀하

붙임: 해촉 경위(사직서, 회의록 사본 등) 1부

【붙임10】청소년특별회의:청소년 위원 위촉장(안)

위 촉 장(안)

성 명: 〇〇〇

생년월일: 0000. 00. 00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제○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0000.00.00~0000.00.00

0000년 00월 00일

※ 본 위촉장으로 활동내용을 증명할 수는 없으며, 활동내용은 '활동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여성가족부장관

<u>해 촉 의 뢰 서</u>

해당 청소년 위원			
성 명		생년월일	
지 역		성 별	
해촉 의뢰 사유			

※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

20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 (인)

붙임: 해촉 경위(사직서, 회의록 사본 등) 1부



【붙임12】청소년특별회의:청소년 위원 활동확인서(안)

활동확인서(안)

성 명: 〇〇〇

생년월일: 0000. 00. 00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제○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으로 활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활동기간: 0000.00.00~0000.00.00

0000년 00월 00일

여성가족부장관

각 시·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방안을 수립하되 아래 지침참고 가능

가. 개요

□ 목적

-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청소년 참여의식 확대
-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이 실제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개선· 반영 도모

□ 추진근거 등

○ 추진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설치대상: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추진경과
 - 2001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침에서 구성·운영 권장
 - 2003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법적 근거 마련 후 설치 확대

□ 운영현황

- 2006년 210개소에서 2023년 331개소 운영 지원
 - 공공 수련관 및 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중심 선발지원
- 2024년 ~ 국비지원 종료

▮ 연도별 운영실적 ▮

설치대상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운영지원 (개소)	258	273	286	286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31	331	331	331
지원예산 (백만원)	258	273	286	286	305	381	305	305	305	305	305	305	331	331	331	331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나. 운영 방향

(1) 구성

- 지역 내 청소년(9세~24세)으로 10명 이상~20명 이내
- 일반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장애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조손가정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청소년 위주로 구성되어야 함

(2)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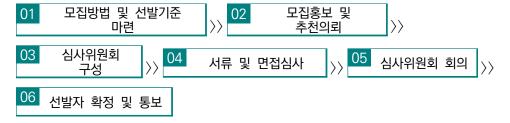
○ 선발 기준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공개모집과 추천모집(학교, 관련기관 및 단체)를 적절한 비율(50:50 권고)로 적용할 수 있음
- 지역 여건 등으로 모집 방법에 따른 비율에 미달할 경우는 선발 비율을 탄력 적으로 유영 가능
- 시기: 1~2월(공개모집, 추천모집)
 - * 시설의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나 2월 28일까지는 구성 완료되어야 함
 - 추천대상: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관내학교, 관련기관 및 단체 등
 - 추천방법:해당 청소년(학생)의 참여의사 확인 후 추천서 양식에 따라 추천

○ 선발방식

- 청소년운영위원, 시설관계자,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 * 청소년 관련 분야 교수 및 학계 전문가, 청소년시설·단체 등 지역사회 청소년전문가 등
- 선발시 고려사항
 - 청소년 단체의 회장, 학급 임원 등 자치기구 대표 청소년은 역할 중복 등으로 지속적 활동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하여 선발
 - 성별과 교급(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고려하되 대학생의 비율은 수련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

○ 절차



(3)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기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시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야 함
 - 예시) 위원장 / 부위원장 / 총무 / 분과장 / 실무간사(담당 청소년지도사)* / 자문기구(청소년관련 전문가 / 지역사회 인사 / 학교 교사 등)
 - * 팀장(경력자) 이상 담당할 수 있도록 권고함
- 위원장 선출 및 권한(「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령 제3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시행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사결정 기구로써, 시설의 사업수행 도우미 또는 청소년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 위촉 및 해촉

- 위촉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하며, 시설장 명의의 위촉장을 교부함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연임의 횟수, 연임 임원의 비율은 각 시설의 여건에 따라 정함
- 활동이 불성실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위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는 아래와 같이 해촉 가능

《해촉 기준(안)》

- ①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해촉에 동의한 자
 - 4. 위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천재지변
 -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 3. 본인 질병과 사고
 -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및 결혼

□ 운영 규정(첨부1 참조)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목적과 역할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해야 함

□ 주요 활동내용

- 기본계획 수립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연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
 - * 해당 수련시설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실무 간사(담당 전문지도자)를 배치·지원해야 함
- 연간활동계획수립 :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구성 된 이후 회의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워칙으로 함
 - * 연간활동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3월부터 12월로 계획되는 것이 보통임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예시 ■

1~2월	3월	3~11월	12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모집 및 선발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식 및 워크숍, 연간 활동계획 세우기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활동, 기관장 간담회, 활동 요구조사 및 분석	청소년운영위원회 보고서 발간, 신규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홍보

○ 회의 운영

- ① 정기회의:청소년운영위원회는 매달 정기적인 회의를 운영해야 함
 - ▶ 정기회의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고유한 역할(모니터링, 자문·평가 등)과 다양한 기획 사업 등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회의로 운영됨
- ② 임시회의:정기회의 이외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전체회의
 - ▶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들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개최할 수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모니터링 및 자문·평가
 - ▶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의견 제시를 통해 청소년에게 적절하게 운영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수렴까지 다양하게 참고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시 청소년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 * 청소년수련시설 환경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반영 및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 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
 - ▶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자체 회의를 통해 수련시설 모니터링 및 자문·평가 외에 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자원봉사, 캠페인, 교류활동 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 주요 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
 - 우수사례 조사 및 우수활동 발굴, 타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교류 활동
 - 지역사회 내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봉사활동 등
- 청소년시설 기관장과의 간담회
 - ▶ 운영위원들의 건의사항, 모니터링 결과,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 등을 전달하고 실행되지 못한 내용 등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
 - ▶ 기관장과의 간담회는 분기별 1회 또는 반기별 1회로 진행
 - *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중「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령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주의 요망(첨부 7 참조)

- 청소년수련시설 내 다양한 진로역량제고 관련 활동 장려
 - ▶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수련시설 내 청소년협동조합 등 다양한 활동 장려
- 지자체 방역지침 준수 필요 상황 발생 시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능

(4) 청소년운영위원회 의견 및 활동 관리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운영위원회 간사(청소년지도사)는 정기 및 임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에 제출된 회의록 중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및 조치하여야 함
 -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 각 시·도는 소관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정기적인 활동을 점검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참여

○ 수련시설장은 청소년운영위원회위원장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청소년 대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천

〈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 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o 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 부터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 추천 필요 없음)
 - 청소년 대표(청소년운영위원회위원장)
 - 지역주민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청소년사업 및 시설유영에 관하여 전무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 청소년 대표는 청소년유영위원회위원장 등 청소년활동에 대한 의식과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촉
-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시설에 한함

중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5)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 지방자치단체

- 각 시·도는 「시·도별 운영위원회 대표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정보 교류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국비미지원 대상)도 활동실적 관리 안내

(6) 행정사항

□ 운영관련 사전 기반 조성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련 시설 운영관련조례, 정관, 내부규정 등 근거규정을 마련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외에 자체 예산을 적극 확보 운영
 - * 국고 미편성 수련시설의 경우 자체 예산확보 운영

□ 기타

-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시 활동 참가 청소년위원에게 교통비 지급 가능
 - * 참가수당 별도 지급 불가

청소년운영위원회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령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⑦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규정(예시)

제정 OOOO년 OO월 OO일 개정 OOOO년 OO월 OO일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수련관 운영 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
-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
- 3. 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 4.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학교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④ 위원회는 원활한 조직 구성과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청소년 수련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① 위원은 지역사회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0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 4. 위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천재지변
-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 3. 본인 질병과 사고
-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및 결혼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해 참여하여 서명 날인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청소년수련관 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내에 ○○○청소년수련관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및 반영)**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제안,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 청소년수련관 관장은 그 처리 결과를 회신 및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사회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
- 제12조(운영규정의 변경)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변경된 운영규정은 ○○○청소년수련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청소년수련관 관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2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청소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과 함께 다양한 의견 및 요구를 제안함으로써 청소년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기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모집기간: 20○○. ○. ○(화) ~ ○. ○(금), ○일간
- ◆ 자 격: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가능한 자
- ◆ 주요역할:시설의 운영 정책 제안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설의 다양한 행사 참여 및 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체 사업 진행 등
-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보호자 동의서, 추천서 청소년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계획서(분량 및 형식의 제한 없음) 예) 청소년시설에서 하고 싶은 것 등
- ◆ 제 출 처:○○○청소년시설 (우편, 이메일 및 직접 제출)

▷ 주 소:○○○ ▷ 이 메일:○○○ ▷ 연 락 처:○○○

- ◆ 1차 서류심사 발표: 20 . ○. ○(월)
- ◆ 2차 면접: 20 ○. ○(금), 14:00 / 장소: ○○○
- ◆ 최종발표 : 20 ○. ○(토) ▷ 최종 선정자는 개인별 통보 및 청소년시설 홈페이지 등에 공지
- ◆ 청소년운영위원회 홈페이지:www. ○○○.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신청서

<u>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신청서</u>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은 학교와 학년을 적어주세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소속이 있을 경우만 적어주세요!						
집 주소								
집 전화			E-mail					
손 전화			비상연락처					
	기간	소속	L	배용	비고			
활동경력								
	※ 특이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 년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자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거주 지역, 메일 주소, 연락처, 소속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 년 3월 31일한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보호자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본인은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로 활동하고자 본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인) 보호자(인)								
○○○○청소년시설 기관장 귀하								

첨부 1. 자기소개서

- 2. 활동계획서
- 3. 학교장 추천서(해당자)

<u>청소년운영위원 추천서</u>							
추천 청소년 성명			생년월일				
소 속							
추천 청소년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소 속						
추 천 인	직 위		전화번호				
	성 명		이메일				
추천사유							
의거 다음의 정 ① 개인정보의 ② 수집하려는 ③ 개인정보의 ④ 거부권 및 2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 년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자 및 추천인 확인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거주 지역, 메일 주소, 연락처, 소속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 년 3월 31일한4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 : 보호자 :	()동의현 ()동의현	남 ()동의하자 남 ()동의하자	.) 않음 . 않음			
위 학생을 "○○○청소년운영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청소년시설 기관장 귀하							

보호자동의서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19세 미만인 경우 제출)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위 청소년이 (시설명) 『제○○기 청소년운영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데 동의합니다. 정소년 참여 증

보호자 성명:

주 소:

청소년과의 관계:

0000.00.00

보호자: (인)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제출

위 촉 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

> 위 사람을 「(시설명)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제○○기 위원(20 . 3. 1 ~ 20 . 2. 28)으로 위촉합니다.

> > 20 년 월 일

○○○청소년시설 기관장(직인)

첨부 7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관리부서:○○○청소년수련시설 ○○○부

■ 관련법규:「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22조, 제24조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소속, 이메일, 연락처, 주소	공지사항, 관련자료 발송, 서비스정보의 제공	증빙서류 발급 시까지 활용, 영구보관
이름, 생년월일, 소속, 이메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20, 01-1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위 제공사항은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각종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00년 월 일

성 명:

(인)

○○○청소년수련시설 장 귀하

가. 청소년참여예산제

□ 의 의

-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동 주체를 청소년으로 확장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하여 배정하는 제도

□ 주요활동

-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 후 정책 및 예산을 제안
- 또래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운영사례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내 '청소년위원회'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
- 청소년참여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을 검토하여 차년도 예산 반영

나.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 활성화

□ 목 적

○ 지역사회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 마련

□ 내용

- 온라인 청소년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토론회·포럼 등을 활성화
- 사회참여 관련 청소년의 생각을 공유하는 토론 및 발표 대회 마련

Ⅱ ▶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1 청소년 우대 제도

가. 개 요

○목 적

-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할인 제고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편의 및 문화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법적 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 청소년에게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권고
-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을 위해 청소년증 등 증표 제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 청소년 우대시설의 종류
-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기준

○ 우대 기준

-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주요내용

- (면제 또는 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
- (할인 권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 세제상의 혜택, 업무를 위탁을 받은 자'가 청소년 이용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 할인 권고 가능

나. 우대 시설의 종류

-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노선버스, 철도 등
-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
 -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 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등

◈ 할인혜택 현황(예시)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40%, 여객선 10~50%

• 궁·능 : 면제~10% 내외

• 박물관·미술관·공원 : 면제~2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원~3000원 등

※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 혜택은 다를 수 있음

다. 이용 방법

○ 청소년이 시설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2-1 사업 개요

가. 개 요

- 발급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법적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종류: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 + 선불형 교통카드)
-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추진경과

- 2003. 9.18 : 청소년증 발급 훈령 제정(문화관광부)
- 2003. 9.25 : 청소년증 카드발급 약정체결(한국조폐공사)
- 2003.10.15 : 청소년증 시범발급 실시(서울, 대전)
- 2004. 1. 1: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증 발급 실시
- 2004. 2. 9: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근거 마련)
- 2005. 2.10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 2007. 5. 1 : 청소년증 전산화발급 전국실시
- 2008. 8. 1:청소년증 발급 알리미 제도 시행
- 2010. 1. 4: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발급시스템 변경
- 2011. 6. 1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기관 전국 확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3.12.17 : 청소년증 카드발급 약정체결(여성가족부 한국조폐공사)
- 2014. 6.19 : 청소년증 수령방법(등기 또는 신청기관 방문 수령) 선택 가능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4.12.30 : 청소년증 대리인 발급신청 가능 및 신규 발급 신청기관 전국 확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6. 9. 1: 청소년증 기능확대를 위한 MOU체결(여성가족부 한국조폐공사)
- 2017. 1. 11 :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2017. 4. 19 : 청소년증 분실(철회)신고 기능 개설
- 2017. 7. 14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8. 7. 4.: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한 청소년증 분실 신고, 분실 철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시
- 2024. 1. 1.: 청소년증 발급사진 규격 변경(3.5cm×4.5cm) 및 대리신청 자격 확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다. 기 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 (e청소년) QR코드를 탑재하여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연계

라. 추진체계

다. 우신세계	
추 진 주 체	기능 및 역할
여성가족부	o 청소년 우대정책 및 청소년증 발급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o 청소년 우대정책 및 청소년증 발급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보건복지부	o 청소년증 발급 시스템(행복e음) 운영
지방자치단체	 관내 청소년 우대 정책 추진 및 청소년증 관리 청소년증 발급신청, (재)발급·교부 청소년증 발급·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
한국조폐공사	o 청소년증 제작 및 발급현황 관리 o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SMS) 관리
교통카드사업자	 전국호환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교통카드 충전·환불 사후 관리 교통카드 제작 지원 및 사후 관리

2-2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

가. 유효기간: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19세가 되기 직전의 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이기는 하나, 발급소요기간(3주 정도) 및 발급 후 실제 사용 가능기간을 참조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24.1.1. 개정)
	■ 청소년 본인 ※ 단,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제7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인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 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8세 이하 또는 19세 이상인 자 ○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외국인
신청방법	■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서 식 〈청소년증 (재)발급신청 서〉	■ 신청인(본인) - 초·중·고 재학 여부 등 선택 ■ 대리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교통카드 기능 - 신청서 작성 당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별도로 교통카드 기능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교통카드 기능 추가를 위해서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발급신청 철회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당일(23시까지)에만 가능, 이후 재발급 필요 - 원하는 경우 교통카드명(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하여 기재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청소년증 업무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비용	■ 무 료 -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우송료(3,820원)는 신청인 부담 - 청소년증 발급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 * 청소년증 발급 단가:비교통 4,700원, 교통 6,500원

다. 신청 시 구비서류

청소년 본인	대 리 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 신청인 사진(3.5cmx4.5cm) 1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도)
	■ 대리인 증명 서류 (예시)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 확인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 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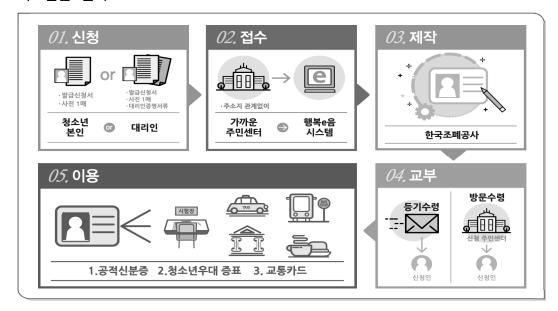
라. 수록사항

청소년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한, 발급일, 발급기관명을 수록

마. 관계기관 및 역할

- ① 주민센터
 -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신청서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
 - (방문수령 선택 시)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신청기관 방문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확인 후 교부
 - (등기수령 선택 시)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요금을 수령하여 접수 즉시 건별로 입금 원칙(편의상 익월 5일까지 입금 가능)
 - * 붙임4 정산방법 참고
 - * 계좌번호/예금주: 312884-01-006047 / 대전대덕우체국
- ② 한국조폐공사
 - 방문수령인 경우 제작 후 신청지 시·군·구로 청소년증을 배송
 - 등기수령인 경우 제작 후 신청인의 등기수령 주소로 배송의뢰(우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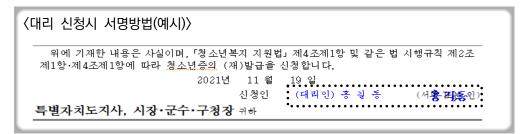
바. 발급 절차



(1) 신 청

- 청소년 본인은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가까운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 ※ 단,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7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사진 요건(3.5cm×4.5cm)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읍·면·동장은 제출받은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진의 규격(3.5cm×4.5cm)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은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본인의 변모,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 보기 곤란한 사진
- 스티커, 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그 밖에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가발 착용,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 등)

- 대리인인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 사진 규정은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 ※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증명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대리 신청 시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상의 서명(또는 인)은 대리인 이름으로 하며, 대리인임을 명시하여야 함



(2) 접 수

-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받은 공무원은 신청인(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청소년증 발급대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
 -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지역, 가맹점 등 상세히 안내하고, 반드시 청소년 할인등록을 한 후 이용해야 함을 알려야 함(할인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성인요금으로 결제됨)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함
 - 대리 신청의 경우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공통 : 대리인의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 확인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대리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증 대리 신청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음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재직 증명서 등
- 담당 공무원의 착오나 소홀로 타인에게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발급받으러 온 신청인에 대하여는 철저히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청소년증 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 당일까지만 가능하므로 청소년의 이름, 주민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명확히 확인한 후 신청
 - 업무처리 부주의로 동명이인 청소년증 오신청, 개인정보 유출 등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본인 확인 방법(예시)〉

- o 청소년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부착된 사진과 청소년의 얼굴 일치 여부 확인
 - 관계공무원이 해당 청소년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물어보고 행복e음시스템에서 조회한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 보다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상 세대원 이름 또는 생년월일 등 추가 확인
-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학교선생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등
- ㅇ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청소년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
 - ※ 공통: 대리인의 신분증
 - ※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 확인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대리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음
 -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재직증명서 등
 - 대리인 신분 및 해당 청소년의 관계가 확인되면 대리인이 제출한 발급신청서와 행복 e음시스템 등으로 조회된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의 다른 세대원 이름 또는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확인 가능

- 청소년증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소년증이 교부되기 전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발급 가능
 -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사진 하단에 간인을 날인하고, 투명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전산으로 출력한 확인서도 동일하게 적용)

(3) 제 작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청소년이 신청·접수한 청소년증 관련 자료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한국조폐공사에 제작 의뢰
- 시·군·구청장은 한국조폐공사에 청소년증 제작비용 지급
 - ('24년 단가) 기본형(비교통) 4,700원, 확대형(교통) 6,500원
 - 발급일자로부터 1년 이내 교통카드 불량으로 재발급 신청 시:한국조폐공사 부담

(4) 교 부

- 시·군·구청장이 청소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청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교부일과 수령자의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며, 행복e음 시스템에서 교부 처리
 - ※ 청소년증 발급대장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만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재 항목(수령자, 서명 등)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청소년증 교부 이후 행복e음 시스템에서 교부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분실신고가 진행되지 않는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교부 처리 필요
-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의 경우, 교통카드 사용 전에 청소년할인 등록을 해야 청소년 요금이 적용됨을 반드시 고지
- 청소년이 읍·면·동장에게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발급된 청소년증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송부
- 읍·면·동장이 청소년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교부인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교부

- 시·군·구에서는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청소년증을 인수한 즉시 해당 읍·면·동에 인계
- 읍·면·동에서는 시·군·구로부터 인수한 청소년증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
- 청소년증을 교부한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청소년증 대리수령 범위〉

- 동일 세대원(직계 혈족),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사. 청소년증 재발급

(1) 재발급 사유

- 청소년증의 분실이나 훼손
- 교통카드 불량
- 기본형 이용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 개명, 사진 등 기재사항 변경 등
 - ※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청소년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 서류 첨부

(2) 재발급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세부 절차는 신규발급 신청 절차와 동일
- 청소년증 훼손 또는 교통카드 불량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증을 첨부하여야 함
-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 단,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아. 분실신고(철회)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www.bokiiro.go.kr, 단,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고자:본인 또는 대리인(※ 청소년증 발급 신청인과 동일)
- 절차
 - (신청권자) 분실신고서 작성·제출 → (담당공무원) 행복e음시스템 입력
 - ※ 청소년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별도로 청소년증 분실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만 작성·제출할 수 있음
- 재발급 신청
 - 청소년증 분실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 절차에 따라 진행
- 유의사항
 - 철회 신고:분실신고된 건에 한하여 철회신고 가능
 - 분실신고 수정: 최초 등록한 읍·면·동에서만 가능
 - ※ 분실신고 후 청소년증을 습득한 경우 모든 주민센터에서 철회신고 가능

자. 청소년증 파기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 청소년증을 파기해야 함(시·군·구에서 취합하여 파기)
 - 훼손 또는 교통카드 불량, 기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하는 경우 기존 청소년증
 -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 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청소년증

차. (재)발급 관련 비용 처리

- 방문수령 시
 - 발급비용은 주소지 시·군·구에서 부담
 - ※ 한국조폐공사에서 매월말 기준으로 계산서 청구(건당 발급비:기본형 4,700원 / 확대형(교통) 6,500원, 우송료: 중량 기준)
- 등기수령 시 (붙임4 정산방법 참고)
 - 발급비용은 주소지 시·군·구 부담, 등기비용은 신청인 부담
 - ※ 발급비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시·군·구에 청구
 - ※ 등기수령 비용(우송료 3,820원)은 신청인에게 수령하여 담당자가 송금 처리

- ※ 신청인이 등기수령을 선택하였으나 수령인 부재,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됨
- ※ 온라인으로 청소년증 재발급을 신청하며 등기수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등기비용이 우정사업 본부로 바로 이체되므로 별도 정산 불필요
- * 카드 결제 시 등기비용(3,820원)에 카드결제수수료(200원)가 추가로 부과됨

※ 등기수령 선택 시 처리방법(붙임4 참고)

- 신청인이 등기수령 선택 시 신청지 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3,820원 수령
- 신청건별 접수 후 즉시 이체 원칙이나 편의상 익월 5일까지 입금 가능
 - * 계좌번호/예금주: 312884-01-006047 / 대전대덕우체국
 - * 송금인명:(읍/면/동)+청소년이름으로 입금 * 7자 이내
 - * 정산문의: 대전대덕우체국 우편영업과(042-930-2430)
- 주소지로 등기수령 비용 이체할 필요 없이 신청지 주민센터에서 모두 처리

카. 행정사항

- (1) 사용상의 유의사항을 교부 시 안내(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청소년 할인등록을 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할인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성인요금으로 결제됩니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며, 충전금 환불이 불가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2) 청소년증 위·변조, 부정사용 등 인지 시(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준용)
 -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그 직무는 공무원의 처리하는 직무만을 뜻하며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3) 학교 밖 청소년 연계

- 신청인이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의 '초·중·고 재학하지 않음'에 체크한 경우
 - 정보연계 관련 절차는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별표 4] 참조
 -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유선 1388, http://www.kdream.or.kr)에 연계
 - *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붙임 3] 서식

(4) 기 타

- 청소년증 발급시스템
 - 업무권한 부여절차 : (시·도, 시·군·구) 청소년 업무 주무과장 → 시·군·구 업무 담당자 및 읍·면·동장 →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발급은 「행복e음」또는 워드(한글, MS워드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력 및 출력 가능
 -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사진 하단에 간인을 날인하고, 투명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전산으로 출력한 확인서도 동일하게 적용)

○ 청소년증 단체발급

- 청소년증 개별 신청·수령 등에 따른 번거로움 완화를 위해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 ①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 수요를 조사하여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추진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가 준비사항, 신청 가능 여부 등 판단 필요
 -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학교 밀집 지역의 경우 특정 주민센터에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 ②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하여 주민센터에 제출
 - ※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청소년의 의사, 본인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시 공문 등 첨부(지자체에 따라 담당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확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등록 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
 - ※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변경된 주소 기재 요청 시
 - 행복e음시스템 등을 통해 주소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청소년증 뒷면에 주소 변경일자, 변경된 주소 등 기재

증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가. 목적

○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통카드 기능을 청소년증에 추가하여 대중교통 및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용 활성화

나. 유의사항

- 교통카드 사용 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3개 교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 교통카드 수령 후 반드시 할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하지 않을 경우 대통교통 이용 시 성인요금으로 결제됨
- 교통카드 이용 전 소득공제 신청해야 함. 소급하여 공제 불가
- 청소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당부.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며, 충전금 환불이 불가함

구	분	레일플러스 Rail+	원패스 Onepass	캐시비
	용 [역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불기	용 가능 I역	- 경북 (군위, 봉화, 영덕, 영양, 청송) - 전남(진도)	버스(춘천, 통영, 거제,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경전철(김해)	 경남(거창, 고성, 남해, 산청, 창녕, 하동, 함양, 합천) *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일부 지역은 추후사용가능
사 용 처	교통		 지하철(서울 1~9호선, 부산 1~4호선, 대구 1~3호선, 광주 1호선, 한국철도공사 국철구간, 코레일공항철도(서울역~인천 	시외버스, 전국시외버스 KSCC 운영지역) - 지하철(수도권, 부산, 대전, 대구, 광주)

				_
구	분	레일플러스 Rail+	원패스 Onepass	캐시비 cash
사 용 처	가맹점	- 편의점(emart24, story way) - 유통점(KTX 열차 내 유인이동 판매대, 역사 내 카페스토리 웨이), 유통전문점(일부 프랜차이즈매장 제외) - 코레일 역사 내 브랜드매장(카페, 음식점, 잡화 등 600여개) - 제휴가맹(레일플러스 스티커 부착 제휴가맹점) - 전국 우리은행, 농협, 롯데(세븐 일레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등)	- 편의점(전국 emart24, 대구· 경북지역 GS25, 세븐일레븐 대구·경북 전 지점)	 편의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미니스톱, GS25) 유통점(롯데마트, 롯데슈퍼, 롭스) 엔터테인먼트(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식음료(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크리스피크림도넛, 파리 바게트(롯데계열),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파스쿠치, 잠바 주스, 빚은, 오봉도시락, 밀크밥 버거, 커피앳웍스(SPC계열)) 기타(주차장, 자판기, 구내식당, 사직야구장, 음식물종량제 등)
충전	시설	- 철도역(전국 코레일 기차역) - 지하철 내 충전기 및 발매기 - 편의점(storyway, emart24) - 우리은행·농협·롯데 ATM * 농협 ATM은 농협계좌이체 충전만 가능 - 모바일(레일플러스 APP) * 안드로이드 2.2이상/ IOS 5.0이상	GS25, 세븐일레븐-대구·경북) -교통카드 판매/충전소 마크가 부착된 토큰판매소 및 가맹점	-신한은행, 우리은행 ATM:
		※ 소급하여 소득공제 신청 불가하므로		
	-공제 청	-홈페이지, 어플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 메뉴→할인카드 등록 → 소득공제 체크 후 개인정보 입력	-홈페이지 회원 및 비회원 등록 절차 중 소득공제 신청여부 선택가능	- 신규회원: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소득공제 신청 여부 선택 - 기존회원:[내 정보수정] 통해 신청 가능
할인	등록	- 홈페이지 또는 R+어플 → 카드 등록 → 할인카드등록 → 카드 번호입력 및 생년월일 입력 ※ 최초 사용(결제) 후 10일 내 반드시 할인등록 필요 (미등록시 일반요금 전환) ※ 시스템 할인등록기간(최대 5일) 동안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은 청소년 요금 징구 필요	- 홈페이지 → 청소년·어린이 할인 카드 등록 → 회원 혹은 비회원 등록 선택 → 본인인증 → 교통 카드번호 입력 → 등록완료 ※ 최초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카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일 경과일로부터 성인요금 차감 ※ 청소년(만 13~18세) 등록 시 유의사항	- 세븐일레븐 / CU / GS25편의점 에서 생년월일 등록 → 할인 요금 적용(통합권종카드 표기 카드) ※ 내역조회 및 소득공제 필요 시 홈 페이지 가입 후 카드등록 및 소득 공제 신청

구 분	레일플러스 Rail+	원패스 Onepass	캐시비 cash
		- 등록일 기준 최대 +3일 이후 청소년요금 적용 - 등록일 기준 3일내 대중교통 이용 시, 단말기 조작 필요 (지하철 불가) ※ 카드 허위등록 및 악용으로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카드 등록자에게 있으며,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승차구간 운임요금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	
	※ 분실/도난 시 환불 불가		
환불 신청	- 전국 코레일 역사(전국기차역, 코레일운영전철), 우리은행ATM(계좌보유시) ※ 20만원 이하에 한하여 현장에서 잔액 환불 가능(환불수수료 500원) ※ 20만원 초과 및 훼손카드는 역 방문 반환접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반환접수 가능	대일운영전철), 리은행ATM(계좌보유시)	
특별혜택	-철도승차권 구입 시 KTX 마일리지 1% 추가 적립	-	- 가맹점별 할인 프로모션 시행 여부에 따라 상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이벤트 확인
콜센터	1544-7788(내선 5)	080-427-2342	1644-0006
홈페이지	http://railplus.korail.com	http://www.dgbupay.com	http://www.cashbee.co.kr
사업자명	코레일네트웍스(주)	㈜DGB유페이	㈜이비카드

- * 제휴 가맹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통카드사 홈페이지 참조
- * 위 표에 명시된 사용처는 교통카드 충전액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을 의미하며, 결제 시 청소년 할인 적용 여부와 별개임

-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원하는 경우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의 교통카드 기능 '신청'에 체크하고 3개 교통카드 중 원하는 교통카드명 기재
 - **※ 사용가능지역, 사용처 등** '나. 교통카드별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여 청소년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필요
 - ※ 카드종류별 사용불가 지역을 확인하여 교통카드 기능 추가 여부 등 안내
-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청소년증을 원하는 경우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의 교통카드 기능 '미신청'에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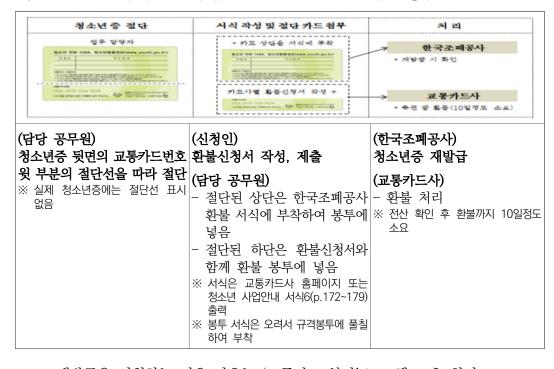
다. 화불 신청

- 도난/분실
 - 선불형 교통카드 도난/분실은 현금 분실과 동일하므로, 교통카드사 정책에 따라 잔액 환불처리 불가능(카드 뒷면 이용안내에 표기)
- 정상카드 환불
 - 외형 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칩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 카드로 이사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잔액을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
 - '나. 교통카드별 주요내용'의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이 신청
 - 환불수수료 발생
 - ※ 자세한 내용은 교통카드사별 홈페이지 및 안내전화 참고

라. 칩 불량카드 환불 처리

- ※ 외형 훼손 여부와 관계 없이 칩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카드 환불
 - 개인정보가 포함된 청소년증 교통카드의 특성상 주민센터에서 처리 원칙

①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청소년증 앞면 발급일자 기준)인 경우



-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유는 '교통카드 불량'으로 체크 후 처리
- 재발급비 처리: 칩 불량 청소년증(1년 이내) 재발급비는 신청 시·군·구청에 청구되지 않음
 - ※ 청소년증 상단은 반드시 한국조폐공사로 반납해야하며, 우송료는 기존과 동일

② 발급한 날부터 1년이 초과(청소년증 앞면 발급일자 기준)된 경우

- 청소년증 절단 후 하단만 교통카드사로 송부, 상단은 주민센터에서 파기
-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유는 '교통카드 불량'으로 체크 후 처리
- 발급한 지 1년이 경과된 경우이므로 발급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 절단 방법 등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와 동일

〈일반 환불처에서 칩 불량 청소년증을 교통카드사로 잘못 발송한 경우〉

- ㅇ 청소년증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속한 처리 필요
 - 해당 청소년증이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교통카드사는 청소년증 절단 후 환불신청서에 따른 환불처리 및 한국조폐공사로 상단 전송
 - 발급한 날부터 1년이 초과된 경우:교통카드사는 청소년증 절단 후 환불신청서에 따른 환불처리 및 주소지 주민센터로 상단 전송

붙임 1 서 식

서식번호	서 식 명
서식 제1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서식 제2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서식 제3호	청소년증 분실신고 및 철회신청서
서식 제4호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 제5호	청소년증
서식 제6호	환불서식(환불신청서, 환불봉투)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用)

[서식 제1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	를 읽고 작성해 =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	는 곳에 √표시를 힌	나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성명		2				
신청인	주소						
(본인)	전화번호		Ē	휴대전화번호			
	[]초·중·고	재학 중 []	초·중·고 지	학하지 않음 []고등학교 졸업	1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분실 []훼선	÷ []기타)			
신청내용	수령방법	[]방문		[]등기우편		사진	
	등기우편 수령 주소)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교통카드 기능	[]신청: 종력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관계	7	주민등록번호			
대리 신청인	주소	1	ı				
LOL	전화번호		Ē	휴대전화번호			
위에 기재한 L 따라 청소년증의 (원법」제42	E제1항 및 같은 t	법 시행규칙 제	2조제1항·제4조제1항에 년 월 일	
				신청인		인 필 골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	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처리절	차			
신청서 제	출 →	접수	→	제작	→	청소년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특별 도, 시·군·구		한국조폐공/	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
	1. 사진 1매(앞쪽의 사진란에 붙여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2.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 청소년증 발급 및 제도개선,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 처리 등

- 이용기간 : 19세가 되는 날의 바로 전날까지

- 제공기관 :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기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 1. 청소년증의 (재)발급 신청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재)발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4.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5.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청소년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6.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최초 발송한 날부터 5일 이내에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청소년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청소년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 7.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청소년증을 찾아가기 바라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청소년증은 파기됩니다.
- 8. "교통카드 기능"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카드의 종류를 적습니다.
- 9.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0.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은 이후 분실한 청소년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되찾은 청소년증을 발급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10mm×297mm[백상지 80g/m²]

[서식 제2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 진	성 명			
사 진 (3.5cm×4.5cm)	주민등록번호			
간 인	주 소			
발급신청일자		발급번호	유효기간	

신청인

위 사람은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 의 사 항

※ 발급 시 유의사항

이 확인서는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거나 본 서식에 사진을 붙인 후 발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고 ,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발급번호·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 이용자 유의사항

- 1. 이 확인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하는 증명서이며, 청소년증 발급통보를 받으면 청소년증을 별도로 수령해야 합니다.
- 2. 유효기간은 이 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이며 청소년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3.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증 발급기관(☎ - -)으로 문의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서식 제3호]

청소년증 []분실신고서 []철회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기	자			
	성명			분실자와의	관계	
신고(철회)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1/ -	주소					
	성명					
분실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분실일자	장소				
신고(철회)내용	분실(철회) 사유					
청소년증의	습득	<u>크</u>	월	일		
위와 같이 청소	.년증의 분실을 신고(분실신고를 철회)합니	 니다.				
		년	월	일		
		신	!고(철회)인		(/	너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	항				

- 1. 이 신고서는 청소년증 분실신고만 할 때 사용하시고,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 분실자가 직접 신고할 때에는 '신고(철회)인'란은 적지 않으며, "청소년증의 습득"란은 담당 공무원이 기재하는 난이므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3. 분실된 청소년증을 되찾았을 때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철회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u>청소년증 발급대장</u>

발급번호 (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유효기한	교부일 (인)	비 고 (재발급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서식 제5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14.〉

	(안쪽)
	<u>청 소 년 증</u>
사진 (2.5cm×3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한:
00	시(도)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86mm×54mm(플라스틱(PVC))
ı	(뒤쪽)
연월일	주소 변동 사항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서식 제6호]

- 환불서식(환불신청서, 환불봉투)
 - 레일플러스 환불신청서

			! 청 서 및 이용		시 카드와 본	본 신청서를	봉투에 동	롱해주세!	요.)	
	취만 개인	[정보 구1			드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죄	바ㅎ			-
	- ㅜㅁᆼㄱ - 수집/이용	모저			당지, 반환서비			나이 소토		-
					을 초과하는 경우				D + 114	-
보유 및 (이용기간				는 상기와 같이 7				F - 10	-
									t,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제한됩니다.	
- HI-91 11	18111						동의 🗌 🖁	동의하지않	음 성명:(인)	
접 수			년	월	일		카드재교부		이니오 (불량카드에 한함)	-
Rail+ 카		<u></u> 일반			의 어린이		/(드세포구 il+ 카드 번호	Ц М	아니도 (돌당가드에 전함)	-
Rail+ 7[2	— от	고객명	1 19:	20		Ra	IIT 기드 단호	은 행 명		-
		T-48				_	01704			-
신 청	인	연락처	-	-	-		입금은행	예 금 주		-
			▶ 연락처를 동	해 반환관	련 서비스 확인이 가	능합니다.		계좌번호		-
충전0	처 및 차량번 이 안되는 경 이 훼손 및 피	우(충전처당)	· 파손카드는 · 칩손상, 안태	구멍뚫림, 구김, 테나 손상 등 고?	휘어짐, 찍	부 또는 카드 갑을 지금해 드립니다. 회, 태용, 조각は, 깨짐, 갈라점, 카드번호 지워짐 는 과실로 훼손된 Pail+카드입니다. 만원 이하는 변환되지 않습니다.	
Ro n United					금이 입금될 I	! 때까지 보	관하시기 비	나랍니다.)	
	보 수집항목				드번호, 은행명,	, 예금주, 계죄	번호			-
개인정보	보 수집/이용	목적	본인확인, 브	부정이용	당지, 반환서비	스 처리에 대	한 안내, 고객과	바의 소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본인확인, 부정이용방지, 반환서비스 처리에 대한 안내, 고객과의 소통 보유 및 이용기간 반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년, 반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1년								-	
			※ 코레일 및	! 코레일!	네트웍스㈜ 는 상기	기와 같이 개인경				-
								실 수 있으니	h,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제한됩니다.	
<u>민</u> 반환 보							여 동의를 거부하	실 수 있으니 동의하지않	h,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제한됩니다. 음 성 명 :(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여 동의를 거부하 장의	실 수 있으니 동의하지않	h,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제한됩니다.	-
	일 자	<u></u> 일반	년		일		여 동의를 거부하	실수 있으니	h,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제한됩니다. 음 성 명 :(인)	-
접 수 Rail+ 카드	일 자	U 일반 고객명	년				여 동의를 거부하 중의	실수 있으니 동의하지않	h,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제한됩니다. 음 성 명 :(인)	-
접수	일 자		년				여 동의를 거부하 장의	실수 있으니 동의하지않는 예 금 주	h,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제한됩니다. 음 성 명 :(인)	-
접 수 Rail+ 카드	일 자	고객명	년 <u></u> 청:	소년 -		Ra	여 동의를 거부하 중의	실수 있으니 동의하지않	h,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제한됩니다. 음 성 명 :(인)	-
집 수 Rail+ 카! 신 청 반환시유 □ 카드 ((사용) □ 충전이	일 자 드 종류 I 인	고객명 연락처 는 경우 호 : 우(충전처(년	소년 -	에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가면 서비스 확인이 가	Ra Ra Ra Fegure 주의사항 카드 상태를 사용후 1만 - 마은카드는 - 집순상, 안타	여 동의를 거부하	실수 있으니 동의하지않: 등의하지않: 에 의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청성서를 작성는 카드재교 백억의 고의 또	h,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제한됩니다. 음 성 명 :(인)	- - - - - -
집 수 Rail+ 카! 신 청 반환시유 □ 카드 ((사용) □ 충전이	일 자 드 종류 당 인 인식이 안되 처 및 차량반	고객명 연락처 는 경우 호 : 우(충전처(년	소년	에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가면 서비스 확인이 가	등합니다. 주의사항 카드 상태를 - 사용 후 1년 - 파순카드는 - 원순상, 인타 - 충전기에서	여 동의를 거부하	실수 있으니 동의하지않: 등의하지않: 에 의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청성서를 작성는 카드재교 백억의 고의 또	I.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제한됩니다. B 성 명 :(인) O나J오 (불량카드에 한함)	- - - - - -
접 수 Rail+ 7년 신 청 변환시유	일 자 드 종류 인식이 안되 어 인되는 경이 웨손 및 피 라이 웨손 및 피 라이 레스 및 피 라이 코래 그래	고객명 연락처 는 경우 1호: 우(충전처) 다손된 경우	년 - 정소 - 전역자를 통 전 :	소년 -	다 어린이	Ra Ra 주의사항 카드 상태를 · 사용 후 1년 · 피손카드는 - 충윤상 - 인단 · 충전기에서	여 동의를 거부하여 등의 기부하여 등의 기부하여 등의 기부하여 등의 기부하여 등의 기부 등의 기	실실수 있으나 등록의하지않는 이 에 급 주 의 제 좌번호 의 기계 좌번호 의 기계 좌번호 의 기계 좌번호 의 기계 두 기계 자리 이 나는 한 경우 5 기가 기계 기계 두 기기 기계 다 가기 기계 기계 다 가기 기계 기계 기계 다 가기 기계	I.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제한됩니다. B 성 명 : (인) 아니오 (블랑카드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레일플러스 - 환불봉투

수면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6.2.22 ~ 무기한	사율증앙우체국 지세 1527호	받는 사람	전국호환 선불 교통카드 뮤Oil+	서울시 중구 청파로 426 철도빌딩 6층 611호 레일플러스카드 반한 담당자 앞	0 4 5 0 9
보내는 사람 만드시 카드와 신청사를 넣어주세요					

○ 워패스 - 화불신청서

DGB유페이 환불 신청서

(우편 발송용)

■ 카드 실물이 동봉되지 않은 환불 신청은 처리가 불가 합니다.

■ 신청 정보

카드번호	필수기재	예상잔액		
카드상태	□ 인식불가 □ 파손 □ 일부 교통 사용 불가 □	기타()	
성 명		연락처		
환불계좌	아래 기재하신 환불 계좌로 입금됩니다.(현금환불 • 은행: • 계좌번호:		·전 환불 불가) 예금주:	
본인은 환불 신청	기 지 주의사항 및 환불 규정 안내를 숙지 하였으며	이에 동의, 환	불을 신청합니다.	
	20 {	를 월	일 성명:	(인/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회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2조에 따라 본 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 본인확인, 환불처리, 환불관련 고객민원처리, 카드반송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카드번호, 고객명, 연락처, 은행명, 입금계좌번호, 예금주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처리 (단, 민원 분쟁 소지로 인해 아래 기간 동안 보존)
 - 보존기간 : 환불금액 1만원 이하일 경우 1년, 1만원 초과일 경우 5년
 - 보존사유 : 환불금액 정산 및 고객민원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소송 등 기타 필요한 경우 대비
 - 파기절차 : 보존기간 만료 시 카드실물 및 신청서는 DGB유페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 처리

본 신청인은 작성한 개인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유에 동의합니다.

본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성명: (인/서명)

DGB유페이 환불 신청서

(고객보관용)

■ 환불 완료 시까지 반드시 보관 바랍니다.

■ 신청 정보

카드번호	필수가재	발송일자	20	년	월	일
카드상태	□ 인식불가 □ 파손 □ 일부 교통 사용 불가	□ 기타()			

■ 주의사항 및 환불규정 안내

- 분실, 도난, 습득카드는 환불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원패스카드 외 타사카드는 접수 시 기재하신 주소로 반송 처리됩니다.
- 고객보관용 신청서는 환불이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보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배송 및 기타 문제 발생 시 고객보관용 신청서가 없을 시 환불처리가 불가 합니다.)
- 현금환불 및 카드 재충전 환불은 불가 합니다.
- 기입하신 예상잔액과 실제 환불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환불신청 접수 후 D+10 영업일 이내 등록한 환불계좌로 카드 잔액 환불처리됩니다.

■ 홈페이지 및 문의처 안내

• 홈페이지 : www.dgbupay.com

• 고객센터 : 080-427-2342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 문서는 DGB유페이의 문서로 목적 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1603001/마케팅팅/감도연/2016.11.30 10:36

○ 원패스 - 환불봉투

■ DGB유페이 환불신청 봉투 라벨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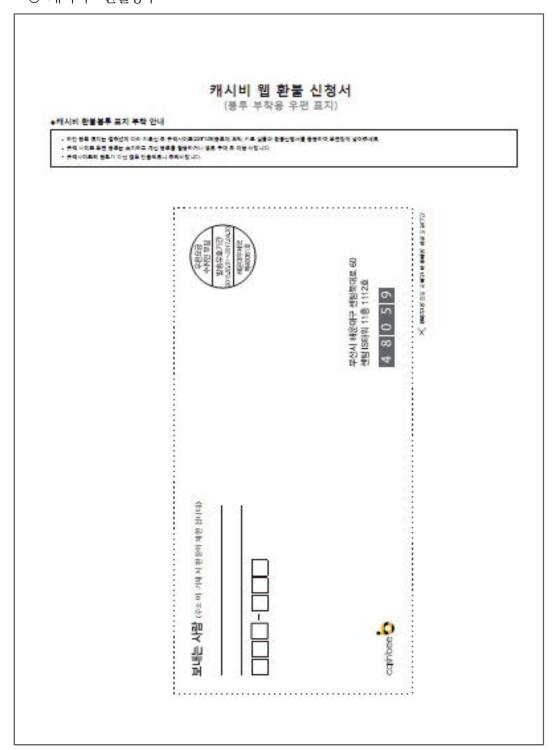
4203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범어동 223-5 동일빌딩 9층

신설



[환불접수증 - 고객보관용] 환불금 입금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꼭 보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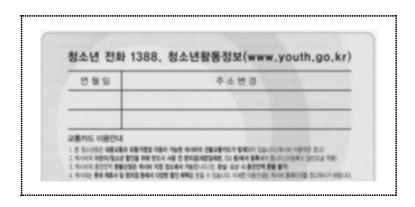
○ 캐시비 - 환불봉투



■ 환불봉투(조폐공사)

[조폐공사_카드반납]

칩불량카드 실물 반납(한국조폐공사)



- 발급일(앞면) 기준 1년 이내 카드
- 카드 실물 투명테이프 부착(교통카드번호 윗부분)

[서식 제7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 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ㅇ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초·중·고 재학 및 졸업 여부, 발급 신청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교통카드 기능 신청 여부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ㅇ 청소년증 발급 관련 본인 확인 및 제작, 수령 등에 관한 업무
- ㅇ 청소년증 제도개선,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 처리 등
- 기타 청소년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통계 자료 생산 등 업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청소년증 발급 후 해당 청소년이 19세가 된 바로 전날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ㅇ 위 내용은 청소년증 발급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ㅇ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절차
- 청소년증 적정 이용 관리업무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ㅇ 본 기관은 청소년증 발급 지원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및 등기 발송 업무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 * 본 정보는 청소년증 발급 및 복지지원을 위해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은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녀	원	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현황(2003~2023)

(단위: 건)

										년위 · 신,
구분	2003년 (시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515	11,848	14,120	12,478	24,455	30,265	33,656	36,244	40,898	43,543
서 울	436	1,515	1,781	4,355	6,975	8,251	8,480	8,949	9,992	10,633
부 산	_	381	672	971	1,724	2,198	2,492	2,399	2,868	2,944
대 구	_	181	214	580	1,754	1,905	2,212	2,069	2,304	2,216
인 천	_	751	353	640	1,676	2,464	2,216	2,527	2,642	2,916
광 주	_	282	61	110	318	416	509	576	813	1,025
대 전	66	103	287	304	607	853	917	944	885	1,044
울 산	-	86	105	220	640	844	897	950	1,060	1,180
세 종	-	-	-	-	-	-	-	_	-	32
경 기	_	4,381	1,966	2,894	6,243	7,477	8,863	9,892	11,007	11,232
강 원	13	148	85	341	428	566	835	908	1,071	1,173
충 북	-	648	995	350	479	614	845	913	1,129	1,206
충 남	-	311	4,275	368	855	720	765	889	1,205	1,244
전 북	_	1,266	450	164	498	1,027	1,066	1,226	1,437	1,506
전 남	-	244	175	141	390	499	616	624	718	896
경 북	_	521	1,597	486	810	1,048	1,229	1,369	1,438	1,663
경 남	_	983	677	418	893	1,165	1,440	1,738	2,008	2,326
제 주	_	47	427	136	165	218	274	271	321	307

										· ·	2 11 • 12/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49,438	50,663	93,536	114,250	188,562	165,408	142,502	182,644	153,547	169,190	138,699
서 울	10,624	9,779	9,619	9,786	13,609	11,395	13,122	15,155	15,694	17,883	15,866
부 산	3,202	3,174	3,899	6,326	11,890	6,432	11,704	9,332	10,664	8,090	6,438
대 구	2,573	3,006	3,406	2,939	8,616	9,225	10,514	6,291	5,392	6,414	5,538
인 천	3,012	3,126	3,828	3,223	5,180	4,001	4,683	7,801	6,000	5,837	5,835
광 주	1,215	1,561	1,899	1,779	6,037	8,891	4,399	5,487	4,826	6,286	5,432
대 전	1,446	1,447	2,403	1,636	4,646	5,913	4,887	6,779	6,870	7,461	6,545
울 산	1,590	1,243	2,490	1,424	3,791	4,125	1,964	2,071	1,931	3,182	2,143
세 종	110	99	473	1,434	2,460	3,381	2,918	3,798	3,318	3,554	2,321
경 기	12,555	12,737	24,187	39,839	63,327	34,855	38,722	60,701	51,419	57,661	42,347
강 원	1,773	1,704	3,585	5,899	9,626	8,921	4,840	6,572	4,338	4,994	4,563
충 북	1,362	1,306	2,519	1,771	3,631	2,648	3,276	6,646	5,560	5,571	5,937
충 남	1,733	1,701	3,488	5,008	9,181	6,290	4,808	8,617	8,506	5,649	5,061
전 북	1,776	1,942	3,407	4,630	9,203	11,406	8,428	8,280	5,990	7,900	7,695
전 남	1,130	1,362	4,143	5,682	7,248	11,769	5,272	8,963	5,610	5,722	6,378
경 북	1,935	2,334	14,179	10,816	12,676	17,885	12,220	10,494	6,788	11,073	6,344
경 남	2,906	3,640	8,253	10,595	14,134	15,475	8,781	13,621	8,355	9,507	8,517
제 주	496	502	1,758	1,463	3,307	2,796	1,964	2,036	2,286	2,406	1,739

* 출처: 한국조폐공사(2003~2009)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10~)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 시행 안내

1. 목 적

청소년증 신청 접수 후 발급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청소년 편의 증진 제고(한국조폐공사 개발)

- 2. 서비스 대상: 청소년증 신청인 중 알리미 서비스를 원하는 자
- 3. 시행일자: 2008. 8. 1.
- 4. 서비스 내용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SMS) 2회 발송
 -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 실시간 조회사이트(www.komsco.com) 설치·운영 (조폐공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카드발급조회)

〈문자메시지 예시〉

① 접수 직후

「○○○님의 청소년증, ○월○일 한국조폐공사에 접수됨

www.komsco.com 검색가능」

② 배송 직후

「○○○님의 청소년증, ○월○일 시군구로 발송함 5일 후 수령가능 - 한국조폐공사」

5. 협조사항

- 청소년증 신청자가 발급 진행 문자메시지(SMS) 수신을 원할 경우
 - 읍·면·동 청소년증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 / 청소년증 신청 및 교부 내역등록」의 신청자정보(HP)에 신청자 휴대폰 번호 입력이 필요함
- 기타 사항은 한국조폐공사 콜 센터(1577-4321) 문의

□ 정산 방법

- 입금기한: 접수 후 즉시 입금 원칙 * 편의상 익월 5일까지 입금 가능
- 지정계좌 : 우체국 312884-01-006047(예금주 : 대전대덕우체국장)
- 입금자명 : **(읍/면/동)+청소년이름**으로 입금 * 7자 이내
 - ※ (예시) 문평동(홍길동), 중앙동김나래, 신림10동김철수
 - * 동명이 긴 경우에도 7자까지 입력하면 우체국 담당자가 최대한 확인 및 연락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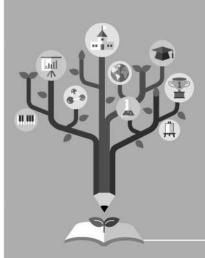
〈입금자명 오류발생 주요 사례〉

연번	입금자명	처리불가 사유	비고
1	충북 충주시, 광주 북구	정확한 접수동 확인 불가	회계부서 입금시 동명이
2	중앙동, 태화동	중복지역 다수 존재	생략되므로 우체국
3	홍길동 (주민센터장, 담당자 이름 등)	접수기관 확인 불가	담당자와 유선협의 필요 (☎ 042-930-2412)

- 입금단위 : **신청건별 입금** * 신청자 확인을 위해 건별 입금 필요
 - ※ (예시) 중앙동에서 3명(김영희, 이철수, 박진희)이 등기수령을 신청한 경우
 - → 중앙동(김영희)/ 중앙동(이철수)/ 중앙동(박진희)로 각각 3,820원씩 3건 입금
 - * 온라인(복지로)으로 청소년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등기수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카드결제 대금이 우정사업본부로 바로 이체되므로 별도 정산 불필요
 - ☞ 카드 결제 시 등기비용(3,820원)에 카드결제수수료(200원)가 추가로 부과됨

□ 유의사항

- **회계부서에서 일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명이 누락되어 확인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읍/면/동) + 청소년이름으로 입금되도록 처리
 - **입금자명 정정이 어려운 경우** 입금 후 **우체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입금 내역 등 확인** 필요 (대전대덕우체국 영업과 ☎042-930-2412)
 - ※ (예시) 진주시 ○○동 회계부서 입금 시 '경남 진주시'만 표기되어 확인 불가
- 등기비용 처리 과정에서 **청소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담당자 인사 이동 또는 부재 시 **인수인계 및 대무자 지정 등 철저**
- 우편요금 납부 지연 시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정산기한 준수
- 등기비용 정산 후 별도 공문 발송 불필요



4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Ⅱ.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 Ⅲ.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 점검
- ₩ 청人녀지도사 배치지의
- Ⅵ.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 Ⅷ.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 안전교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개요

목 적 1-1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1-2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대상 1-3

○ 대상: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대상구분		지원대상
일반형	우선순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일반영	기타 지원대상	학교(교장·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주말형	지원대상	주말 돌봄 및 체험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지원대상 구분 없음)

* 지역 수요에 따라 (초등) 예비 초4(초3)/ (중등) 예비 중1(초6) 참여 가능(10월부터)

1-4 지원 내역

○ 운영시간 : 방과후 ~ 21시, 주 5~6일 운영

○ 운영기간:1월 ~ 12월

운영모형	지원내역
일반형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주중 및 토요일 운영 권장) 주중 활동(월~금): 1주 20시수 이상(급식 5시수 의무, 그 외 프로그램의 편성은 기관 자율 편성) 주말활동(토요일): 반기별 2회 이상(급식포함 5시수 이상)
주말형	• 일 5시수, 주말 1~2일(토~일) 운영(연간 70일 이상) • 학교 방학기간 중 평일 운영 가능

^{*} 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1-5 2024년 예산

- □ 사업예산 : 31,104백만원 * 085-2200-2251-432(청소년육성기금, 국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하'방과후아카데미') 355개소 운영 지원
 - 1개소당(40명 기준) 평균 예산 : 181.2백만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
 - * 국고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2-1

추진방향 및 추진경과

□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 수행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 운영
-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
 - 방과 후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의 인식 확산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및 연계체계 구축
-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의 물품지원 및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

□ 추진경과

연 도	내 용
2005년	청소년위원회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범사업 46개소 실시(20억)
2006년	o 전국 지역별 운영 도입(46개소 → 100개소)
2007년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50개소 확대 지원
2008년	 농산어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운영 운영개소수 확대(150개소 → 185개소)
2009년	o 실시 개소수 축소 운영 178개소 지원 ※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중단 제도 도입
2010년	ㅇ 사업평가를 통한 부실 운영 아카데미 폐쇄조치 등 161개소 지원
2011년	 청소년 기본법 개정(추진 근거 마련) 신규모형(특별지원: 장애, 다문화) 개발 및 시범운영 운영개소수 확대(161개소 → 200개소)

연 도	내 용			
2012년	ㅇ 200개소 지원			
2013년	ㅇ 200개소 지원			
2014년	○ 200개소 지원 ○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우수운영기관 시상(5개기관)			
2015년	 ○ 조손가정 및 다문화가정, 3자녀이상 가정 청소년으로 참가대상 확대 ○ 국무조정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조정회의('15.4월) ─ 방과후아카데미는 중학생 중심으로 특화(사업간 연계·범위 조정) ○ 운영전담인력 인건비 인상(전년대비 3%) 			
2016년	중학교 대상학년 확대(중학교 3학년 포함)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 청소년 지원			
2017년	○ 250개소 지원○ 종합평가 주기 변경(매년 → 격년)			
2018년	○ 260개소 지원('창의융합 역량강화 프로그램' 10개소 시범운영) ○ 범정부 '온종일 돌봄 구축체계 실행계획('18.4월)' 중 '마을돌봄' 시책에 포함 ○ 우선지원대상에 맞벌이 가정 포함			
2019년	280개소 지원(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 9개소 시범운영)성과에 기반한 핵심지표 위주로 평가체계 개편			
2020년	o 304개소 지원(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 전국 확대 운영) o 우선지원대상의 소득기준 폐지			
2021년	o 332개소 지원(비대면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11개소 운영) o 긴급돌봄지원 관련 운영기준 제시			
2022년	o 342개소 지원(기본형, 농산어촌형, 주말형 확대) o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민관연계 활성화를 통한 전문 프로그램 지원확대, 교육·컨설팅 지원 강화, 평가 체계 개편 등			
2023년	o 350개소 지원(기본형, 탄력운영형, 주말형 확대) o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코딩, 드론, 로봇, 영상·미디어 제작 등 디지털 체험활동 강화 등			

※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 원(개소)	200	200	200	244	250	250	260	280	304	332	342	350
참여인원(명)	8,060	8,200	8,091	9,490	9,745	9,773	10,742	11,584	12,341	13,145	14,059	14,588
국고예산(억원)	155	161	144	184	185	185	197	224	226	282	290	313

2-2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 추진 주체별 역할

- 여성가족부
 -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현장지도·점검, 컨설팅 총괄
 - 사업운영 평가 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운영모델 개발·시범운영
 - 방과후돌봄서비스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사업총괄
 - 사업계획 수립·검토·조정
 - 운영기관 선정 및 지도 감독 등 수행
 - 국고보조금 교부집행 및 지도점검, 관리
 - 관내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및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홍보계획 수립
 - 관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조정 등(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협조)

○ 운영기관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운영계획, 운영지도안 등)
-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및 지역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 대상 청소년 발굴·지원
- 예산집행 및 정산결과보고
- 지역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협력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운영전담인력 교육(신규자 교육 및 직무연수 등)
- 현장점검(합동) 및 컨설팅 지원
- 운영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사업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홍보, 민간자원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범부처 공동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지원 등

3 '24년 세부 운영 계획

3-1 설치·운영 기준

□ 시설 설치요건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내 설치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기준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별표 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를 기반으로 한 [서식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안전점검표]를 연 1회 지자체가 현장점검 시 실시하고 총 31개 항목의 90% 이상(27개 항목 이상) 적합하여야 함
 -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안전기준 : 공공시설별 설치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내 설치

- 민간운영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소방청 고시 제2019-5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설치

○ 시설기준(권장 모형)

- 전용공간(교실) : 교실 당 정원 수용 규모, 생활에 불편이 없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 30명반은 1개 교실, 40명반은 2개 교실, 60명반은 3개 교실을 마련하여야 함
 - * 교실 위치는 지하층 배제, 환기 원활 등
 -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운영 시수 내 전용공간으로 활용
- 지도자실 : 지도자의 사무 및 연구, 회의 및 상담, 기자재 보관 공간 등으로 구성 * 청소년 전용공간과 동일 층 배치 권장
- 활동실(프로그램): 체육 활동(스포츠, 댄스 등),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 * 수련시설 내 공간 활용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사회 내 공간 연계 활용
- 북카페 및 휴게실 : 참여 청소년들이 도서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단, 지역사회 내 도서관 등 시설 활용 가능)
- 장애청소년 지원형의 경우 참여 청소년의 장애 유형을 고려한 시설 보완 권장

□ 사전 운영공간 확보

-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신규 개소)를 위한 공간확보
 -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 건립 설계단계부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공간 확보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8.8.31)'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수련 및 공공 시설(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도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신규 개소 시기 사전 조사 후 개소와 함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선 조치
 - 기존의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에도 조속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공간 추가 확보

-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유휴 교실(공간)' '방과후 아카데미' 배정요청 및 신규 개소 추진
- 사전 운영 공간 확보 후 운영시작 전 필수 기자재(책상, 걸상 등)을 구비하고, 향후 가자재의 상태를 파악하여 교체

범정부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실행계획('18.4월)' 中

- (교실 활용)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돌봄기관 설치・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안팎의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시·도교육청별 산출된 활용가능교실을 근거로 활용우선 순위*에 따른 학교· 교육청 단위의 수요를 반영한 교실 활용 자체 계획 수립
 - * (활용 우선순위 예시) 교육과정운영-방과후학교·초등돌봄 수요-병설유치원-지역수요 등
 - 자체 계획 반영 후 남는 활용가능교실 현황은 학교 내 돌봄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기초)자치단체에 제공

▮ 학교시설 사용시 관리책임 ▮

구분	관 리 책 임
학교장	- 임대교실의 골조 등 기본시설 [*] 에 대한 점검·지도 * 기본시설이란 당초 학교에서 제공한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을 말함
	- 임대시설과 관련한 사용료 및 공공요금 징수·관리(필요시) - 기타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위임하는 사항
지자체, 방과후 아카데미	- 돌봄시설 등 이용자 안전 (위생·보건·급식·통행 등)에 관한 사항 * 아동의 돌봄시설 등 입소시간부터 퇴소시간까지 안전에 관한 관리책임
	- 임차시설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보안 및 화재 예방 등 - 기타 공공요금 납부 및 보험가입 등

▮ [참고] 유휴교실의 활용 절차 ▮

※ 유휴교실 활용 절차는 학교장 - 지자체 - 운영단체 간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시도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 협의 (시도교육감, 지자체)		
대상학교 발굴		

• 지자체장과 교육감(또는 교육장)은 돌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돌봄시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의

대상학교 선정 '계획수립'

(시도교육감, 지자제)

• 중기학생배치계획, 지자체 단위의 국공립·공공형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 학교 발굴

돌봄시설 등 설치 대상학교 추천 (시도교육감 ⇒ 교육장, 학교장)

• 돌봄시설 등 설치 대상학교를 추천하고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협조 요청

해당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및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돌봄시설 등 설치 여부 심의·확정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자치단체장 ⇒ 학교장)

-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면적 등 양식 명시하여 사용허가신청서 송부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24조
 - ※ 아동복지법 제62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사용허가 심의 신청 (학교장 ⇒ 교육감(교육장)

•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요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 심의회 개최 및 의결·결과 통보 (교육감(교육장) ⇒ 학교장)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 확정 및 결과 통보

협약체결 (학교장 ⇔ 자치단체장)

• 사용허가 조건을 반영한 협약 체결



방과후 아카데미 개소·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개소 (자치단체장, 운영기관)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 (직영, 위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 개소·운영

□ 운영요건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기관 내 독립된 부서(팀)로 설치·운영을 권장하며, 시설내 타부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협조

□ 운영유형 및 인원

운영유형		1개반	2개반	3개반	
	기본형	30명	40명	60명	
	농산어촌형	30명	40명	60명	
일반형	장애형	-	15~20명	25~30명	
	다문화형	-	30명	45명	
	탄력운영형	15명	-	-	
주말형		30명	-	-	

^{*} 기본형, 농산어촌형, 주말형 1개반(30명)은 지역적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사전 승인(여가부 보고)에 따라 최소 20명 이상으로 예외적 운영 가능

- 운영형태:지역 특성에 적합한 운영유형을 선택
 - 기본형, 농산어촌형, 장애형, 다문화형, 탄력운영형, 주말형

□ 연간 운영일수

[일반형]

- 기본운영 :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일요일, 법정공휴일 휴일)
 - 연간 총 230일 운영
 - * 운영일수: 참여청소년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일 수

○ 운영시수

- 주중활동 : 1주 20시수 이상(1주 20시수 기준, 급식 5시수 의무포함)
 - * 1시수 60분(휴식시간 포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 * 장애 청소년지원형은 수업 및 휴식시간 조정 가능
- 주말활동 : 반기별 2회 5시수 이상(급식포함)
 - * 단, 주말체험활동(반기별 2회) 외 주말운영은 운영일수에 미반영

^{*} 주말형은 정원 30명 이내에서 프로그램별로 그룹화하여 운영 가능

- 정원 일부 단축참여 허용
 - 모집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주 15시수 이상 참여 가능(기관운영시간은 동일, 청소년의 단축참여 허용)
 - * 허용사유 예시 : 학원 등 교습참석, 질병치료, 별도 돌봄서비스 참여 등

[주말형]

- 기본운영 : 일 5시수, 주 1~2일 운영(토~일요일)
 - 연간 총 70일 운영
- 운영시수
 - 주말활동 : 일 5시수 이상(급식포함)
 - * 1시수 60분(휴식시간 포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프로그램 운영(편성) 기준 3-2

[일반형]

- 프로그램 운영(편성) 기준
 - 과정편성은 1일 최소 4시수 이상, 기관 상황에 따라 운영과정은 자율선택
 - 공통 운영과정(5시수) :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기본적인 생활지원과정
 - 선택 운영과정(15시수) : 지역의 특성 및 참여 청소년 수요에 따라 다음의 운영 과정 선택

선택운영과정	운영방식	운영시수 편성(예시)
① 체험·역량강화활동	 ▶ (공통)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 (특화) 역량개발, 진로체험, 동아리활동, 자원봉사, 디지털 체험활동, 지역사회프로그램 참여 등 ▶ (일반) 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 공통 운영과정(5시수) ○ 선택운영과정(15시수) - 체험·역량강화활동(10시수) - 학습지원(5시수)
② 학습지원활동	 ▶ (공통)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 (특화) 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 (일반) 역량개발,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지역사회프로그램 참여 등 	공통 운영과정(5시수)선택운영과정(15시수)학습지원(10시수)체험·역량강화활동(5시수)

* 제시된 운영시수 편성은 예시로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캠프운영 : 연 1회 캠프(집단) 운영 권장(자율 운영)
 - *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업무매뉴얼 참조
- 코딩, 컴퓨터활용, 드론, 로봇, 영상·미디어 제작 등 '디지털 체험활동' 강화 (중앙부처·지자체 관련 사업, 지역단체, 대학, 민간기업 연계 등 민관협력 적극 활용)

〈공통 : 프로그램 편성 운영시 참고사항〉

구분	주요내용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 학기초 청소년(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계획 수립, 반기별 1회 이상 수요조사 의무 실시, 프로그램 분기별 및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	•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간담회, 가족통합프로그램)은 연 2회 이상 운영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인정)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 주말형 제외)	• 운영자와 청소년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주당 6시수 이내 자율 편성 가능(긴급돌봄 시 추가 확대 편성 가능) •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급식지원(간편식, 도시락 등) ※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이 가정에서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주말형]

- 프로그램 운영(편성) 기준
 - 주말활동 : 일 5시수 이상(급식포함)
 - 특성화된 프로그램 주제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요구, 지역 특성, 시대적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자율운영
 -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주제는 운영기간(연간, 반기, 분기)별로 변경 가능
 - 학기 초 청소년(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분기별 및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 캠프운영 : 연 1회 캠프(집단) 운영 권장

〈주말형 프로그램 주제 예시〉

프로그램 주제 예시	운영방식	운영시수 편성(예시)
① 창의융합	과학, 예술, 역사, 디지털 체험활동 등	공통 운영과정(1시수)
프로젝트 활동	다양한 주제를 융합한 창작활동	+창의융합 프로젝트(4시수)
② 진로개발 지역	지역 자원을 이용한 현장실습체험으로	공통 운영과정(1시수)
현장체험 활동	진로탐색 및 미래 진로설계	+진로개발 현장체험(4시수)
③ 지역사회 참여	봉사활동과 접목하여 지역혁신 아이디어	공통 운영과정(1시수)
프로젝트 활동	제안 또는 지역사회 개선 활동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4시수)

3-3

참가 청소년 관리

□ 참가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
 -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상 학년을 선택
 - * 교급(초등/중등) 및 정원 변경을 희망할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시·도)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승인 요청 필요
 - * 기타 참가대상 : 학교밖 청소년, 시설보호청소년 참여 가능(단, 시설보호청소년의 경우 모집 정원의 20%를 초과하여 모집불가)

□ 참가 대상자 선정기준

[일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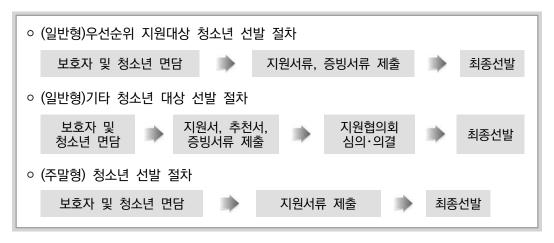
- 기본형·농산어촌형·탄력운영형
 - 우선순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타 지원대상 : 학교(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을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 청소년 증빙서류 구비 필수(지속 참여자는 조건 변경시에만 제출)
- 장애형 : 학교(교장 및 교사), 전문가,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청소년
 - * 장애판정은 받지 않았으나, 학교특수교육대상자(교육지원청에서 발급)도 포함
- 다문화형 : 학교(교장·교사) 및 다문화관련기관·전문가,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 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 * 다문화형은 전체 대상의 50% 이상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구성

[주말형]

- 주말 돌봄 및 체험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지원대상 구분 없음)
 - * 프로그램 운영 기간(연간 / 반기 / 분기 등)별 수시 모집 가능(신규)

□ 청소년 이용 절차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거주지역의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을 직접 방문, 유·무선 전화로 면담 후 참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검색) 신청·신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 *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
 - *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초등 청소년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
- 우선지원 대상 확인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면 운영기관에서 우선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최종 선발 : 우선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자에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로 확정 통보
 - * (우선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청소년) 관련 증빙서류 검토 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의 적격여부 심의를 거처 최종 선발
 - * 주말형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및 지원협의회 적격여부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되, 운영기관에서 정한 선정 규정에 따라 선발



- 참가자 모집은 운영기관별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
- 참가자 모집 시 유의사항
 - 공개모집, 추천,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등 다양한 방식 적용
 - 공개모집 방법은 사업의 취지를 알리는 내용으로 접근
 - * 외부 배포자료에 '취약계층' 등 참여자의 낙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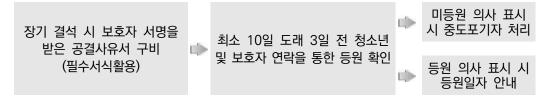
□ 청소년 출결관리

[일반형]

- 모든 운영기관은 전자출결시스템 사용 의무
- 출석률의 적절한 유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 공결처리 기준, 결석, 지각, 조퇴의 조치 방법 등 포함
 - * 공결처리 기준: 가족행사(경조사, 가족여행), 전염성 질환 등의 질병, 종교행사, 학교행사(수학 여행 등), 학원 등 교습참석, 별도 돌봄서비스 참여 등
 - * 단, 공결의 경우 반드시 공결확인서 내 공결사유 증빙서류 필히 구비(처방전, 학교공문 등. 가족행사의 경우 양육권자(보호자) 확인서 또는 유선통화결과를 지도자가 약식보고서로 작성 구비)
 - 주간출석부, 공결관리기록부 등 출결현황 관리에 철저
 - * 주간출석부: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기록
 - * 단, 운영시간 내 청소년 안전관리를 위한 시간별 출석관리 필수(자체관리)
- 무단 결석 및 장기결석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공지
 - 무단 결석: 운영 전담 인력에게 별도 연락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시 보호자 또는 학교(담임교사) 사유 확인후 중도포기 처리, 단, 이후 참여 희망하는 경우 지원협의회 승인을 받아 재참여 허용

무단결석 3일차 결석 1~2일 무단결석 4~6일차 무단결석 7일차 해당 청소년 동일 청소년 및 무단 결석자 통보 🥟 중도포기처리 통보 및 처리 보호자 추후 조치사항 소속 청소년을 통한 (중도포기사유서 담임 작성) 등교 확인 연락 아내

- 장기 결석: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기타 사유로 5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공결 포함)
 - * 단. 대기자가 있는 경우 10일(운영일수) 경과시 중도포기처리 가능(공결사유서 제출 시 보호자 에게 해당사항 안내)



○ 주간출석부, 공결관리기록부(공결 증빙자료 필수 구비) 등 출결현황 관리에 철저

[주말형]

- 출석률의 적절한 유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 전자출결관리시스템 또는 별도 출석부* 관리
 - * 프로그램 특성 상 전자출결시스템 활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도 업무지원서비스 내 참여청소년 정보 관리 철저
 - 당일 출석여부와 건강상태 등 확인
 - * 단, 운영시간 내 청소년 안전관리를 위한 시간별 출석관리 필수(자체관리)
- 무단 결석 및 장기결석자의 경우 기관별 기본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공지

□ 중도포기자 및 대기자 관리

- 중도포기자 발생 대비 처리절차 마련
 - 기관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운영



- 비자발적 중도탈락 기준 및 처리 절차 마련
 - 방과후아카데미 부적응 및 문제행동 등 안정적인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크게 위해가 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 퇴소하는 기준 및 절차 마련 및 지원협의회가 중도탈락여부 최종 결정



- 대기자 관리
 - 중도포기나 탈락에 대비하여 예비자 명단을 작성·관리

□ 청소년 생활지도 및 관리

- 참여 청소년 일상 생활지도
 - 개별 청소년의 문제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개입·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필요 시, 지역 내 전문 상담기관 및 의료 기관 등에 연계
 - 연령에 따른 청소년 발달특성 및 심리를 고려한 생활규칙 마련
 - * 청소년과 함께 생활점검표 및 생활규칙을 만들어 적용

□ 건강·안전지도 및 관리

- 급식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청소년의 신체 및 영양상태를 고려한 식단 및 간식 구성
 - 청결지도,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 지도
 - 지역사회 연계하여 건강검진 등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
 - * 청소년 영양 상태에 따라 식단 및 간식 구성
 - * 외부 업체에 위탁 급식 시 음식물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 청소년과 보호자 대상 정기적인 교육(간담회 등) 실시 등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지역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급식소로 등록

○ 귀가지도 관리

-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적절한 귀가 방법을 선택(도보·차량) 운영
- 귀가방법에 따라 적절한 귀가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차량 귀가시 지도자가 동승하여 차량 안전사고 예방
- 도착알림 문자발송 시스템 도입 등(전자출결시스템 활용)
-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운영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운영
 - * 관련 사항은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확인(「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 참고)
 - * 도로교통법(2023.10.24. 개정)에 따라 캠프, 주말체험활동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대상에서 제외

3-4 인력 관리

□ 운영 인력 배치 기준

운	영유형	1개반	2개반	3개반
	기본형	팀장1, 담임1	팀장1, 담임2	팀장1, 담임3
	농산어촌형	팀장1, 담임1	팀장1, 담임2	팀장1, 담임3
일반형	장애형	-	팀장1, 담임2	팀장1, 담임3
	다문화형	-	팀장1, 담임2	-
	탄력운영형	팀장1	-	-
주말형		담당자 1명 이상	_	-

^{*} 주말형은 전담인력 배치 및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운영(인건비 총액내에서 제수당 지급)

□ 운영 전담 인력 관리

- 팀장 및 담임 등 운영실무진의 선발 및 관리
 - 팀장, 담임 채용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직원명부, 출근부를 작성 비치 * 전자출결관리 시스템을 운영중인 경우 출근부 제외
- 운영인력과 관련한 복무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사업지침 및 각 운영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름

구 분		기준 및 자격
	주요 직무	• 1명 전담 배치 - 사업총괄, 사업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환경분석 및 사업점검 및 환류, 지역연계협력, 사업성과관리, 안전관리 등
팀장	자격 요건	① 해당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⑥「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⑥「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②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육성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위의 ①~②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음

구 분		기준 및 자격		
		 -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①~② 요건 중 자격증을 제외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사 또는 동등한 자격으로 업무를 2년 이상수행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주요 직무	 반단위 1명 ①프로그램 기획지원, ②보충학습지원 및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등, ③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④급식 지원, ⑤문서작성 및 운영지원 등 		
담임	자격 요건	①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④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⑤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위의 ①∼⑤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사 또는 동등한 자격으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채용시 유의사항 (팀장, 담임)		* (신규채용)운영종사자 채용 시 공개채용이 원칙 * (전보발령)운영기관 내 정규인력(무기계약 포함)은 방과후아카데미의 팀장 또는 담임으로 전보 배치가 가능함. 단,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 하되 겸직(중복업무)을 금지하고, 팀장 또는 담임 업무만 전담하도록 함. * 팀장이 육아휴직, 휴직 등으로 공석일 경우 담임이 팀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고, 직무대리기간 동안 팀장 급여와의 차액만큼 직무대리 수당으로 지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경우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함(단,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1일 최소 7시간 미만으로 채용할 수 없음)		

^{*} 장애형 및 다문화형 운영전담인력 채용시 사회복지사, 특수자격소지자, 다문화관련 기관 및 사업 종사경력자 채용 가능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분야〉

- 1.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 3. 「청소년복지지원법」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4. 「청소년활동진흥법」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 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5.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 6.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8.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9의2.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내일이룸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 10.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1. 「아동복지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2의1.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2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 14. 「경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과)에서 청소년 보호·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운영상 유의사항〉

-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전담 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에 따라 반복참여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 단, 추가 소요예산은 소관 지자체 또는 채용권자가 부담
-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월)』에 따라 단계별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추진
 - 1단계('18. 지자체 직영), 2단계('19, 지자체 출연 및 출자기관) 등

○ 운영인력 전문성 개발

- 종사자 교육 수료 기준

구분	팀장	담임	신규	주말형 종사자
이수시간	1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 * 신규 종사자는 직무 교육(팀장, 담임) 외에 신규 입사자 교육 수료 필수
- * 상기 교육은 실무자 의무 교육으로 해당 실무자는 당해 연도 내에 이수시간 이상 수강하되 교육 공백을 최소화 할 것
- * 직무역량지원비는 실무자 교육에 한해 지출 가능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지원교육(자체 및 외부교육 가능)

교 육	교육대상	실시횟수	교육내용
상근인력 교육	시설장, 팀장, 담임	연 1회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보조인력 교육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연 1회 (자체 교육 실시)	자원봉사자 및 강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자원봉사교육, 담당 프로 그램 지도 교육,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 타 지역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자들과의 정보공유, 상호방문 등 교류활동 지원

○ 근무환경

- 쾌적한 환경 및 복리후생 지원(제수당, 건강검진 등) 등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
- 계약시 업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준수하도록 함

〈근로계약 예시〉

- 주말 운영하는 주(주6일): (일일 7시간 × 5일) + 주말 5시간 = 주 40시간
- 주말 미 운영 주(주5일): 일일 8시간 × 5일 =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종사자 휴가 부여
 -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시간(주 40시간), 휴가, 휴게시간(4시간당 30분)을 준수하여야 함

□ 강사인력 확보 및 관리

- 체험역량강화활동은 해당분야 우수 전문 강사 선발 운영할 수 있음
- 학습지원활동 강사는 해당 교과 전공자 또는 지도 경력 있는 자로 채용 가능

구 분	인력확보방안
체험역량강화활동	- 각 분야 전문기능 수행가능자 인력풀 구성 - 지역사회 문화 예술인, 체육인 등 전문 인력 활용
학습지원활동	- 해당 교과 전공자(대졸, 대학원생 등) 또는 해당 교과목 지도 경력이 있는 자로 지역 내 인력풀 구성·운영 - 주부·퇴직교사 등 자원 개발 및 연계

- 강사간담회 및 교육 등 강사관리체계 마련하여 시행
 - * 채용시 고용근로계약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회보서 등 강사진 현황 작성 비치

□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발굴 및 연계

- 지역 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생 자원봉사인력을 발굴·활용
 - 자원봉사 인력에 대해서는 교통비 및 식비 명목으로 일비 수준(일일 금 20,000원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단, 일반운영비에서만 지급 가능)
- 지역 내 기업·공공기관·사회단체·군부대·경찰 등과 협력하여 자원봉사 인력을 발굴·활용
-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관리·운영계획 수립
 - 활동 기록관리, 정기적인 평가 등
- 자원봉사 영역별 인력풀 구성 등 지속적 사후관리계획 마련
 - * 학습, 귀가지도, 급식지도, 상담지원, 건강지원, 특강분야 등
 - * 자원 봉사자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필요시 프로그램에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는 구입 가능(자산취득성 불가)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 배치 가능

□ 종사자 및 강사 등에 대하여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필수 확인

○ 신규 종사자 및 강사 등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는 필수이며, 기존 운영인력 및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연 최소 1회 이상 실시

운영법인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청소년수련시설	О	О
청소년상담복지센터	О	0
사회복지관	О	О
학교	0	О
도서관	0	О

- * 유의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비적용 시설·기관은 성범죄 범죄경력 조회 불가 하나.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자격취득 시 및 매년 1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의 결과를 활용하여 확인
- 동일인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매년 1회 조회 필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8.1.1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봉사자는 노무(임금을 받으려고 육체적 노력을 들여서 하는 일)의 제공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불가

◇ 성범죄 경력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 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초·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청소년 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등
 - * 이외 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전문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검 대상기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제56조제1항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 * 이외 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전문 참조
- ⑥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참고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검 대상기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취업제한 대상기관)

-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 「청소년 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 * 이외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전문 참조
-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 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죄회 절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절차) 참고

3-5 지역연계 및 홍보관리

□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연간 지원협의회 운영계획 수립·시행(주말형 제외)
 - (주요기능) 방과후아카데미의 주요 사안의 심의·결정, 지역연계 및 협력의 지원, 자문 및 사업홍보
 - ※ 지원협의회 운영 규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규정 등 자문·심의·결정
 - (구성방법)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직·간접적 지원과 조언 등을 할 수 있는 지역 관계자 10명 내외
 - * (필수위원)운영기관장, 지자체 공무원, 청소년상담분야 전문가
 - * (선택위원)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 보건소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돌봄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 지원협의회가 지역사회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 실무자 중심의 실무추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지원협의회(실무추진위원회)는 정기적인(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다양한 네트워크 발굴 노력
 - * 비대면 회의 실적 인정(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회의에 해당, 단순 서면회의는 불인정)
 - * 청소년 참여 심의(지역사회추천)의 경우 서면으로 운영 가능
-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보고서(3월 이내) 및 지원협의회 운영결과보고서(12월)를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 신규기관의 경우 참여청소년 모집단계에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야 함(지역사회 추천 전형 청소년 선발과 관련)

□ 지역자원 연계 및 관리

- 지역 내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 등과 방과후아카데미를 연계할 수 있는 분야 파악
 - 지자체(방과후 아카데미)별로 연초 지역 유관기관·자원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의무 실시
- 지역연계 자원은 지역의 청소년활동 참여활성화를 중점으로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 들의 지역참여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됨
- 지역의 연계자원 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체계적 관리

□ 홍보관리

- 지역사회의 지지 확보, 참여대상자 발굴 및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계획 수립·운영
 - 지자체(방과후 아카데미)별로 연초 모집률 제고를 위한 지역맞춤형 발굴 및 홍보계획 의무 수립
- 지역 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방과후아카데미 홍보
 - 운영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시정홍보지, 지역신문 등 활용
- 홍보자료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
 - 청소년들의 지역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활동내용 중심으로 작성
- 홍보물 제작 시 기관표기 원칙
 - ◈ 주최: 여성가족부, 시·도
 - ◈ 주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수련관) 예시) 서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구청소년수련관)
 - ◈ 복권위원회 CI 또는 브랜드마크 반드시 사용
 - ◈ 리플렛 등 공통 홍보물(청소년활동진흥원 제작)의 경우 일반운영비 활용 가능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판 설치 및 교체시 유의사항
 -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판 설치 의무(기관 표기 원칙 준수)
 - 제작 예산은 일반운영비 내에서 활용

3-6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지원

□ 긴급돌봄 수요조사

○ 감염병 등 재난 상황발생시 참여 청소년·학부모의 긴급돌봄(보호, 생활지도), 급식제공, 온라인 학습지원 등의 지원 여부에 대한 유·무선(전화·문자, 웹 발신) 수요조사 실시

□ 긴급돌봄 운영시간

- 기존 방과후 ~ 21:00(운영시수 4시간) →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 * 참여 청소년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경우 09:00~21:00(운영시수 10시간)까지 연장하여 긴급돌봄을 지원할 수 있음

□ 긴급돌봄 운영프로그램

- (운영기관 내 프로그램) 운영기관 내 제한적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수요에 따라 운영 시수 등 조절 가능
 - 정상운영과 동일하게 체험활동, 교과학습지도 등 지원(강사비 지급 가능)
-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 비대면 활동에 따른 쌍방향 프로그램 지원, 원격수업지원 및 생활지도 등
 - 지원프로그램 : 화상회의 앱 이용하여 체험활동, 교과학습지도 등(강사비 지급 가능)
 - 급식지원 : 식사 여부 확인, 도시락 배달(간편식 제공 포함) 등
 - 생활지도 : 건강상태 확인, 온라인 학습 등 숙제 지도, 개인 면담 실시
 - 원격수업 지원 관리 :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원격수업 참여 여부 확인

□ 긴급돌봄 급식제공

- (운영기관 내 긴급돌봄 청소년) 중식 및 석식 제공 가능(2식)
- (가정돌봄 청소년) 도시락배달 및 인근식당 지정 등을 통한 급식 제공(1식)

□ 인력관리

- 실무자 근무형태는 격일 교대 근무 가능, 긴급돌봄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국비지원예산에서 추가부담 가능
 - ※ 1개소당 방과후아카데미 연간운영비(기본형 40명 기준) 181백만원 중 인건비 46~48% 차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또는 운영법인(단체)에서 별도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참가 청소년관리

- (지원대상)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청소년을 우선지원대상으로 하고,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청소년도 지원 가능
 - * 긴급돌봄의 경우 운영기관의 교급(초등 / 중등)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 긴급돌봄을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학부모)의 공결확인서를 첨부하여 공결처리
- (생활지도) 유·무선(전화·문자, 웹 발신)을 통한 참여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원격교육 숙제 지도, 청소년 개인 면담 실시 등
- (일시적 참여자 관리) 일시적으로 긴급돌봄 참여를 희망 청소년의 경우 참여 신청서 (증빙서류 제외) 및 업무지원서비스(전자출결시스템) 등록 후에 긴급돌봄 참여 가능
 - * 프로그램 지원, 급식지원 등 기존 참여 청소년과 동일한 긴급돌봄 지원
 - * 긴급돌봄 종료시 업무지원서비스, 전자출결시스템 이수 처리
- (출석관리) 긴급돌봄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전자출결시스템 사용하여 청소년의 출석 여부를 보호자(학부모)에게 전달

□ 운영기관 방역조치

- 감염병 등 전국적인 상황발생시 관련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
 - * 지역적인 특수 상황발생시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의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3-7 예산 편성 및 집행

□ 예산편성

○ 예산규모: 31,104백만원

- 1개소당 방과후아카데미 연간운영비(국비 및 지방비 포함)

(단위: 천원)

구 분	1개반(30명)	2개반(40명)	3개반(60명)	비고
기본형	121,078	181,207	255,312	
농산어촌형	124,600	186,343	262,094	
장애형	_	153,379	214,996	1개반 정원 : 10명
다문화형	_	166,139		1개반 정원 : 15명
탄력운영형	74,328	_	-	1개반 정원 : 15명
주말형	49,240	_	_	1개반 정원 : 30명

[※] 통학버스 운영비 미포함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단,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

□ 예산 편성기준 및 집행원칙

○ 예산구성

- 인건비 등 : 운영전담인력 급여 및 퇴직적립금

- 사업비:급·간식비, 프로그램비, 일반운영비

○ 예산편성기준

국고보조금	항 목	세 부 내 용
인건비	인건비 등	운영전담인력 급여 및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기관부담액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급·간식비	o 실출석인원 또는 전월 평균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지출 * 급식비는 정부지원단가(5,000원) 이상으로 예산범위 내 자율편성 - 예산범위 초과 시 추가되는 예산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가능
		* 식당 보유 시 식자재비 및 조리사 인건비를 급식비에서 지출 가능
사업비	프로그램비	o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강사비, 캠프비, 주말체험 활동비 등)
	사업운영비	o 일반운영비(보험료 등), 귀가차량운영비, 보험 및 직무역량 교육 등 * 귀가차량운영비 : 지입차량, 자체차량 보유 시 운전자 채용 및 유류비 사용 가능 (유류비의 경우 차량운행일지 내 km만큼만 주유 가능)

- * 종사자의 장기간(3개월 이상) 미채용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잔여 인건비를 활용하여 보조인력 채용 가능
- * 장애형, 탄력운영형의 경우 인건비 외 예산에서 보조인력 채용 가능(연간 8,000천원)
- * 주말형의 경우 연간 인건비 12,684천원 내에서 직원 또는 시간제 인력 배치 가능
- * 종사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에서 재료비 편성 가능(단, 자산취득성 물품 제외)
- * 긴급돌봄지원에 한하여 자산취득성 물품은 연간 500,000원 이내 사용 가능
- * 일반운영비 내 출장비, 실무자 참가비(야외활동), 통신비, 부모(보호자)간담회, 지원협의회 운영, 비대면 프로그램 사용료 등 운영기관에 맞게 편성
- * 귀가차량운영비 추가 및 원거리 강사의 교통비 지원(1회 20,000원 이내) 가능(운영비는 지자체 및 운영기관 에서 부담)

○ 집행원칙

-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사업예산 편성 지출
- 외부위탁 또는 계약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경쟁입찰과 최저가 낙찰방식을 원칙으로 사업자 선정(다수 비교견적 등)
- 예산과목 편성 항목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 단, 사업비 항목 내에서 당초 사업 계획과 달라 예산 변경 필요시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변경집행 가능 (단, 운영유형별 예산비율 유지)

※ 운영유형별 예산비율(인건비 외 사업비로 편성)

		비율										
구분	기본			농산어촌		장애형		다문화형	탄력운영형	주말형		
	1개반	2개반	3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인건비	47%	48%	47%	45%	47%	45%	56%	54%	52%	42%	29%	

- * 지자체 50%(서울 70%) 매칭 예산외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 및 정규직 전환 비용은 비율 내 미포함
 - 사업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항목 불용(예정) 예산은 사업비로 전용하여 적극 집행하고, 사업비 예산은 인건비로 전용 불가
 - 사업운영에 필요한 고정자산 및 인건비 예산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제수당 등의 인건비는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 ※ 근무시간 외 근무는 가급적 지양하되, 주말체험활동 등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외 근무 발생시 해당 지자체 또는 운영법인(단체)에서 별도 예산편성하여 근무시간 외 수당 지급
 - 지자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해야 함

○ 급식비 집행기준

- 외부 위탁급식의 경우 실출석 또는 월평균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식비 집행 가능
 - ① (사후 지출) 사전 계약(약정)을 통해 실출석 인원 또는 평균 모집 인원에 대하여 익월초 급식비 지급
 - ② (선결재 및 사후 정산) 사전 계약(약정)을 통해 전월 평균 출석 인원으로 급식비를 선지급하고, 익월초 전월의 실출석 인원이나 평균 모집 인원에 대하여 급식비 정산

□ 회계관리

- 별도 통장 및 회계 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e나라도움 전용카드' 사용하고, 예산집행시 지체없이 'e-나라도움' 입력조치
-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외 캠프비, 입학비, 가입비 등의 수익자 부담 책정 절대 불가
 - 수익자 부담금(교재비, 재료비)의 경우 반드시 별도의 기관 통장을 통하여 관리 하며, 접수지출내역에 대해 반드시 문서화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함

□ 종사자 처우개선

- 지자체별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 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 편성 권고(보조금 매칭 예산 외 별도)
 -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비 지워액 외에 필요한 예산은 수련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 확대 권고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월)'에 따라 단계별 정규직 전환 추진
 - ※ 1단계(지자체 직영, '18년도), 2단계(지자체 출연·출자 기관 '19년도) 등
 - ※ 위탁기관 종사자의 경우 동일 처우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권고

개인정보 보호 3-8

□ 목적

○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 개인정보 항목별 처리기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가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동의를 전제로 함

〈 정보수집의 범위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복지지원 자격 정보 등(대상청소년 및 부모)

- 보유기간을 확인하여 원본서류 보관(회계 관련서류 5년 보관) 및 폐기
- 방과후아카데미 대상자 선정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 제공 및 수집목적 외 이용 불가
 - * 상대방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수기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
 - 컴퓨터에 저장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암호화 처리
- 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관리·감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최종 책임자는 '운영 기관의 장'임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3-9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평가

□ 평가 목적

- 공공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내실화 및 공공성 확립
- 체계적인 사업평가 실시를 통한 자가 점검 실시 및 경영 효율성 제고

□ 평가 개요

- 대상:'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전국 운영기관 중 도 지역 소재 기본형, 탄력운영형
- 사업수행기관: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일정 : '24년 1 ~ 9월
 - 1~2월 : 사업 종합평가 평가지표 자문회의
 - 3월 : 사업 종합평가 사업설명회 및 교육
 - 3~4월 : 자체 평가서 제출
 - 5~6월 : 현장평가
 - 7~8월 : 운영결과 취합 및 결과보고
 - 9월 : 결과보고
- 평가주기 : 3년마다 1회 실시
- 평가영역: 3개영역(사업관리역량, 사업운영성과, 행정참여도)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학계·교육계·현장관리자 관련 전문가 20명 내외
 - ※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시행예정

□ 평가 결과 및 활용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정
- 평가등급: 5개 등급
- 평가결과 활용(안): 평가대상 기관은 평가의견서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및 이행. 추후 평가 시 개선이행 정도 평가 예정

방과후아카데미 컨설팅 3-10

□ 컨설팅 목적

○ 신규 운영기관의 사업 안정화 및 운영기관 발전 방안 모색

□ 컨설팅 개요

- 운영대상
 - (의무) 신규기관 및 전년도 종합평가 결과 미흡기관
 - (희망) 운영기관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
- 수행기관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운영일정 : 2월~10월
- 컨설팅 운영
 - 신규 및 미흡기관(운영, 모집)의 안정적 사업 정착을 위한 1:1 맞춤컨설팅 운영
 - 신규 우영기관 및 '23년 사업평가 결과 미흡 등급(모집 미흡 기관 포함) 이하 기관 의무 컨설팅 지원
 - 기존 운영기관 참여 신청을 통한 컨설팅 지원
 -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이 평가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우영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동료(멘티 - 멘토) 컨설팅 운영

3-11 방과후아카데미 현장점검

□ 목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영 현황과 성과를 파악·관리 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 사업 및 예산 집행이 지침에 부합하여 수행되고 있는 지 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표준화 및 질적 제고 도모

□ 현장점검 체계

구 분	세 부 내 용
점검 주체	이 지자체 현장점검: 지방자치단체이 합동점검: 여성가족부, 운영지원단 및 지방자치단체이 불시점검: 여성가족부, 운영지원단
점검대상	o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실시기간	○ 지자체 현장점검 : 4~6월 예정 ○ 합동·불시점검 : 8~10월 예정
점검 횟수	o 지자체 현장점검:각 기관별 연 1회 이상 o 합동·불시점검:필요시
점검 결과	 ○ (시·군·구) 현장점검 완료 후, 현장점검표 및 현장 점검 보고서를 관할시·도에 제출 ○ (시·도)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현장 점검표 및 현장점검 종합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주요 점검 내용	ㅇ 조직 및 운영, 프로그램 및 성과관리, 안전관리, 회계처리, 기타 등

- ※ 추후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예정
 -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기획 및 관리
 -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표 제공, 현장점검 참여
 - 현장점검 점검표 및 시·도별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최종 확인
 - 합동·불시 점검 실시
 - ※ 지자체 자체 점검 실시 후, 합동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 시·도 담당자 : 현장점검 진행 총괄
 - 관할 내 운영기관 점검 총괄 관리
 - ※ 시·군·구 직영센터는 시·도 담당자가 현장 점검 진행
 -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현장 점검표 및 현장점검 종합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 여성가족부 현장 모니터링 시, 담당 공무원 동행 협조
- 시·군·구 담당자: 자체 현장점검 실시
 - 관할 내 운영기관 자체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완료 후, 현장점검표 및 현장 점검 보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
 - 여성가족부 현장 모니터링 시, 담당 공무원 동행 협조
- 운영지원단: 현장점검 기획 및 관리 협조
 -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 취합·분석 등 현장점검 협조
 -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지자체·여성가족부와 합동점검 실시

〈운영 중단 사유〉

- 청소년모집, 출결관리, 급식·귀가지도, 회계관리,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사항 최하점
- 운영과정에서 안전사고(급식, 화재, 건물 등) 발생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향후 3년간 운영기관 선정 제외 가능)

3-12 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 (사업자 지정) 지역현장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법인)의 사업 참여확대를 위해 설치 요건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사업자 지정***
 -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재부)
 - ※ 수탁자 자격기준: '청소년육성·보호·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지자체별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사업자 선정
 - ♦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1. 청소년 활동관련 업무 공무원, 2. 청소년활동에 관한 학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3. 청소년 상담복지 전문가, 4.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사업운영의 공백 방지를 위해 사업자 지정은 최소 6개월 전부터 추진방식을 적용
 - (사업운영의 중단 및 종료) 운영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전년도 상반기 중에 지자체 및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야 하며, 당해연도에 운영 중단할 경우 지자체는 사전에 대체할 운영기관(장소)을 확보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함
 - (사업포기 기관에 대한 조치) 기존 운영기관이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부정수급금 환수 등 조치신규 사업자 지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기존 참여자 및 지역내 돌봄수요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3-13 방과후아카데미 안전관리

-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참여 시 인증수련활동 확인 후 참여 권장
-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기관장)
 - 역할:비상약품, 구호설비 구비 운영, 상시 안전관리체계 점검, 응급 및 재난상황 대응총괄, 응급환자 이송방안 마련,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병원) 등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 * 수련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외 방과후 아카데미별 안전관리책임자 추가 지정
 - * 약사법에 따라 비상약품은 의약외품만 가능하며, 보건관리자(의사, 간호사)가 있는 경우에만 의약품 비치 가능. 참여 청소년에게 의약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종사자와 청소년이 동행하여 약국에서 구매하여 지급 가능
- 참여 청소년 대상 반기(학기초 필수) 1회 1시간 이상 안전대비 교육(심폐소생술, 재난대응요령 등) 및 비상대피 훈련 실시
- 주말형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기간(연간, 반기, 분기)별 안전대비 교육 및 비상대피 훈련 실시
- 유사시 비상연락체계 구축(방과후 아카데미-시·군·구-시·도 여성가족부)
- 지진·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재난 발생(예보)시 시·군·구(필요시 시·도)의 결정에 따라 일시휴업 가능
 - ※ 일시 휴업시 시·도 및 운영지원단에 즉시 보고
 - ※ 자연재해 및 재난발생으로 인한 휴업시 휴업일은 운영일수에 포함(지자체의 휴업 승인 공문 필수)
 - ※ 운영기관 자체 리모델링의 경우 일시휴업 불가(대체 공간 확보 필요)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24.1.19.(금)까지
 - 작성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 * 운영기관에서는 기관별 세부사업계획서를 '24.1.12.(금)까지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
- 여성가족부에서는 분기별 국고보조금 교부:1월, 4월, 7월, 10월
 -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교부를 위해 지방비예산 편성 및 시스템 입력 완료 처리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사업결과 및 사업정산보고서 제출일: '24.2.15.(목)까지
 - 작성서식: 정산보고서(서식 3), 결과보고서(서식 4)
 - 이자발생액도 반드시 보고·반납 조치

□ 기타 사항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교육 등에 참여
- 운영기관별 전담인력의 업무 숙지를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안내 및 업무지원서비스(내부 업무망) 사용방법 교육 등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이 종사자 정규직 전환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계획 및 결과보고 등)를 지자체 현장점검 시에 제출 필요
- 업무지원서비스를 통한 월별 현황조사(참여 청소년, 참여 실무자, 대기자 등) 제출
 - 분기별 현황조사 결과 3개월 이상 모집률 80% 미만시,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행정지도 실시

붙임 1 '24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출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예시)

- * 인건비는 운영 유형별 인건비-사업비 예산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및 기관의 임금 체계에 따라 편성 가능하나, 이에 따른 총임금(기본급·제수당 등)은 아래 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함
- * 사업운영비는 운영 유형별 인건비-사업비 예산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단가 조정 가능
-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운영시작 전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책상, 걸상 등)의 상태를 파악하여 교체 하도록 노력(고정자산 예산 확보)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 복리후생비, 각종 제수당 등의 인건비는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권장

(단위: 천원)

							(단귀 · 선권)				
	항 목		탄력운영형 (15명)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주말형 (30명)				
	그 어	팀장	27,552 (2,296천원× 12개월×1명)	25,008 (2,084천원× 12개월×1명)	27,552 (2,296천원× 12개월×1명)	30,528 (2,544천원× 12개월×1명)					
	급여 담임		-	24,744 (2,062천원× 12개월×1명)	49,488 (2,062천원× 12개월×2명)	74,232 (2,062천원× 12개월×3명)	12.694				
인건비	퇴직직	벆립금	* 편성기준 : 기관 * 건강보험, 국민역 에서 부담 * 육아휴직 대체지 (해당사유에 한	12,684 (1,057천원× 12개월)							
	정규직 비·		* 정부 지원단가 : 1인당 年 2,829천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관계부처 합동)"의 정규직 전환 추진대상 1,2단계 기관에 교부								
	급스 (간식		* 지자체 또는 기관의 식비 단가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지원 단가(5,000원) 이상으로 자율 책정 가 - 예산범위 초과 시 추가되는 예산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가능 * 식당 보유 시 식자재비 및 조리사 인건비 지출 가능								
사업	프로그	2램비	#비 * 예산 범위 내 과정별 운영시수 및 단가 자율편성								
오영비											
	차량원	2영비	* 지역 시세 고려하	i여 단가 조정 가능	하며 지입차량, 자체	차량 보유시 운전자	인건비 지급 가능				
	보험 * 10,000원(최소 기준임)×청소년 수										
	직무역량비 * 200,000원×운영전담 인력 수										

▮ 운영유형별 예산비율 ▮

	비율										
구분	-	기본지원	4	<u>L</u>	동 산어촌	-	장0	H형	다문화형	탄력운영형	주말형
	1개반	2개반	3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인건비	47%	48%	47%	45%	47%	45%	56%	54%	52%	42%	29%

붙임 2 '24년 방과후아카데미 유형별 연간 운영비 내역

(단위 : 원)

	유 형 별		기본단가	어린이 통학버스 수요제출 기관
		30명	121,078,000	8,040,000
	기본형	40명	181,207,000	8,040,000
		60명	255,312,000	8,040,000
		30명	124,600,000	8,040,000
일반형	농산어촌형	40명	186,343,000	8,040,000
208		60명	262,094,000	8,040,000
	장애형	20명	153,379,000	8,040,000
	ପ୍ୟାଷ୍ଟ	30명	214,996,000	8,040,000
	다문화	30명	166,139,000	8,040,000
	탄력운영형	15명	74,328,000	8,040,000
	주말형	30명	49,240,000	

서식 1

'24년 방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2024կ	크도 청소	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원기교	시 5	도 명			부 /	너 명		
신청기관	담당	자명			전회	·번호		
교부신청 총금액	일금		천원(₩)	
	구	분	합 계	국	Ы		지 빙	
	-					시		시·군·구
	합	계	0	C)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소년의 방과 후 삶	의 질 향성	상과 지역	사회 공적	서비스	확대
사업개요)24. 1월 ~ 12월 소년방과후아카데미	l 유영을 :	위하 운영	[비 등		
				LOE				
 보조금의 예	산 및 관	리에 관현	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	의거 「2 0	23년도	청소년방	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을 -	신청합니다	∤ .						
			2024 년 1	월	일			
			○○ 시·도 □		(فا) ر			
					- (Ľ/			
여성가 <mark>족</mark> 부 장관	· 귀하							

서식 2 '24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계획서

- ◎ 2023년도 주요 추진성과(1페이지 이내 핵심적인 내용만 작성)
- ◎ 2023년도 운영결과 분석 및 2024년도 개선계획 수립
 - * '23년도 평가의견서 또는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4년도에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개요중심으로 작성
 - 1. 2023년 자체평가 결과(1페이지 이내)
 - 2. 전년도 (자체)평가결과를 반영한 주요개선 계획('24년 자체평가 계획 별도로 수립된 경우 자체평가 계획서로 제출)
 - 1) 개선과제(과제별로 작성)
 - 2) 개선과제별 개선계획 * 단기, 중기로 구분하여 작성
 - 3) 개선과제 점검 및 이행관리 방안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나. 추진배경 및 경과

2. 사업내용

* 지자체 관할 운영기관별 특색있는 사업내용 등 기재

3. 소요예산 총괄

שוקורשס	예 산 액								
운영기관명	계	국비	시·도	시·군·구					

4. 사업평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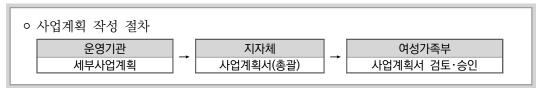
* 지자체별 시행예정인 현장점검, 컨설팅 등 사업평가 계획 등 기재

5. 사업홍보 계획

- * 지자체 통합 홍보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 * 사업홍보물 제작시 '여성가족부, 지자체 운영' 반드시 기재

6. 기타 사업운영 관련 추가 계획 수립 사항 등

* 지자체별 자체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 1. '23년 ○○시·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 2. 사업개요
 - □ 목적:
 - □ 사업기간: '23.1월 ~ 12월
 - □ 사업내용
 - 대상인원:
 - 사업내용:
 - 예 산 액: 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시설: ○○시설(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 집 ○, 기타 ○)

OGITITA	대상/인원					예산		비고
운영기관명	계	초	중	초+중	계	국고	지방비	

3. 정산총괄표

OGJIJIB	예 산 액			집 행 액			불용액			이자 발생액		
운영기관명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4. 사업비 집행내역

- 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원(국비 ○○원, 지방비 ○○원)
- 나. 보조금 불용액 내역 :○○원(국비 ○○원, 지방비 ○○원)
- 다. 보조금 예금 결산이자 내역:○○원(국비 ○○원, 지방비 ○○원)
- 라.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전용내역:

1	1	Y	언	시	저
			_	_	

- 총평:
- 운영현황

04	l l	대상인원	1		운영유형						
운영 기관명	계	초	_		일반형						
120	/1	소	중	기본	농산어촌	장애	다문화	탄력운영	주말형		

2. 사업추진성과 및 자체평가

○ 우수사례(운영기관별 대표적인 사례 기재)

운영기관명	우수사례

○ 미흡한 점

운영기관명	미흡한 점

○ 문제점 및 애로사항

운영기관명	문제점 및 애로사항

○ 발전방안

운영기관명	발 전 방 안

서식 5 '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작성 서식 현황

번호	항 목	서식	시스템	비고
1	월별 현황 보고(팀장, 담임)	_	필수	업무지원서비스 업무보고 사용
2	월별 급식 계획	필수	_	
3	차량운행일지	필수	_	
4	일일교육환경점검일지	필수	_	기관 내 동일 내용으로 작성중인 경우 기관 내 양식 대체 가능
5	대기자 관리대장	-	필수	업무지원서비스 상 대기자 청소년 인적정보 등록
6	중도포기사유서	필수	_	
7	인사기록카드	필수	필수	업무지원서비스 상 실무자 인적정보 등록
8	팀장/담임 근로계약서	필수	_	
9	강사 채용계약서	필수	필수	업무지원서비스엔 전문분야, 연락처 등 등록(원본 기관 보유), 모집에 활용
10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필수	_	
11	대상 청소년추천서	필수	_	
12	청소년지원신청서	필수	_	
13	보호자동의서	필수	_	
14	청소년관리기록부	_	필수	업무지원서비스 상 청소년 인적정보 등록
15	공결확인서	필수	_	
1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수	_	
17	주간시간표	필수	필수	업무지원서비스 입력
18	프로그램운영계획서	필수	_	
19	운영지도안(강의/활동)	필수	_	
20	강사근무일지	필수		
21	안전사고 상황보고서	필수	_	

※ 유의사항

- ㅇ 필수서식은 기본내용을 유지하되, 추가로 작성할 내용이 발생시 변경 사용 가능
- ㅇ 선택서식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사용하고, 기관별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자체 사용 가능
- ㅇ 작성서식은 운영기관별로 업무지원서비스에서 다운받아 사용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

□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구분	번호	번호 항 목 별	점검사항		
十正	닌오) 숙 글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1	운영대표자의 책임 아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결과 기록유지) 여부			
	2	입교 시 안전사고 예방방법 및 교육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안전관리 체계	3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여부			
및 교육	4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 구조구난 체제 구축과 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한 직원 교육의 실시 여부			
	5	시설 이용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의 대피 경로 등을 각 실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 토목부문

구분	번호	항 목 별		점검사항		
下正	건오	8 국 교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진입로	진입로 1 비상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접근이 용이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1	옹벽, 석축 및 담장 등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옹벽, 석축 및 담장	2	옹벽 및 담장 기초부분에 침하된 부분이 있는가?				
	3	옹벽 부분에 배부름 현상이 있는가?				
사면	1	사면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사진 	2	사면의 토사유출 우려는 없는가?				
	1	배수로 덮개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배수로	2	배수로의 덮개에는 발, 구두 굽(하이힐 등) 등이 빠질 수 있는 틈새가 있는가?				

□ 건축부문

¬н	ш=	윈디버	점검사항		
구분	번호	항 목 별		부적합	지적사항
	1	모든 건축물의 내·외벽에 균열은 없는가?			
	2	옥상 부분에 돌출된 파라펫(parapet) 및 난간의 설치 상태는 견고한가?			
구조	3	난간의 간격은 적정한가?			
	4	불법으로 증·개축한 시설은 아닌가?			
	5	처마 및 모서리 부분의 균열이나 낙하위험은 없는가?			
	6	천정, 벽체 및 바닥의 누수는 없는가?			
주출입구	1	주출입구의 중앙 및 양측에 손가락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171 01	1	각종 안내표시판이 적절하게 게시되어 있는가?			
현관 및 로비	2	안내 데스크 모서리 등은 충돌 시 부상을 예방· 완화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1	복도는 통행, 피난 및 방향전환 등을 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2	바닥은 턱, 요철 등으로 인한 높낮이 차이 때문에 통행 중 쉽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가?			
복도	3	바닥 마감재는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4	피난유도등, 피난유도표지 등은 사람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5	복도에 통행 및 피난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의자, 자판기, 공중전화 등) 및 돌출물(못, 철물)이 있지 않은가?			
אורו	1	계단에 통행 및 피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있지 않은가?			
계단 	2	각 디딤판의 끝부분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논슬립(Non-slip)이 설치되어 있는가?			
さしてト人」	1	바닥은 넘어짐이나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화장실	2	화장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는 보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78	₩₹	항 목 별	점검사항		
구분	번호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1	비상구급약은 마련되어 있는가?			
양호실	2	상주인원 부재 시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망은 게시되어 있는가?			
엘리베이터 또는	1	정기적인 보수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컬레이터	2	적재중량, 비상시 연락이 가능한 벨 등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옥외구조물	1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상태나 안전망의 설치상태 등은 양호한가?			
	2	안전수칙 및 위험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			
	1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 아래 전기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기계, 전기 및 가스	2	보일러를 포함한 냉·난방기기는 관련법규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는가?			
	3	가스시설의 누설 체크는 관련법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1	소화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가?			
	2	소화기의 충전량은 적정한가?			
	3	소화전 수압 호스의 연결 상태는 양호한가?			
	4	스프링쿨러 배관 및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5	유도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가?			
소방	7	사용하고 있는 전원이 차단될 경우 비상전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8	완강기 및 피난사다리의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9	위험물 저장시설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10	위험물 저장시설의 차광 및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11	화기시설과 가연성 물질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 하고 있는가?			

П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각 시·도는 지역 여건에 맞도록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아래 지침 내용 참고 가능

개 요

목 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 진흥
- 운영목표
 - 청소년활동자원 역량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
 - 청소년활동 기반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활성화

1-2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 협력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그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청소년기본법」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수런거리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수련시설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 ④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할 때 필요하면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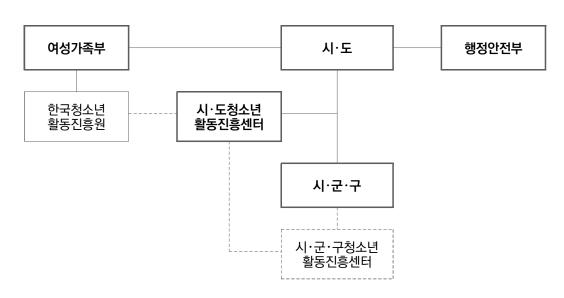
□ 1996~1999년 : 16개 시·도에 정소년자원봉사센터 단계적 설치
○ 1995년 5월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 문화체육부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지원계획』('96.2.16)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 마련('96.6.2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개정)
□ 2004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시·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설치 규정)
□ 2006년 :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로 개편
□ 2007년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 변경(7.27,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 2014년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 2022년 :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운영방식 변경

2-1 기본방향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도 단위 청소년활동정책 전달 중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청소년활동 활성화
- 지역 내 청소년 활동과 학교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청소년 활동의 지역적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사업 운영

2-2 추진 체계

가. 추진 체계도



나. 추진 주체별 기능 및 역할

〈 중앙 단위 조직 및 기능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 정책과 관련된 법, 제도의 개선 및 계획 수립·집행
- 청소년활동 관련 부처· 기관과의 협의 및 연계를 위한 지원 총괄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 법·제도의 개선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수립

시·도 자치단체

- 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집행 총괄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관련 조례 또는 지침의 제정 관리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 형태 결정 및 운영 지원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력 및 운영 공간 확보에 대한 지원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계획 승인, 사업·예산 집행 및 정산 관리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자체 규정 제·개정 승인 및 관리·감독
- 지역 내 학교 등 유관 기관에 대한 시·도 센터의 연계 업무 협조·지원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한 종합관리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조 업무 수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관련 정책 개발 지원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정책 사업에 대한 컨설팅, 직무 교육 등 역량개발 지원
- 청소년활동 신고·인증 지원 총괄
- 청소년활동 정보 종합 제공
- 기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간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 조직 편성 및 예산 운영 관리
- 지역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수립 지원
- 지역 청소년기관의 홍보지원 및 정보제공, 직무 교육, 컨설팅 수행
- 지역 내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간 상호협력 사업 연계 및 지원
- •지역 교육정책과의 연계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정보제공/ 교과과정 반영 노력
- 활동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 관련(사업설명회, 컨설팅, 결과후속조치 등) 지원
- 시·군·구 단위 청소년활동 지원

행정안전부

〈시·군·구 단위 조직 및 기능〉

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지역 내 청소년활동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총괄
- 시·도 및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지역 내 활동지원 사업 협력
- 지역 내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의 제공, 정책사업의 홍보 등 업무 지원
- 지역 교육정책과의 연계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정보제공 / 교과과정 반영 노력

나)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시·도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중심의 운영계획 수립
- 시·도 센터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 내의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
- 지역 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학교연계(우수 프로그램 정보제공 등)
 -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 내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수련관, 문화의집)을 시·군·구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와 협의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음

3-1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공공성 확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내 청소년 활동 중추 기관으로서,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시설,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국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센터가 동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관리감독 필요

구분	세부 내용
공통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에서 규정한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명칭을 사용하여 독립된 기관 형태로 운영 □ 시·도는 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강화 ─시·도는 센터의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수행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지원 * 지역의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에 센터의 기능과 역할 안내,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지역의 시설 및 단체 등의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등(조사포함)에 시설 등이 협조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관련 문서 발송 □ 적정 센터 인력 기준 10명 이상 필수확보(세종시는 5명 이상) 및 청소년 활동업무를 전담 ─타 기관 겸직, 법인 업무 등 타 업무 중복 수행할 수 없음 □ 지자체 고유사업 또는 제안으로 별도 위탁(수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사업비 별도 편성 전환사업 보전금, 매칭되는 지방비는 타 기능(부서)의 예산으로 전용(활용) 불가 ■ 센터는 지역의 청소년활동 지원기관으로서, 지자체 지정위탁(공모포함)사업을 제외한 지역 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등과 경쟁하는 (공모)사업 등에 신청 지양
통합법인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관을 통합 법인이 위탁받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 및 센터장 직위 확보 -센터장 중심의 독립운영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센터장 전결 위임권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유형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통합 법인 이사장 직속기관으로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 단체²⁾에 위탁·운영 가능

운영형태	내 용
직영운영	■ 해당 시·도 조례 등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법인 설립·운영	 ■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 ■ 법인설립 시 지자체 또는 법인단체는 법인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며, 활동진흥센터 인력을 법인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지자체에서 법인설립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팀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음 ■ 통합법인으로 설립시 반드시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해야 함 (활동진흥센터 인력이 법인업무 겸직 수행 금지) ※ 시·도가 관리감독 할 것)
	■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법인을 선정(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위탁운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п⊣正о	• 해당 시·도에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위원은 청소년활동분야의 학계 또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와 청소년활동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 하여 구성)
	■ 위탁계약기간 및 위탁 계약 내용은 시·도별 자체기준으로 설정 가능

[※] 민간위탁의 경우는 해당 위탁법인의 각종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할 것

²⁾ 청소년단체의 정의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단체"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

3-3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기준

□ 입지기준

○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방지가 가능하며,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수월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함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구 분	내 용	비고
규 모	연면적 35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사무실	통합법인의 경우 분리된 사무공간	
교육장	최소 2개 이상(50명 이상 수용 가능)	센터의 주요기능 중 지역의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컨설팅, 설명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장 구비
회의실	최소 1개 이상(20명 이내 수용 가능)	상시적인 회의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회의공간 구비
정보자료실	최소 1개 이상	각종 지역 및 전국단위 자료 등을 비치할 수 있는 자료실 구비

□ 지방자치단체는 추진체계별 역할에 따라 운영 공간 확보를 지원

○ 지자체 소유의 건물(공간)을 센터가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기준

- 피난, 연소방지 시설구비 등 소방안전시설기준 준수
- 상병자를 위한 응급조치용 비상약품, 구호설비·기구 등을 갖출 것
-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을 설치

-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 대책 마련
- 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2년)으로 안전교육실시(심폐소생술 교육 필수)
-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시설 노후, 하절기 태풍 및 수해, 동절기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의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 강구

3-4 센터 명칭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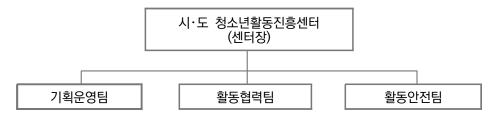
- □ 센터명칭은 OO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고유명칭 사용
 - ※ 단,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명칭 반드시 사용할 것
- □ 외부 공문 발송 시 반드시 'OO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고유 명칭 사용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조직 및 인력 3-5

□ 운영 정원

- 직원은 센터장(상근), 팀장, 팀원으로 구분
- 정규직 10명 이상 확보[센터장(1), 팀장(3), 팀원(6명 이상)]
 - * 세종센터는 정규직 5명 이상 확보
 - * 센터 직원은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 결원 발생 시, 즉시 공개경쟁 채용 등을 통해 충원하여야 하며, 정원에는 수탁사업으로 배치된 인력은 제외
- 시·도의 여건(예산, 청소년 인구, 지자체위탁사업 등)에 따라 센터의 정원 확대 조치
- 지자체 고유사업 또는 별도 위탁하는 사업은 사업비 외에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센터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조치

□ 운영 조직도



※ 지자체 여건에 따라 팀을 조정·확대 운영 할 수 있음.

3-6 예산 편성 및 집행

□ 기본 원칙

- 정부 예산 편성지침에 맞게 사업예산 편성·지출
- 전환사업 보전금, 지방비를 합산한 예산총액 대비 사업비는 23% 이상 편성 권고 ☞ 예산총액에 별도 수탁하는 사업비,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한 인건비는 제외

▶ 예산 편성 시 다음의 사항은 경상비로만 편성 가능함

- ① 종사자 대상 교육비 : 연간 3백만 원 범위 내에서 경상비에서 집행 가능 (1인 30만 원 기준)
- ② 여 비 : 여비는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하며, 경상비에서만 집행 가능}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 ※ 단, 현장지원사업(정책과제 사업 포함)을 위한 출장비는 사업비로 편성 가능
- ③ 워크숍 경비 : 사업 추진(기관운영전략수립) 관련 직원 워크숍은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
- 통합법인은 활동진흥센터와 기타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과의 예산은 반드시 명확히 분리하여 집행
- 법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기관장 포함) 인건비, 운영비 등은 시·도청소년활동 진흥센터의 예산(지방비 포함)으로 집행 금지
 - 센터 인력이 타 기관 겸직, 법인 업무 등 타 업무 중복 수행 금지
- 기관의 사업 추진 목적의 직원워크숍(운영전략관리 사업영역의 중장기전략수립, 사업계획 수립, 자체평가 및 개선관리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

○ 지원조건

- 전환사업 보전금 25%(지방이양 전 국고보조 비율). 지방비 75% 이상
- 별도 위탁(수주)하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지방비 75% 이상 반드시 확보
- 예산편성 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기본급	기본급, 각종 수당
017441	기본급 외 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4대보험 부담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경상비	기관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관리비, 여비, 교육비, 협회 회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비	사업비	사업운영의 효율을 위해 가급적 단위 사업별로 편성

- ※ 인력 증원에 따른 물품 구입 등은 경상비에 포함
- 기본급과 4대 보험 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를 먼저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 등의 경비 계상
- 주요 항목 간(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또는 주요 항목 내에서의 소요 경비 및 예산 변경, 예산과목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용 가능 (단, 사업비의 예산감액조정은 불가, 사업비는 23% 이상 편성)
 - 인건비(기본급 외 수당) 부족 시 해당 시도에서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운영
- 기관의 사업 추진목적의 직원 워크숍(운영전략관리 사업영역의 중장기 전략수립, 사업계획 수림, 자체평가 및 개선관리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가능

주요 추진 방향 및 내용

□ 중점 방향

3-7

- 청소년 활동 전달체계 역할, 지역사회 청소년단체·청소년기관(시설)과 연계·협력 기능 강화
- 시·도에서는 학교연계 협력체계 구축, 모니터링, 지도인력 연수 등 총괄적인 사업은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담당토록 조치(단,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사업에 한함)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직접 사업(행사 등)은 지양
 - * 고유사업보다 수탁사업의 비중이 과할 경우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수탁사업의 경우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국한함 (단, 센터가 사업을 주관하더라도 실제 실행은 지역의 시설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수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업무영역 구분

업무영역	주 요 내 용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지역 내 청소년활동 관련 조직 및 지도자들의 역량증진을 위하여 교육, 컨설팅, 사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업무
청소년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제도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수립된 정책의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 지역 교육정책과의 연계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청소년활동 우수 프로그램 정보제공, 교과과정에 반영 노력 등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지역 내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조사·분석·수집·관리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센터의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청소년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업무

※ 수탁 사업: 지자체, 외부(유관)기관의 수탁사업

- 수탁사업은 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하여야 하며, 수탁 수행 시 인건비, 사업비는 반드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2023년 시도센터 주요업무 내역 ▮

업무영역	주요 업무	주요 업무 개요	사업 예시(참고용)
1. 청소년 활동 현장	1-1. 청소년 지도자 교육훈련	교육훈련 등 현장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 맞춤형 직무교육 및 정책사업 직무교육 • 현장 학습활동 지원 등
연성 역량증진 지원	1-2. 청소년활동 기관운영 지원	현장의 청소년활동 운영에 필요한 정보·프로그램·예산 등을 지원하는 업무	• 현장 기관 컨설팅 운영 • 수련시설 평가 지원(설명회,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등)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1. 정책개발 및 제도화 지원	국가 및 지방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제도화를 지원하는 업무	• 정책방안 개발 및 정책수립지원 •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 활용 등
2.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2-2. 국가 정책 사업 실행 지원	국가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고유 국가 정책사업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자원봉사 활동, 비교과활동, 수련활동인증제·신고제, 포상제 활성화 등 청소년활동 안전 지원 청소년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참정권 등
	2-3. 시·도 정책 사업 실행 지원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시·도청소년정책사업 지원 - 청소년 축제, 국내·외 청소년 교류 등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 (교과과정 반영 노력)
3.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3-1. 청소년 정보 수집 관리 및 제공	지역 내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조사·분석·수집 관리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청소년 정보 수집·관리 체계 구축 •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정보제공
서비스	3-2. 청소년활동 인지도 제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업무	• 청소년활동 홍보 • 청소년활동 인지도 개선
_	4-1.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전문화	센터의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업무	•센터 역량 강화 - 전략기획(중장기 및 연간사업기획 등) •센터 성과관리
4.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4-2.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중앙-시·도-시·군·구의 정책네트워크와 현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	 현장네트워크 구축(교육청, 학교, 청소년유관기관 등) 네트워크 협력사업 운영(프로그램, 예산 등 지원) 청소년지도자 대회, 신년인사회, 사업설명회 등

^{※ 2023}년 센터 사업계획은 위 표를 참고하여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 하에 자유롭게 편성

[※] 국가 정책사업은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계획 및 지침에 따라 추진

3-8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 구성 및 운영 원칙

- 센터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 위주로 구성, 정기회의 개최 등 운영의 활성화
 - * 법인 이사회는 센터 운영위원회로 인정 불가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변경 시 시·도와 협의 및 시·도 승인
- □ 인 원 : 10인 내외

□ 구 성

- 자치단체 청소년 업무 총괄 공무원(팀장급 이상)
- 청소년 시설·단체·기관의 장
- 청소년 유관기관의 장(학교장, 교육장 등)
- 청소년 관련 분야 교수 및 학계 전문가 등
- 지역사회 기업가 및 사회 저명인사
- 지역사회 청소년 전문가 및 지도위원 등
- □ 운영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 역 할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요사업의 계획 및 추진현황 검토 등
- 지역사회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자문, 기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학교, 유관기관, 단체, 언론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가. 인사관리

□ 종사자 채용

○ 자격기준 : 【참고 1】 참조

○ 시기 : 직원의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 채용방법

-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함
 - * 시·도 또는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공고
 - * 단,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운영형태에 따라 시·도 또는 위탁단체의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용이 가능함
- 팀장, 팀원 결원 보충 시 기존 근무자를 우선 고려
 - 팀장을 팀원에서 선발할 경우 '승진'으로 간주함
 - 팀원을 기존의 비정규 직원에서 선발할 경우, 팀원 '신규채용'으로 간주함

○ 인사위원회 구성

- 직원 채용의 객관,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형태에 따라 시·도 또는 위탁 단체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 시·도에 보고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실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상의 의무 조회 대상 기관인 수탁기관은 자신의 근로자 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경력 조회 * 진흥센터 취업자, 사실상 노무 제공자 또는 취업 혹은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 청소년지도사 자격 적정 여부 확인 철저

- □ 직원 정년 : 만 60세
- □ 직원 신분보장
-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음
- 수탁단체 변경 시 가능한 해당 센터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유지 노력필요

나. 호봉획정 및 승급

- □ 호봉의 획정 및 재획정
-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
- 호봉은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경력의 인정]

- ▶ 경력인정의 범위 : 【참고 2】직원 경력산정 기준표에 의함
 - ※ 경력인정의 적용 시기는 해당 지침의 통보일로부터 적용됨. 2018년도 이전에 입사한 직원은 기존 지침의 적용을 받음
- ▶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 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중 1개만 인정함
- ▶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 권한 있는 자(도·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또는 보수임금내역,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에 의해 경력인정 가능
 -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 확인

□ 초임호봉의 획정

종류	초임호봉 획정	재획정
대상	센터에 신규 채용되는 자	o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기	신규 채용일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 휴직·정직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방법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환산된 근무 경력 1년에 1호봉씩을 더하여 초임호봉 획정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잔여기간이 15일 이상 1월 미만일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 미반영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재획정에 미 반영된 기간은 그 기간만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고,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 승 진

- 정 의 :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함
- 시기 및 방법
 - 결원이 발생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급보다 하위직급의 직원이 【참고 1】의 직원 자격기준 중 해당 직급의 자격기준에 부합되었을 때
 - 승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지급이 가능한 경우
 - 운영형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단체의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거 승진할 수 있음
- 승진하는 경우 호봉은 1호봉을 감하여 호봉 획정
- 각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속연수는 5년 이상으로 함
 - ※ 다만 특별한 직무성과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소요연수 단축 가능

□ 승 급

- 대상 : 센터에 재직 중인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호봉 승급
 - 정기 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시행
-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

다. 복무관리

□ 근무형태 및 시간

- 근무형태는 정규 근무시간(오전9시~오후6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무로 구분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시행할 수 있음
 - 육아(보육), 평생학습 등을 감안하여 정규근무시간 전후 1시간을 기준으로 탄력 근무제 도입
-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
- 출 강
 -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외부기관의 출강을 요청받은 경우 센터장이 센터의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
- 영리업무 겸직 불가
 - 센터장과 직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센터장 또는 종사자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겸직할 수 없음

○ 수 강

- 직원의 수강(재학)은 근무시간 외에 한함. 단, 부득이한 경우는 센터장의 허가를 득한 후 휴가 범위내에서 수강하여야 함. 수강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 휴일 및 휴가 :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준용
- □ 기타 복무관련
- 복무관련 사항은 지자체 조례 등 자체 규정과 근로기준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 적용함

라. 징계

- □ 센터장은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탁법인의 장이 면직 (직영의 경우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름)
- 센터장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은 수탁기관 장에게 센터장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직원의 면직 및 징벌

- 운영형태에 따라 지자체 또는 위탁법인은 센터 업무의 공공성 및 공익성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 종사자에 대한 자체 징계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단, 센터장은 직원에 대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기타 징벌을 할 수 없음
 - 센터장은 직원의 징벌을 해야 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당사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 센터 내 징계 규정이 없을 경우 직영 또는 위탁법인(통합법인)의 징계규정을 준용 할 수 있음

마. 보수

□ 보수지급 원칙

- 보수는 기본급과 기본급 외 수당으로 구성
 - * 기본급 외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 및 센터의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편성·지급
- 기타사항은 정부예산회계규정, 지방보금법 등을 준용

□ 기본급

○ '23년 기본급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2.5% 인상

□ 기본급 외 수당

-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실정과 여건에 맞게 편성
 - * 단, 지자체에서 직원처우 개선을 위해 별도 예산 편성 시, 아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

▮ 기본급 외 수당(참고사항임) ▮

구 분	지 급 내 용
초과 근무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무)	 초과근무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의미하며, 주12시간 이상 초과할 수 없음 초과근무는 월 20시간 한도 내 지급 가능,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금 또는 보상휴가(대체휴무)로 지급할 수 있음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 센터장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 제외(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 준용) 다만, 지자체별로 지급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가능
근속수당	• 센터 근무경력과 군복무기간만 인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월 5만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월 6만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월 8만원), 20년 이상(월 10만원)
월정직책금 (직급보조금)	• 센터장(월 50만원), 팀장(월 10만원), 팀원(월 5만원, 직급보조금)
가족수당	 배우자 : 월 4만원 자 녀 :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 한해서 지급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 이후 월 11만원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3.1.6) 반영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월 2만원
정액급식비	• 월 14만원
연차수당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 수당은 동 사업 예산 기준를 참조하여 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지급하고, 지방비 추가 확보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 가능(교통보조비, 정근수당 및 가산금, 자격수당, 명절휴가비, 자녀 학비보조 등)

□ 보수지급일

○ 보수는 매월 특정일을 정하여 지급.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기타 사항

- 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법적 충당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
- 상근 자원봉사지도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당을 지급할 수 있음

3-10 여비관리(규정)

-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시·도 공무원 여비관련 조례를 적용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여비는 반드시 경상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며, 사업비에서 집행불가
 - * 단, 정책과제 사업을 포함한 현장지원사업, 직원 워크숍을 위한 여비 등은 지자체 승인 하에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
 - 여비의 종류 :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함
 - * 운임은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운임으로 구분

가.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왕복 12km 미만)

- 출장내용에 따라 4시간 미만인 경우 1인 10,000원, 4시간 이상인 경우 1인 20,000원을 지급함(단, 업무용 기관차량 이용시 4시간 미만은 미지급, 4시간 이상인 경우 1인 10,000원으로 감액지급)
- 근무지내 출장이라도 도서지역 등 일반 대중교통 외 운임(선박 등)이 발생할 경우 실비 처리할 수 있음

나. 근무지외 출장여비 지급 기준(공무원 여비규정 국내여비 지급표 제2호에 준함)

(단위: 원)

구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운임	운임	운임	운임	(1일당)	(1박당)	(1일당)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상한액 : 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23.3.2.) 반영

-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등)의 경우 실지급된 운임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지급하며,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지급
 -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하는 대중교통요금)을 근거로 여비를 지급
 - *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음
 - 자가용 이용시 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는 센터장의 사전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 직원 등
 -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자가용 이용시 운임의 산정 기준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 거리계산방법을 활용
 -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 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 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 ('23.3.2.) 반영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 (km/L)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 증빙자료 제출의무 :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장은 주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액,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
 - 예) 각 차량의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3-11 종사자 역량강화

- □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 센터장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법정 교육 및 정기적인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필수)을 실시하여야 함

구분	교육명	이수기준	근 거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성매매 예방교육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정 의무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제26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5조의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93조

[※] 그 외 교육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현황에 맞게 추가 운영(예: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청렴 및 윤리교육 등)

□ 센터 종사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예산을 별도 편성할 수 있음. 업무역량 교육비 편성에 따른 직원역량강화교육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필요 (사업계획서 제출 시 포함)

※ 경상비에서 직원 교육비 편성

- 교육비 편성은 최대 3백만원을 초과 집행할 수 없음(1인 3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
- 직무와 관계된 교육에 한하여 집행가능하며, 자기개발 성격의 교육으로 예산 집행 불가

[※] 법정의무교육은 법령 및 정부·경영방침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센터별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함
- 센터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목적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정당하게 수집해야 함. 개인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 활동진흥센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센터장으로 지정

직원 자격 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관련분야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이 • 청소년(지도)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분야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 청소년(지도)관련 실무 10년 이상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청소년(지도)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지도) 관련분야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청소년(지도)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지도) 분야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청소년(지도)관련 실무 10년 이상 경력자로서 청소년 지도 등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팀장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팀장		 청소년(지도)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 (지도)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청소년(지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지도) 관련분야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자 청소년(지도) 관련 분야 대학을 졸업한 자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소지자
팀원	활동	 청소년(지도)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 (지도)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청소년(지도)관련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자로 청소년(지도)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소지자로서 청소년(지도)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일반 행정	• 대학 졸업 후, 인사·노무·회계·전산·홍보 등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지도)관련분야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학 및 청소년활동 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quot;실무"라 함은 청소년(지도) 관련 업무, 일반 행정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를 의미함

직원 경력 산정 기준표

구 분		경 력	환산 비율
"갑" 경력 전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관련부서 근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청소년기관 또는 청소년단체의 상근 직원 근무경력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해당 근무 경력(단,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 이용권장시설로 지정된 경우만 인정) ○ 군 의무복무경력 ○ 일반행정직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한 상근 근무경력 	100%
직원	"을" 경력	 ○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상근 근무 경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근무경력 ○ 민간 청소년기관·단체의 상근 직원 근무경력 ○ "갑" 경력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에서의 인턴 경력 ○ 일반행정직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인턴으로 관련 직무를 수행한 근무경력	50%

- ※ 경력산정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 ※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2024년도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종사자 기본급 기준표

(단위:원)

호 봉	센터장	팀 장	팀 원
1	2,835,620	2,469,480	2,099,230
2	2,894,240	2,520,290	2,150,010
3	2,949,730	2,568,790	2,198,540
4	3,024,200	2,633,800	2,247,240
5	3,064,050	2,668,490	2,298,030
6	3,119,950	2,717,020	2,346,550
7	3,191,770	2,779,550	2,395,470
8	3,260,870	2,839,760	2,457,780
9	3,332,480	2,902,060	2,506,490
10	3,404,280	2,964,760	2,557,300
11	3,489,510	3,038,780	2,631,530
12	3,574,510	3,112,780	2,705,530
13	3,659,300	3,186,980	2,779,550
14	3,744,510	3,260,990	2,853,520
15	3,829,530	3,335,020	2,927,750
16	3,901,080	3,397,330	2,987,960
17	3,970,480	3,457,510	3,050,280
18	4,042,320	3,520,260	3,112,780
19	4,113,900	3,582,550	3,173,010
20	4,182,960	3,642,740	3,214,610
21	4,241,340	3,693,590	3,286,280
22	4,297,320	3,742,490	3,335,020
23	4,352,990	3,791,010	3,383,500
24	4,411,600	3,841,800	3,434,330
25	4,467,300	3,890,530	3,483,250
26	4,509,820	3,927,290	3,545,560
27	4,552,560	3,964,510	3,582,550
28	4,594,830	4,001,300	3,619,540
29	4,637,550	4,038,740	3,656,580
30	4,680,010	4,075,540	3,693,590

[※] 이 기본급 기준표는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기준임금으로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음(단, 위 기준보다 낮게 조정되지 않도록 함)

^{- &#}x27;21년도 운영지침 '종사자 기본급 기준표'를 근거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함 ('23년도 기본급 기준에서 '24년도 2.5% 인상한 금액임)

\prod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 점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가. 목 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형태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적정한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조직·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개선을 유도

나. 근거 및 경과

- 지원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 추진경과
 - 2006년부터 종합평가 실시(시설유형별 3년 주기)
 - 2014. 7월부터 법적 의무화(평가실시·결과공개) 및 시설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 ※ 2018. 6. 13일부터 종합평가 자료제출 거부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사업 주요내용

- (평가대상)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 홀수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 짝수해: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사업기간) '24. 2월 ~ '24. 12월(11개월)
- (평가대상 기간) '22. 1. 1 ~ '23. 12. 31(2년간)
 - ※ '22년도 중에 등록된 시설은 등록시점부터 '23.12.31까지 운영실적 평가
- (평가분야) 운영 및 관리, 청소년이용 및 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 시설 및 안전, 시설운영 발전의 총 5개 분야

- (평가지표) '22년 평가지표를 일부 개선하여 반영('24)
 - * '22년 개선 평가지표(안)에 대하여 피 평가시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표 확정

○ (평가방법)

- 수행기관이 주관하고 청소년학과 교수,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개별시설에 평가결과(안)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이행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 결과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1 제1항의 사고, 제70조 및 제72조의 처벌(분) 결과 반영

○ (평가등급)

평가등급	적정	보완	미흡
평가점수 (100점기준)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미만

라. 평가등급의 조정 및 감점

- 관련규정: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5조
-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기간 중 아래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등급 조정 또는 감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의 사고 발생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및 제72조(과태료) 처벌(분)을 받은 경우

▮ 조정 및 감점 기준 ▮

구 분	기 준
청소년활동진흥법 20조의2 제1항 사건발생	감점(10점) 단,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청소년활동진흥법70조(벌칙)	유죄확정시 등급조정
청소년활동진흥법72조(과태료)	1건당 1점 감점

○ 평가등급 조정 또는 감점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유예 가능

- 종합 안전·위생 점검과 연계(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탄력적 적용)
 - 7개 점검분야(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위생) 중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종합평가' 등급 부여 시 보완이하로 조정
 - * 1개 분야 부적합 : 보완 등급, 2개 분야 이상 부적합 : 미흡 등급

마. 평가거부의 기준

○ 평가기간 중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평가거부로 보며,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미제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함

바.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결과 통보 및 공개
 - (여가부) 교육부 및 지자체에 평가결과 통보 및 대국민 공개*
 - * 홈페이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공개
 - (교육부) 수학여행·수련활동 시 종합평가 결과 활용
 - (기초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개선요구 및 조치결과 확인, 미이행시 시정명령
- 평가거부 시설에 대한 조치
 - (여가부)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시 거부시설임을 명시
 - (교육부) 학교대상 프로그램 참여 제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 (지자체) 과태료부과,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별도의 감독 실시
 - * 종합평가 자료제출 거부 및 지적사항 미이행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흡등급 시설에 대한 조치
 - (여가부) 지자체에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여부 확인(년 2회 이상)
 - (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피드백
 - (기초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개선요구 및 미이행시 시정명령
 - (수련시설) 지적사항 개선 추진
 - (유관기관 등)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 등급이하 시설 컨설팅 강화
- 성적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여가부)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성적 우수시설에 대해 "최우수시설" 인증 표식 게시(2년간)
 - * 종합평가 시설의 10% 수준 선정

- 장관상 시상 및 부상 제공* 등
 - *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등급 시설 중에서 20개소 선정(시설유형 고려)

사. 사업추진 절차

	조달계약 의뢰,	2023.11	■조달계약 의뢰(조달청) 및 입찰 공고		
	입찰 공고	~'24.1	■ 평가지표 확정		
계약단계	не от	24.1	■제안서 심사(기술능력 평가)		
	2-2		7.7.2		
	계약	2024.1	■계약 체결		
			<u></u>		
	사업설명회 개최		■착수 보고		
평가준비	및 평가위원회	2~4월	■ 평가편람 작성		
단계		2~4 包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워크숍		
	구성		■종합평가 사업관련 설명회 개최		
			1		
	3-9-3-3		■자체평가표 및 자료 제출		
	자체평가표	5~6월	- 평가대상자 작성·제출		
	작성·제출) UE	- 자체평가표 미제출 시설 평가참여 독려		
			Ţ		
	서면평가 실시	6~7월	■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실시		
평가실시		0.7 包	- 평가대상 시설별 서면조사표 심사		
- 당기들시 - 단계			Į.		
근계	현장평가 실시	7~10월	■ 현장평가 실시		
			Ţ.		
			■ 평가 중간보고		
	평가결과 정리 및		■ 평가결과 개별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확정	9~11월	■이의신청 내용 심의 및 반영		
	4.0		- 의의선정 대통 점의 및 현 8 		
			Ţ		
	고취터리 크리		■교육부, 지자체 통보		
	종합평가 결과	12월	■ 평가결과 일반공개, 우수기관 포상		
평가결과	공개	126	(여가부, 활동정보서비스)		
분석 및			Ţ		
정리 단계					
	평가보고서 작성	12월	■ 평가 후속조치		
	0/144/190	12 2	■세부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1				
컨설팅,	미흡시설 컨설팅	2024.	■ 전년도 미흡등급 컨설팅 추진		
- 선물당, 평가지표	및 평가지표 개발	2°024.	■ 26년 자연권, 27년 생활권 평가지표 개발		
Q. 1IT	ᄎ 여기기표 개월	212	- 40년 시 년년, 4/년 78월년 73시시표 세월		

[※] 상기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가. 목 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시설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시설개선 및 안전성 확보

나. 근거 및 경과

- 지원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 추진경과
 - 2006년부터 종합 안전점검 실시(시설유형별 3년 주기)
 - 2014. 7월부터 법적 평가실시 의무화 및 시설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 ※ 2015. 8월부터 법적 결과공개 의무
 - 2018년부터 안전점검에 위생 분야 추가(시행 '17.9.22.)
 - 안전점검 미참여 수련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행 '18.6.13.)

다. 사업 주요내용

- (점검대상)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및 2023년 점검유예 시설
 - ※ 홀수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 짝수해: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여성가족부 : 자연권 민간 설치시설(우수시설 일부제외) 및 공립 시설 중 화재 취약자재(샌드위치 패널, 드라이비트) 사용 시설, 모험시설(집라인, 챌린지코스, 인공암벽장) 설치 시설, '22년 점검결과 부적합 또는 C등급 이하 2개 이상 시설 대상 점검
 - 지방자치단체 : 관내 공립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시설 전체 및 2023년 점검 유예시설(생활권 수련시설, 민간시설 포함)
 - * 민간시설 중 직전 점검 우수시설 일부 및 시설 소재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 점검
- (점검분야) 7개 분야(건축·토목·기계·가스·소방·전기·위생)

○ (등급판정)

점검분야	등급 구분	비고
건축·토목·기계·소방	A, B, C, D, E(5등급)	D·E 등급: 부적합 처리
전기·가스·위생	적합, 부적합(2등급)	부적합 등급:부적합 처리

라. 세부 점검방법

1. 중앙 점검

- (점검대상) 자연권 민간 설치시설(우수시설 일부제외) ② 공립 시설 중 화재 취약 자재(샌드위치 패널, 드라이비트) 사용 시설, 모험시설(집라인, 챌린지코스, 인공 암벽장) 설치 시설, '22년 점검결과 부적합 또는 C등급 이하 2개 이상 시설(별도 선정 통보 예정)
 - * 취약시설 중 여가부 + 지자체 및 전문기관 합동 점검 대상시설 별도 선정 통보 예정
 - ** 여성가족부 점검 시 해당 지역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동행 필요
- (점검시기) 4월~10월 중 시설별 점검 희망시기 조사 후 추진
- (점검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등 전문기관 연계점검

2. 지자체 점검

- (점검대상) 관내 공립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전체 및 2023년 점검 유예시설(생활권 수련시설, 민간시설 포함)
 - ※ 민간시설 중 직전 점검 우수시설 일부 포함 점검(별도 지정 예정)
- (점검기간) 4월~10월 중 선택
 - * 지자체 여건(재난부서 예산사용 등)에 따라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연계(당해 점검 1회로 갈음) 가능하며 이 경우 '23년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등록 시 지자체 자체수행시설로 등록
 - **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점검 시 점검표 양식은 필히 '종합 안전· 위생점검 점검표'활용
- (청소년담당 공무원 점검) 운영^{*} 및 위생^{**}
 - *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안전관련 청소년활동 진흥법 규정사항
 - ** 시·군·구 위생부서 집단급식소 점검을 제외한 청소상태 등 환경 점검
 - ※ 집단급식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식약처 등 접부합동 점검 별도실시

- (전문가 점검) : 시설(건축·토목·기계), 소방, 전기
 - * 해당분야(건축, 토목, 소방, 전기 등) 안전점검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공무원, 각 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차" 항목 참조)
- (점검결과) '24.10.31까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시스템제출
 - * 시·군·구: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운영 종합시스템(YSMS) 내 결과 입력 및 점검결과표 스캔본 첨부 제출
 - * 광역 시·도: 관할 시·군·구 점검 결과를 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및 최종 제출
 - * 시스템담당자 연락처 : ☎ 02-6959-7122, 7125(활동안전부)

마. 지자체공무원 대상 안전점검관련 교육실시

- 신규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실시
 - * 교육자료는 여성가족부 나라배움터 탑재

바. 종합평가와 연계

- 7개 점검분야(건축·토목·기계·가스·소방·전기·위생) 중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종합평가' 등급 부여 시 보완이하로 조정
 - * 1개 분야 부적합 : 보완 등급, 2개 분야 이상 부적합 : 미흡 등급

사. 점검결과 활용 및 조치

- 점검 등급 등 결과를 교육부, 지자체 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여성가족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공개 ⇒ 점검거부 시설명도 공개
- 결함사항 및 보수·보강방안 등이 포함된 기관별 점검 결과 안내로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 안전성 확보
- 결함 등 점검 지적사항은 개·보수 시정명령 및 조치이행 여부확인 후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조치
- 점검 거부 시설은 과태료 부과 조치

아. 지적사항 개선실적 제출

- 종합안전·위생점검 지적사항 조치 현황 점검 강화
 - 지적사항에 대한 정기적(매 분기별) 개선실적 및 개선계획(재원확보, 개선공사 예정시기) 등 현황 여성가족부로 제출(매분기 말일까지)
 - 점검 다음연도까지 미개선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조치

자. 사업추진 절차

기본계획 ■ 조달계약 의뢰(조달청) 및 계약체결 수립('23.11~1월) 점검 준비 및 사업안내 ■ 점검계획 및 대상시설 지자체 통보 ■ 점검관련 지자체 공무원 교육자료 준비 및 교육실시 ('24. 1~3월) 중앙점검 관련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원, 수행기관간 점검 점검수행기관 방향·일정·항목·등급 구분 방법 등 협의 위탁계약 체결(3월) 종합 안전·위생 점검 ■중앙 및 지자체 주관 각 분야별 점검 실시 (4~10월) -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연계 추진 점검결과 취합 및 ■ 지자체 점검결과 제출 ■ 정부 및 지자체 점검결과 총괄 취합 및 정리 정리(4~10월) 점검결과 정리 ■ 개별보고서 작성 (11~12월) ■ 점검결과 확정 및 종합평가 연계반영 ■ 점검 결과 확정, 종합평가 연계·반영 결과 확정·공지 ■ 점검결과 공개 및 유관기관 결과공유 (12월~) * 유관기관(교육부, 지방자치단체) 통보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등재 ■ 여성가족부 - 지적사항 개선 조치 확인·점검 ■ 지방자치단체, 수련시설 - 지적사항 개선 조치 및 추진계획 제출(매분기) 후속조치('25.1월~) - 지적사항 개선상황 관리·감독 및 행정조치 ■ 교육부 - 교육청, 일선 학교 결과 공유, 수학여행·수련활동 지침 반영 등

차. 점검 인력 자격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따른 건축, 전기·전자, 안전관리(건설안전, 소방, 가스 등)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각 해당 분야(건축, 전기·전자, 안전관리 기계 등)의 기사 취득 후 경력이 4년(산업기사의 경우 7년) 이상인 사람

구 분	자 격 요 건
건축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소방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따른 소방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의 중급기술인 이상일것
전기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전기·전자 직무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의 중급기술인 이상일것
가스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따른 가스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해당분야(건축, 토목, 소방 등) 안전점검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공무원 포함

${ m IV}$ ight angle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

개 요

가. 목 적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전담 지도를 통해 인성 함양, 도전정신 등을 길러줌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역량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 지도사의 배치 등)
- 추진경위
 - '03년도부터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을 추진
 - ※ 배치실적: ('11년) 316명, ('12년) 351명, ('13년) 349명, ('14년) 368명, ('15년) 374명, ('17년) 374명, ('18년) 374명, ('19년) 414명, ('20년) 430명, ('21년) 428명, ('22년) 430명

다. 2023년 예산

- '24년도 예산액(국비): 5,717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1인당 연 지원액
 - 기본급: 1급 13.080천원, 2급 12.792천원, 3급 12.600천원
 - * 월 1급 218만원 2급 213.2만원 3급 210만원 지원(지방비 50% 포함)
 - 정규직전환 수당: 1,380천원 이내

기본 방향

- 활동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중심으로 수련활동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시설에 우선 배치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준수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되, 1시설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함
- 청소년지도사의 배치(채용) 자격요건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
- 배치 청소년지도사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등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 기획·우영 또는 청소년 대피훈련·이용자 안전교육 등 안전업무 담당.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시설 운영프로그램 또는 안전교육에 대한 홍보실적 등의 성과(시설별 1개) 및 이용자(청소년, 학부모 등)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환류 (분기별 1회 이상)

배치지원 계획

가. 배치대상 시설 및 인원 기준

○ (지원 대상 및 인원)

3

- 대상: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중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 준수 시설
 - * (청소년수련원) 기존 지원시설에 한하여 지원중
 - ※ '18년부터 기존 지원자 퇴사 시 추가지원 불가(대상자를 변경하여 계속 지원시 발견 즉시 지원 중단) 다만, 생활권으로 전환 시 변경 보고 후 지원 가능
- 지원 인원:시설별 청소년지도사 1인 인건비 지원(국비 50%)
- (지원 제외대상)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미준수 시설은 제외, 다만 ① 도서 및 산간 지역*으로 지도사 구인이 어려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

- ② 퇴사로 인한 일시적인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은 지원가능
-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참조
- ※ 기존 지원시설 중 배치기준을 미준수 시설은 준수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도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24.7월까지 상반기 추진실적 제출 시 구인공고실적도 함께 제출(미제출 및 미공고 시설은 익년도 사업 제외)
- 청소년수련관 내 문화의집
 - * 청소년수련관(수련원 포함)내 문화의집이 설치된 경우 수련관 또는 문화의집 중 1개 시설에만 배치 지원

나. 지원 인원 및 지원액

○ '24년도 배치계획

7 8	시설수	지원인원(명)							
구 분	(개소)	소계	1급	2급	3급				
합 계	430	430	29	389	12				
Ŏ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143	143	6	134	3				
청소년문화의집	282	282	23	250	9				
청소년수련원	5	5	-	5	-				

○ 1인당 월 국비 지원액(월 기본급)

1급:월 1,090천원, 2급:월 1,066천원, 3급:월 1,050천원

- ※ 지방비 포함시: (1급) 월 218만원 (2급) 월 213.2만원 (3급) 월 210만원
- 기타 제 수당, 4대 보험금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은 반드시 별도(추가)로 예사을 확보하여 지급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체임금 적용으로 국고보조금 월 기본급보다 자체임금의 기본급이 적은 경우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전환 지원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관계부처 합동)에 따름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 배치지도사에 대해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족한 임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 지방자치단체는 배치지도사 보수 책정시 지도사 간 임금불균형 해소 노력
- 정규직 전환 수당 지원액
 - 지원대상:지자체 직영시설 또는 직영에 준하는 위탁운영 형식의 시설 (지방공기업, 자치단체 설립재단 등)에 채용된 인력
 - 지원수당
 - ① 복지비: 최대 200천원 / 년(400천원 × 50%)
 - ② 급식비: 최대 780천원 / 년(130천원 × 12개월 × 50%)
 - ③ 명절휴가비: 최대 400천원 / 년(400천원×2회 × 50%)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관계부처 합동)에 따름

다. 배치 청소년지도사 담당임무(역할)

- 청소년지도사 담당임무(역할)
 -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청소년동아리 운영 등 청소년활동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업무
 - 청소년 대피훈련·이용자 안전교육 등 안전업무
 - ※ 동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지적('18~'19)으로 성과 관리를 위한 필요성 대두(붙임 4-2)

(지적사항)

- 청소년지도사 활동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한데 상세한 내용이 없어
- 사업 전반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인 우수평가 사례가 없어 아쉬움
- 배치 청소년지도사가 위 담당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 지원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음
 - ※ 청소년활동과 무관한 위탁법인 업무 등은 수행 불가

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조건

- 각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50% 이상 확보해야함
- 배치 지도사 퇴사시 신규 인력 채용없이 기존 지도사를 배치지도사로 전환 금지
 - 다만, 기존 지도사를 배치지도사로 전화하고 공석인 자리에 다른 청소년지도사를 신규채용을 한 경우 예외 인정

- 시설(재단 포함)내부 인사발령을 통해 업무가 변경된 경우도 인정
 - * 기준 미준수 시설 및 수련원 해당안됨
 - * 기존 근무자 지원 사실 발견시 차년도 지도사 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신규채용자는 정산보고 시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 제출)
 - * 7~8월 추진실적 점검시 관련 내용 제출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안전점검 등 국가 시책에 참여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원 제외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 각 시·도에서는 반기별 추진실적 제출시 배치기준 준수현황도 같이 제출: 【붙임 3】양식
 - ※ 배치 청소년지도사, 방과후아카데미 등 개별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추가 채용한 청소년지도사는 배치기준에 따른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기 배정된 청소년지도사의 급수에 따라 인력 채용
 - 기 배정된 청소년지도사 등급보다 상위등급을 배치할 경우 부족한 인건비는 시설에서 자체부담하고, 배정된 등급보다 하위등급을 배치할 경우 보조금 잔액 반납
 - ※ 기 배치지도사자의 지도사 자격등급 변경으로 인한 상위등급 채용은 가능

4 배치 청소년지도사 선발 및 배치 절차

가. 청소년지도사 모집

- 모집 주체:각 지방자치단체, 해당 청소년시설
 - 해당 청소년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자체 모집 가능
 - ※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와 공개모집을 통해 자체 선발
- 모집방법: 공개 모집
 - *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널리 공고하고, 기타 세부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청소년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혐의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
 -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링크 가능

○ 자격 요건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3급)을 취득(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해당연도 자격연수 신청자 포함*)하고 창의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전담·지도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자
 -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및 자격연수 신청여부 확인
-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자
 - 청소년관련 전문연수 이수 등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 활동 실기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
 - 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 분야에 폭 넓은 지식과 비전을 소유한 자로 신분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타 청소년시설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그 자격을 갖춘 자

나. 청소년지도사 선발

- 전형방법:서류심사 및 면접 실시 원칙, 필요시 실기 추가 가능
- 선발워칙: 공개모집 ☞ 반드시 자격요건에 맞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를 선발
 -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및 자격연수 신청여부 확인
- 동일시설에서 계속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 향후 채용기간 연장 여부는 근무태도 및 업무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하여 해당시설에서 판단
- 미 개원 청소년수련시설의 배치지도사 채용은 개원 1개월 전부터 가능

다. 청소년지도사 근로조건 및 임금

- 근로계약 체결
 - 해당시설에서는 선발된 청소년지도사와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 체결(근로기준법 준용)
 - ☞【붙임1】표준 근로계약서 참조
 - ※「근로기준법」제17조제2항에 의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 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위탁단체(기관)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등
 - 청소년시설의 운영 위탁단체(기관) 변경 시 청소년지도사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 의사에 반해 임의로 중도 퇴직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음
- 근무조건, 임금 등
 - 복무: 근무시간, 공가·휴가, 업무분장 등은 해당시설의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 준용
 - 임금

〈기본급〉

- 지도사 1급:월 218만원 이상(국비 1,090천원, 지방비 1,090천원 이상)
- 지도사 2급: 월 213.2만원 이상(국비 1,066천원, 지방비 1,066천원 이상)
- 지도사 3급: 월 210만원 이상(국비 1.050천원, 지방비 1.050천원 이상)
- 지급 방법:보수는 매월 당해 시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중도 퇴직자 및 충원으로 인한 후임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보수외 각종 수당 추가 지급〉

• 해당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지도사에게 보수(국비·지방비부담)외에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기말수당, 자격수당, 기타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 4대 보험 부닦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관련 법령에 의거 가입
- 사용자 법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반드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적립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동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퇴직적립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 배치지도사에 대해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족한 임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전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가.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시·도에서는 '23.1.14까지 국고 보조금 신청: 【붙임 2】 양식
- 여성가족부에서 3분기에 걸쳐 국고보조금 교부:1월,4월,7월

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시·도에서는 상반기 실적 추진을 7.31일까지 배치 추진실적, 배치기준 준수현황, 담당임무(역할) 추진실적 제출: 【붙임 3】양식
- '24.6월까지 공석이 발생한 경우 7.31까지 구인공고 실적 제출(향후 정산과 비교)

_	구인노력을	하지	0-0	겨으	이녀	사언에서	제이
_	十 2 エコラ		끊글	73 T	익인	스타입에스I	계외

횟수	구인실적										
	구인공고기간		구인공고방법								
1		관련자료 캡쳐									
	구인공고기간		구인공고방법								
2											

- 시·도에서는 '25. 1. 31까지 배치지원 사업 결과 및 사업정산보고서 제출: 【붙임 4】양식
 - 이자발생액도 반드시 보고·반납 조치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시설'의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결과 필히 포함(분기별 1회 이상 실시, 배치 청소년지도사가 참여한 프로그램 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표준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어?	주"라 함)과(와)	(ol하 "그:	크자"라 하/으 다	으라 가이 그리
계약을 체결한다.	千 日 旬/年(年)	(* * L-	EA 4 E/E 4	14 E1 LE
1. 근로개시일: 년 월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시	분부터시분까지	(휴게시간: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일(!	또는 매일단위)근무, 주	휴일 매주요약	<u>1</u>	
6. 임 금				
- 월(일, 시간)급:	원			
- 상여금:있음()_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 (), 없음 ()		
	<u>원,</u>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	자 명의 예금 <u>통</u> 정	}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	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린	<u>ł</u> 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 [*] 9. 근로계약서 교부	험 □ 국민연금 □ 전	건강보험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근로자에게 교부함(근		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의	요구와 관계없이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전화 :)		
대 표 자: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	주"라 함)과(와)	(o]ᢐ៊	ㅏ "근로자"라	- 함)은 다음	과 같이 근	로계약을
체결한다.		,	, –	-,-	,	* .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시	· · — ·— ·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매주 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ㅁ	매주요일			
6. 임 급						
- 월(일, 시간)급:						
- 상여금: 있음 ()			원,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					•	
•				원	<u> </u>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	로자 명의	의 예금통장 ං	게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학 □ 고용보험 □ 산재보] 건강보험	됨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근로자에게 교부함(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	<u>!</u> 부요구와 =	관계없이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	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령에 의한	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전화:)			
대 표 자: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서명)					
(참고) 유의사항	(10)					
- 여장·야카 및 호잌 근	로시 통상임금의 100분	쿠의 50 C) 상을 가산하	1여 지급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임금 외에 별도 예산으로 지급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 사항임)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2024	년도 청소년지도시	바치 지	원 시	- }업	
			시 도	명						
신	청	자	부 서	명			담당자	명		
			전 화 번	호			이 메	일		
교	부 신	청 액	일 금			원 (₩)	
초	사 업	l Bl		합 계		국비			지방비	
"	위 : 천									
사	 사업기간: 2024.1.1. ~ 12.31까지(12개월) 사업내용: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수련관 : ○○명(1급 ○명, 2급 ○명, 3급 ○명) 청소년문화의집: ○○명(1급 ○명, 2급 ○명, 3급 ○명) 청소년수련원 : ○○명(1급 ○명, 2급 ○명, 3급 ○명) 합계 : ○○○명(1급 ○명, 2급 ○명, 3급 ○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시・도지사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붙 임:2024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 계획 1부(붙임2-1 서식)

2024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 계획 (시도명 :

(단위: 천원)

(원 기 사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 종류	급수	성 명	성별	연령 (만)	계속 신규		'22 예산액	1	비고
,			송듀	_ '		0_	(만)	신규	국비	지방비	계	, =
서울	강남구	ㅇㅇ수련 관	수련관	2급	홍길동	남		계속	00,000	00,000	00,000	
				1급				신규				
									작성예시			
	ᅙ	. 계										

- ▶ 작성시 유의사항
 - ㅇ 보조금 신청 기일까지 미 채용(배치) 시 기 통보한 수련시설별 배정인원(급수기재) 및 예산액을 기재 (* 추후 채용현황 제출) ○ 양식 변경 금지

【붙임 3】

2024년도 (상반기) 청소년지도사 배치 추진실적 (시도명:)

① 시설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 종류	급수 성명 성별 연령 (만)		연령	계속	근무 기간	'23(상빈	비고			
	시止ㅣ	MEG	종류	нт	0 0	0.5	(만)	신규		국비	지방비	계	미포
서울	강남구	ㅇㅇ수련관	수련관	2급	홍길동	남		계속	'16.1~ 현재	00,000	00,000	00,000	
				1급				신규	'22.1 ~12				
								작성	예시				
		합 계											

※ 작성시 유의사항:양식 변경 금지

[○] 중도 퇴직자의 경우 발생 시 근무기간에 전·후임자 연계 작성

[○] 예산 집행액은 당해 반기 집행액을 기재

[○] 반기 종료후 익월 31일까지 제출

②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현황

구 분	니서대	수용 정원		크기본법 청소년 [;] 배치기	시행량 지도사 준(A)	 녕 상	2024년 현재 배치현황(B)				증감(C=B-A)				
一	시설명	정원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기준 충족 여부
	□□청소년 수련관	420	1	1	2	4	1	2	1	4	0	1	-1	0	0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관	750	1	1	3	5	0	2	3	5	-1	1	0	0	×
	소 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집	××문화의집														
	소 계														
	○○수련원	·													
청소년 수련원	××수련원														
	소 계														
합	계								·						

【붙임 4】

2024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

□ 시·도명:

□ 사업개요

- 목적: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전담 지도를 통해 인성 함양, 도전정신 등을 길러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2024. 00 ~ 00
- 지원내용:청소년지도사 00명 배치지원

□ 사업결과

- 배치지원 사업 추진실적 : 붙임 참조 ☞ 붙임4-1양식
- 배치 청소년지도사 추진 성과·실적(※세부결과 붙임): ☞ 붙임4-2양식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세부결과 붙임) ☞ 붙임4-3양식, 시·도별 제출양식만 제출

시설수(개)	프로그램(개)	항목별 조사결과							
시얼구(개)		1	2-1	2-2	2-3				

□ 보조금 정산결과(※ 세부결과 붙임) ☞ 붙임4-1양식에 포함

(단위:원)

합 계					국	-Н		지방비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이자 발생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이자 발생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이자 발생액

위와 같이 2024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 . 1. . 시·도지사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2024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추진실적

□ 예산 집행현황(시도명)

(단위:원)

								'23	3 예산	집행현	 황		(12)	1 - 원)
	IIME	7.4	ИH	ин	근무		국				지빙	<u>}</u>		ш¬
시군	시설명	급수	성명	성별	근무 기간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이자	교부액		집행 잔액	이자	비고
강남구	○○수련관	1급	000		'23.1~12									
	OOD TOUT	1급	000		'23.1~3									
	○○문화의집	2급	000		4~									
	○○수련원													
ž	통 계		명											

※ 작성요령

- 중도 퇴직자의 경우 발생 시 근무기간에 전·후임자 연계 작성
-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기재(국비, 지방비 구분)
- 신규채용자는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 제출

【붙임 4-2】

2024년도 배치 청소년지도사 추진 성과・실적 증빙자료 제출양식(시도명)

- * 엑셀 양식에 작성 및 제출(①, ③)
- □ 배치 청소년지도사 운영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실적 현황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프로그램 주요내용	참여인원(연인원)
계			

2 = 7	청소년	안전교육	또는	활동프로그램	관련	외부	홍보싴적	듲	성과	제춬(시	설당	1개
--------	-----	------	----	--------	----	----	------	---	----	------	----	----

jpg파일 또는 pdf파일

〈보도날짜 기사제목(언론사) 순 기재〉 〈예시: 231221 청소년~~~(한국일보)〉

- ※ 대피·안전관리·안전교육 등의 안전과 관련 내용 홍보·성과 실적 제출 우선 (없으면 활동프로그램 홍보·성과 제출 가능)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기사 제출 필요X)
- ※ 용량이 클 경우 시·도 담당자가 시도별 10개 정도로 추려서 제출 가능
- ③ 청소년(또는 이용자) 대피훈련·안전교육 운영 실적 현황

운영일시	장소	내용	대상	참여인원
계				

【붙임 4-3】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시·도별 제출양식〉

- □ 시·도명:
-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결과
 - 시설수(전체):
 - 프로그램수(전체):
 - 조사인원(전체): ○○명
 - 항목별 조사결과

조사항목				조	사 결 교	가				비고
1.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점수 기재
2. 분야별 만족도										평균점수 기재
2-1. 프로그램										평균점수 기재
2-2. 지도자										평균점수 기재
2-3. 시설/환경										평균점수 기재
3. 인식조사										
3-1. 참여 전	1	% ②	% ③	% ④	% ⑤	% 6	% ⑦	%		항목별 비율
3-2. 참여 후	1	% ②	% ③	% ④	% ⑤	% 6	% ⑦	%		항목별 비율
3-3. 참여희망	1	% ②	% ③	% ④	% ⑤	% 6	% ⑦	% 8	%	항목별 비율
3-4. 충족여부										평균점수 기재
3-5. 도움여부	1	% ②	%							항목별 비율
3-6. 도움이된 점										요약기재
4. 기타										요약기재

- ※ 1. 평균점수: 5점 만점으로 기재
 - 2. 각 시설별 설문조사결과 첨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시설별 작성양식〉

	人	서	며	
		_	\sim	

□ 프로그램명: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인원:○○명

○ 항목별 조사결과

항 목	조 사 결 과	비고
1.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점수 기재
2. 분야별 만족도		평균점수 기재
2-1. 프로그램		평균점수 기재
2-2. 지도자		평균점수 기재
2-3. 시설/환경		평균점수 기재
3. 인식조사		
3-1. 참여 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항목별 비율
3-2. 참여 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항목별 비율
3-3. 참여희망	① %2 %3 %4 %5 %6 %7 %8 %	항목별 비율
3-4. 충족여부		평균점수 기재
3-5. 도움여부	① %② %	항목별 비율
3-6. 도움이된 점		요약기재
4. 기타		요약기재

※ 평균점수: 5점 만점으로 기재

설 문 지(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 본 설문지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시설 운영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각 질문에 정성껏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각 해당 질문 만족도 체크 란에 "✔"표시를 해주시고, 단답형은 요점만 간략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교 급	성 별
초() 중() 고()	남() 여()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

I. 다음은 참여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프로그램명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5	4	3	2	1
	(5)	(4)	(3)	(2)	(1)

Ⅱ. 다음은 각 분야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분야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러하지 않다	매우 그러하지 않다
	1.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5)	4	3	2	1
	2.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	(5)	4	3	2	1
프로	3. 흥미롭고 유익했다.	(5)	4	3	2	1
그램	4. 진행은 나의 수준에 적합했다.	(5)	4	3	2	1
	5.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기자재가 잘 갖추어져 있다.	(5)	4	3	2	(1)
	6.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받았다.	(5)	4	3	2	1
	1. 친절하다.	(5)	4	3	2	1)
	2. 열성적이다.	(5)	4	3	2	1
지도자	3.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을 이끌어주었다.	(5)	4	3	2	1
	4. 청소년들을 존중하며 활동을 지도했다.	(5)	4	3	2	1)
	5. 폭언이나 욕설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가르쳐주었다.	(5)	4	3	2	1)
시설/	1. 활동시설은 청소년에게 맞게 갖추어져있다.	(5)	4	3	2	1)
· 자원 환경	2. 편의시설(매점, 자판기 등)이 잘 되어 있다.	(5)	4	3	2	1)
£7.0	3. 대피로 등 시설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다.	(5)	4	3	2	1

Ш.	다음은 정소년들이 생각하는 정소년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소사에 관한 문양입니다.
1.	귀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어떠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① 자율적 청소년 활동 ② 학교의무 행사 ③ 자연친화적 활동 ④ 문화체험 활동 ⑤ 강압적 극기 활동 ⑥ 공동체 활동 ⑦ 기타 (적어주세요:
2.	귀 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어떠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율적 청소년 활동 ② 학교의무 행사 ③ 자연친화적 활동 ④ 문화체험 활동 ⑤ 강압적 극기 활동 ⑥ 공동체 활동 ⑦ 기타 (적어주세요:
3.	귀 하가 향후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한가지 만 선택해주세요. ① 봉사와 협동심 함양에 필요한 프로그램 ② 인권폭력 예방에 필요한 청소년 인권보호 프로그램 ③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④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⑤ 전문적 직업능력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⑥ 환경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⑦ 과학 및 정보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⑧ 기타(적어주세요:
4.	귀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교육에서 부족했던 과정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① 매우 아니다
5.	귀하에게 이번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6.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
IV.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좋았던 점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어주세요.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신고제 이해

1-1

사업 개요

- (개념)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실시 계획을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수련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근거)「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신고 대상 1-2

- (신고 수리 주체)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신고 주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가자를 모집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 운영하려는 자
 -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청소년지도자가 참여한 경우) (직접 기획·주최, 모집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신고한 수련활동에 단순 참가하는 경우는 제외)
- (신고 기한) 참가자 모집 14일 전
- (신고 대상 참가자 연령) 19세 미만의 청소년
 - ※ 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하고, 모집 예정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
- (신고 대상 활동 범위)
 - 숙박: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 비숙박: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2 신고 절차

2-1 신고제 추진체계

구 분	주요기능
여성가족부	신고 업무 관련 법령·제도 개선 총괄 신고제도 운영 방안 수립 및 시행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보완 요청
시·군·구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접수 신고 현황 관리 및 감독 신고 수리 사항 정보 공개 신고제 관련 위반자 확인, 규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청소년활동정보시스템(www.youth.go.kr) 운영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고지원반 교육 및 관리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컨설팅 청소년수련활동 불편사항 등 접수 모니터링 신고지원 인력 확보(신고 교육, 모니터링, 보완사항 검토 등) 신고 현황 이행실태 수시 점검(모니터링)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	신고서 제출 신고 수리 후 규정 준수 •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 조치 •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활동 실시 3일 전)

신고 관련 업무 절차 2-2

- 주최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리기관(주최자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서 제출(모집 14일 전)
 - 원칙적으로 신고시스템(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을 통해 신고 접수하도록 함
 - * 각 기관 민원담당 부서에 요청하여 새올행정시스템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연계하여 신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가능
 - 오프라인으로 접수받아 신고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사항과 접수된 신고서 일체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담당자가 등록
 -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내 업무지원서비스를 통해 등록
 - * 지자체 담당자가 신고서 일체를 시스템(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는 삭제(음영) 처리 후 등록 실시
- 처리기관에서는 접수 후, 구비서류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처리하고, 보완요청의 경우 보완요청 기한 내 신고자가 보완요청사항 미 이행시 신고 반려 가능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함
 - 주최자 등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 go.kr)을 통해 경력유무(有無) 등 조회 후 경력확인에 따라 별도확인 필요시 관할 경찰관서 또는 해당 등록기준지 시·군·구에만 요청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조회는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권한을 각각 받아 모두 확인
 - 행안부·경찰청의 조회 절차개선에 따라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를 통합조회
 - * 하나의 조회메뉴를 통해 통합 조회 가능, 다수건(500~1,000건)조회도 일괄 처리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내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 가이드'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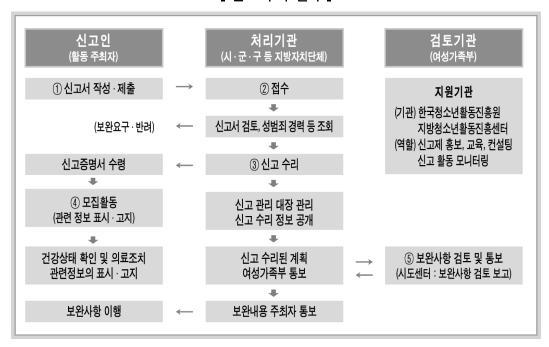




- 신고 수리 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내 업무지원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지체 없이 신고 관리 대장에 기록
 -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경우 신고 수리 시 신고증명서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급 가능하며, 신고 수리 후 별도 정보 등록 절차 불필요
 - 신고관리대장의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등록 시(시스템 수리 완료 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 대장이 자동 생성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전자이미지 관인 사전 등록 필요

- 처리기관에서는 신고 수리된 계획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계획을 검토한 여성가족부는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기관에 보완사항을 통보를 하며, 처리 기관은 주최기관에 보완사항 통보
 - * 시스템을 통해 신고 시 여가부로 자동 통보 되므로 별도 미 통보
 - ** 여성가족부는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신고 수리된 계획의 보완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처리기관에서는 주최기관에 활동 실시 전 보완을 하도록 하고. 보완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통보
- 주최자는 신고 수리 후 모집 시 안전점검, 보험가입, 수련활동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모집활동 및 계약 시 인쇄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고지
- 미신고자 또는 신고수리 후 법령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신고수리 전에는 모집 활동 금지
 - 신고수리 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합동으로 신고 수리 활동의 이행 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모니터링) 실시
- 신고 수리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활동 시작 3일 전까지 변경 사유, 관련 서류를 처리기관에 제출
 - 변경 가능 범위(예시)
 - * (프로그램) 중요 프로그램이 아니며, 전체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2분의1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
 - * (활동장소 및 장비) 신고 수리된 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
 - * (지도자) 신고 수리된 지도자와 유사 경력 및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신고 수리 절차 ▮



2-3 신고 시 구비서류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시행규칙 별표1 운영기준 준수(시행규칙 제1조의2)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 인증서로 제출
 - * 대규모(청소년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은 인증을 받아야 신고 수리 가능
 - *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 설치 시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 내에서만 수련활동 운영 가능
 - *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 조치 후 프로그램을 주최 여부 확인 (시행규칙 별표1.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준 2. 프로그램 운영 '사'항 참조)
-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시행규칙 별지 제2호)
- 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보험증권 등 법 제25조에 따라 주최자가 가입한 보험 가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보험가입 청약서 등 신청서는 가입 증빙 서류로 부적합
 - * 보험 보장금액이 사망·후유장애 1억5천만원 이상, 부상 1급 3천만원 이상 등 가입 확인

신고 수리 시 유의사항 2-4

- 처리기간이 14일이나 가급적 빠른 처리로 주최기관의 참가자 모집 등 업무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처리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 보완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2제2항 및 3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에서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된 것으로 간주됨('18. 9. 14일부터 시행)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연계·협력
 - 주최기관에서 신고 서류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 각 시·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신고제 컨설팅 및 설명회, 불편 사항 처리, 신고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점검 등 신고제 업무에 지자체 적극 협조
 -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시·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전문기관임
-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 확인 사항
 - 운영계획서 대신 첨부된 인증서의 각 항목과 신고서 및 세부내역서 일치 여부 확인
 - * 결격사유 조회, 세부내역서 및 보험가입 확인 등은 미인증 수련활동 신고 수리 검토 시와 동일



- 필수 확인 사항
- 인증번호 일치 여부
- 운영기관명 일치 여부
- 활동명 일치 여부
- 인증기간(유효기간) 내 신고 여부
- 참여대상 및 인원 일치 여부 (신고서의 인원이 인증서의 인원보다 많은지 등 확인)

- 신고 된 활동이 법률 위반사실 없이 신고하였는지 시·군·구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신고 수리 후 신고 한 바와 같이 운영하는지 등 세심한 관리 필요
- 여성가족부에서 보완 사항을 시·군·구에 통보 한 경우 보완 내용을 주최자에 통보하고, 보완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
-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군·구별 신고 현황과 신고 관련 행정처분 현황을 시·도에서 취합하여 여성가족부 제출

- 상반기: '24. 7. 15. 까지

- 하반기: '25. 1. 15. 까지

【참고】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유형 구분	프로그램명
수상활동	•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장거리 걷기활동	•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활동	•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 지는 청소년수련활동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및 의무 인증 대상

	구 분	신고대상	의무인증대상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0	0
여기버이 다케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0	×
영리법인, 단체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0	0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0	0
청소년수련시설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0	×
るエピナゼベラ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0	0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ᅯᇫᆝᆿ다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회원 대상 실시의 경우)	×	×
청소년단체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비회원 대상 실시의 경우)	×	0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0
조그다레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종교단체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0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보호자 [*] 와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0
보고자 와 함께 하는 활동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0
* 참가자개별보호자(부모)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타 법률의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0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단체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0
미징의 답단, 단제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 신고 제외 대상

제외대상	예 시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활동 진흥법」이외 다른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민법」에 의한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 교육관계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상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 영리법인·단체는 신고 대상 ※ 지도·감독에 해당 않는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6에 따른 수련활동 실시 제한 대상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참여 청소년의 개인별 부모 등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 ※ 모집 시 보호자 참여를 홍보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성지순례, 수련회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활동 ※ 예시 • 종교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교단·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 및 개별단체 •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
비숙박 청소년수련활동 중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미만인 수련활동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7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신고 수리 시 점검 사항

○ 전고 구덕 시 점점 시청 					
구비서류		점 검 항 목 	확인		
	1	법 제9조의2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신고대상이 맞는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지도자가 함께하는 활동인가?)			
1. 숙박형 등	2	신고서의 공란 및 첨부서류의 누락은 없는가?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	3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활동인가?			
신고서	4	신고가 모집 14일전까지 적법하게 서류를 제출하였는가?			
	(5)	주최자가 법 제9조의6 제한 대상 단체(개인)에 포함되지 않는가?			
	1	신고서 및 운영계획서 등 제출한 다른 서류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2	세부내역서 내용을 충실히 모두 기재하였는가?			
	3	프로그램명과 활동기간을 모두 기재하였는가? (동일 프로그램의 경우 연 진행기간을 기재)			
	4	19세 미만 대상으로 위험도 높은 활동, 청소년 150명 이상의 의무인증이 필요한 활동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2.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5)	지도인력의 인원수는 작성하였는가? (지도자 명단과 일치확인)			
	6	프로그램의 일부를 제3자가 운영하는 경우 운영기관명과 운영내용이 작성되어 있는가?			
	7	위탁프로그램은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시간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가?			
	8	신고활동의 명칭 등으로 볼 때 대표가 되는 사항을 위탁하고 있지 않은가?			
	9	제3자가 프로그램의 일부를 운영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제3자의 위탁 활동의 보험 가입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가?			

구비서류	점 검 항 목		
0 조립되 오랜리	1	참여하려는 모든 지도자를 신고하였는가?	
	2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는가?(전문·일반·보조지도자)	
3.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3	신고 된 모든 지도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였는가? (범죄경력조회·성범죄 조회, 후견 등기 사항 부존재 확인 등)	
	4	신고 된 활동에 필요한 자격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가?	
	1	프로그램 진행 내용와 일정 및 내용,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가?	
	2	사고, 환자 발생에 대비한 책임 소재 및 사전관리가 명확히 계획되어 있는가? (보험가입, 긴급후속대책, 사전 안전점검사항 확인)	
	3	활동 전 참가자와 지도자의 안전교육 시행 계획이 있는가?	
	4	활동 및 숙박 장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 확인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4. 청소년수련활동	(5)	프로그램의 자원은 구체화시켰는가?(기자재, 소요 예산 등)	
운영계획서 (자유양식_인증 수련 활동의	6	프로그램 운영 중 충분한 휴식, 영양공급, 안전한 취침을 위한 공간·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영하려는가?	
경우 제출 면제)	7	지도자의 역할, 적정인원 배치 확인 할 수 있는가?	
	8	지도자(제3자 운영활동 포함)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가?	
	9	(이동형의 경우)이동 관리 계획을 포함하였는가?	
	10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한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등록·허가가 필요한 경우 위법사항이 없이 운영되는가?	
	(1)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인 경우 법 제36조에 의한 인증을 받았는가?	
	1)	가입한 사실이 증명된 보험서류를 제출하였는가?	
드 버렸기이런형	2	신고하려는 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가?	
5. 보험가입현황 확인	3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장금액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가?	
	4	가입한 보험이 신고한 활동 전체를 보장하고 있는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고 업무 지원 담당자 연락처

	지 역	연 락 처	주 소
	청소년활동 진흥원	02-330-2800(내선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5층
	서 울	02-849-0405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61
	부 산	051-852-346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1
	대 구	053-659-6220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인 천	032-833-80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지	광 주	062-234-0755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226번길 광주흥사단회관 2층
방	대 전	042-488-073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 평송청소년문화센터 3층
청	울 산	052-227-0607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소	세 종	044-864-7935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284 2층 (고운동, 고운동복합커뮤니티센터)
년 화	경 기	031-232-9383(내선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3층
동	활 등 기 이	033-731-3704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 원주시민복지센터 4층
진	강 원	033-641-399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 강릉청소년수련관 2층
<u></u>	충 북	043-256-450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충북도청 제3별관
센	충 남	041-562-900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3,4층
터	전 북	063-232-047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64 JK 사이언스 2층
	전 남	061-280-9063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4층
	경 북	054-850-1091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2층
	경 남	055-711-135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59, 경남대표도서관 청소년관 3층
	제 주	064-751-504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7길 4(이도2동)

VI lacktriangle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 안전교육

1 안전교육의 이해

1-1 목 적

-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 안전교육을 통해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수련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

1-2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2(안전교육), 시행규칙 제8조의3(안전교육)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규칙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등)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수련시설 안전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1.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

1-3 안전교육 대상

- 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 수련시설 종사자

2-1 청소년대상 안전교육

○ 교육방법

- 교육 실시자 :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 교육 대상자 : 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 안전교육에 포함 하여야 할 내용
 -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 시설별 안전체계를 마련하여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필요
 - 수련시설 형태 및 안전상황에 따라 시설별 안전교육 체계 마련
 - 시설별로 마련된 안전교육 내용을 시설 종사자 등이 숙지하고 시설이용자 및 참가청소년에 안내 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 시 비상 대피로, 소화기 위치, 제세동기 구비 여부 및 위치, 비상 시 안내 요원 위치 등 안전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 실시
 - 안전교육 시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및 응급상황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에게 심폐소생술 프로그램 운영(전문기관 및 전문가) 실시
 - 시설 이용 시 및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 이용・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안내하고. 비상상황 시 대처방법 교육 필요. 아울러 안전사인물 등을 통해 다양한 매체 형태로 시설 이용자 및 활동참가자가 수시로 안전 대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실시
 - 시설 상시이용자 대상 등으로 정기적인 안전모의 훈련참여 등으로 비상상황에 대비한 교육 실시

○ 행정사항

- 교육 계획 및 실시 결과를 각 시설별로 작성·보관
 - (※ 작성 시, 시설에서 교육을 행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개인정보는 배제하고 개인정보를 부득이 포함하여 작성 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등 조치 필요)

교 육	교육실시자	교육대상	실시일시	교육내용
작성예시)				
화재교육	김00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00명	'23.3.00(今) 14:00~15:00	- 화재시 대피, 소방용품 사용법
안전교육	류-00 이00	00 프로그램 참가자 00명	'23.7.00(목) 16:00~16:30	

2-2 종사자대상 안전교육

○ 교육방법

- 교육실시자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교육대상자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www.youth.go.kr/kose)을 통해 실시



*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에서는 각 교육 대상별(수련시설종사자 / 활동지도자 / 시설담당자/ 운영대표자 / 청소년 / 공무원·시도센터)로 구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제공. 또한 열린강좌 등 수시 안전교육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본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 수강, 참여토록 독려

○ 안전교육 내용

-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응능력 교육
- 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교육시스템(www.youth.go.kr/kose) 내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대상자	과 정 명	비고
	청소년활동 안전관리	
	청소년수련시설 대피훈련 운영방법	
	청소년수련시설 모험시설물 및 옥외구조물 안전운영·관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교육	
	청소년수련시설 해충(빈대) 방제 관리 방법	
	청소년활동과 안전 운영	
수련시설 종사자 및 활동지도자	복잡한 청소년활동 안전보험 알아보기	
ᆽ ᆯᆼᄭᆂᄭ	시설분야별 안전점검 요소 및 관리방법	
	자연재난의 피해예방 및 대응방법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일상적인 안전관리	· 24년 개설 예정
	청소년활동 이동안전	24년 개월 예정
	청소년활동과 개인정보 보호	
	안전사고 발생 시 지도자의 역할 및 대응방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안전용품과 사용방법	
	개인정보보호 교육	
청소년	청소년활동 참여 사전안전교육	
	안전한 청소년활동 및 생활안전을 위한 해충(빈대) 예방법	
	마약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24년 개설 예정
공무원, 시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점검 지자체 공무원 교육	
o구년, 시 <u></u> 조엔니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담당공무원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	

^{*} 위 과정 외에도 직무교육 등을 포함, 다양한 안전교육과정이 수시 개설 중으로 적극 참여 필요

2-3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교육

교육명	교육대상		관계법령	교육주기
소방훈련 및	7]7]0]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 2회 (상시근로자 11인 이상의 경우)
소방교육	전직원	(수련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연 1회 (상시근로자 11인 이상의 경우)
집단급식소 위생교육	영양시	나, 조리사	식품위생법 제56조	1년(6시간)
의료인 보수교육	7	<u> </u> 호사	의료법 제30조	매년
소방안전 관리교육		난전관리자 공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최초 선임시
전기안전 관리교육		전기 선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기술교육 - 3년마다 1회 특별교육 - 최초선임시 6개월 이내
위험물안전 관리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2년
고압가스 안전관리교육	고압가스 선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3년
성희롱 예방교육	전직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연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전직원		아동복지법 제26조	매년(1시간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영자/운전자/ 동승보호자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신규/정기(2년)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정기
근로자안전 보호교육	전직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별표4 참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직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매년 1회(1시간) 이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전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매년 1회(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전직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매년 1회(1시간) 이상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I)

2024년 2월 인쇄 2024년 2월 발행

발행인 김 현 숙

발행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000

인쇄처 중앙기획·인쇄 전화 / 02-736-2866~7